

국민의 마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보다 나은 가족정책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 책자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또는 다누리 앱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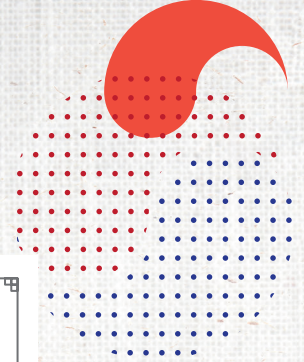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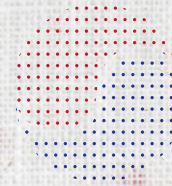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외국인 생활안내

2020 한국생활 가이드북

한국어 • KOREAN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28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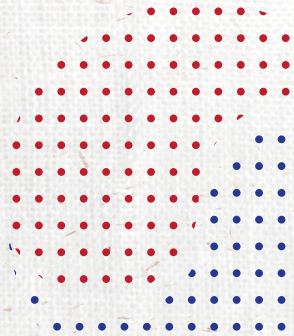
한국어
KOREAN

2020

다문화가족·외국인 생활안내

:

한국생활 가이드북





2020

한국생활 가이드북



 다문화가족 · 외국인 생활안내 - 한국어



제공언어 : 13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이 책자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또는
다누리 앱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생활 가이드북을 소개합니다!



한국생활가이드북은 누가 만들었나요?

한국생활가이드북은 정부 각 부처의 정보를 종합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제작관련 세부 작업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과 사회적 차별 해소,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지원,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처로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요 시범사업 실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고 2015년 1월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생활가이드북은 왜 만들어졌나요?

한국생활가이드북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한국생활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생활 종합안내서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최신 법·제도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교육부

-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추진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자녀교육 관련 정보, 상담 제공
-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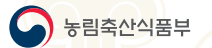
법무부

- 외국인정책 총괄
- 조기적응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이민자의 입국·체류·귀화 허가 등



행정안전부

- 지자체 거주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
- 시책 연구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 안내 및 동물·축산물 검역 정보 지원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족 사회보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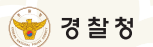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국토교통부

- 다문화가족 대상 주택 지원제도 운영



경찰청

- 다문화가족 대상 운전 면허 관련 지원

한국생활가이드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한국생활가이드북은 대한민국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와 한국문화, 한국생활 등을 한 권에 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자조모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생활 정보제공,
상담 및 긴급 지원
(☎1577-1366)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체류·귀화 허가 등
관리(☎1345)

운전면허제도,
국제면허증 안내

한국생활가이드북은 언제 부터 만들어졌나요?

2009년 6개 언어로 처음 발간되었으며, 이후 2012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9개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포털 다누리 및 다누리 앱을 통한 온라인 배포를 시작하였고, 2014년 1개 언어(태국어), 2015년 3개 언어(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가 추가되어 현재 8개 관계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내용을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8개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다문화가족



가족·통합교육, 상담,
통번역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사이트·앱 운영

사회복지서비스(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의료기관·보건소 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긴급복지 지원, 자활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 지원

자녀 / 청소년



자녀언어발달 지원

중도입국자녀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참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목 차

1

대한민국 소개

- 012 일반정보
 - 정식국명
 - 위치와 면적
 - 국기(태극기)
 - 국화(무궁화)
 - 인구
 - 경제
 - 정부조직
 - 지방행정구역
- 020 날씨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022 화폐
- 022 명절과 공휴일
 - 명절
 - 공휴일

2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서비스

- 028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서비스
 - 한국어교육
 - 한국문화·생활교육
 - 정보화교육
 - 상담
 - 이주여성 폭력 예방
- 031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무지개청소년센터
 - 외국인력지원센터
 - 외국인력상담센터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 다국어 지원 모바일앱

3

체류 및 국적취득

- 048 외국인 입국·체류
 -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체류자격 외 활동
 - 재입국 허가
 - 외국인의 신고의무
- 059 영주(F-5)자격 취득
 - 대상
 - 영주자격 신청 구비서류
 - 영주자격의 취소
- 062 국적 취득
 - 대상
 - 요건
 - 간이(혼인) 귀화 신청 시
구비서류
- 068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친지 초청
 - 주요 해외공관 연락처
- 069 이민자 사회통합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

한국문화와 생활

- 078 가족생활문화
 - 한국가족의 특징
 - 언어예절
 - 가족생활에서 기억하고
축하할 날
- 084 의복문화
 - 일상복
 - 전통의상 '한복'
- 085 식생활
 - 평소에 먹는 음식
 - 한국의 기본음식
 - 양념
- 091 주거생활
 - 주거종류
 - 주택구입과 임대차 계약 등
 - 주택지원
 - 전기사용
 - 수도사용
 - 가스사용
 - 난방시설
 - 통신
 - 생활쓰레기 처리
- 107 소비경제생활
 - 가계
 - 물건구입과 사용
 - 저축과 은행 이용
- 115 교통수단
 - 버스
 - 지하철
 - 택시
 - 자가용
 - 기차
 - 항공
- 133 공공기관 이용
 - 행정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 우체국
 - 도서관
- 137 근린생활시설 이용
 - 미용실
 - 목욕시설의 종류
 - 병·의원
 - 약국
 - 마트
 - 영화관
 - 근린공원

5

임신과 육아

- 144 임신과 출산
 - 아기를 위한 준비
 - 임산부가 받아야 할 검사
 -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
주의할 점
 - 임산부를 위한 보건소
서비스
 - 출산
- 151 영유아 건강관리
 - 아이의 발달 단계
 - 예방접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157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 보육 및 유아교육
 -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녀교육

168 한국의 교육제도

교육제도 일반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171 초등학교 교육

교육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학교 입학안내
입학준비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도

178 중학교 교육

교육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

184 고등학교 교육

교육 내용
고등학교 유형
학생복지

187 대학교 교육

대학의 종류
장학금

190 청소년 국제교류 (다문화가정 참여 지원)

국제교류 사업 소개
다문화가정 우대
신청방법



건강과 의료

196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개요
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가입방법

보험료 납부
체납에 대한 불이익
상당기관 또는 문의처

199 의료급여제도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절차

200 의료기관

의료기관 유형
진료 분야와 진료 과목
의료기관 이용 절차

응급상황 대처법
약국, 의약품 등

205 보건소

일반진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

208 응급처치

210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시간
비용부담



사회보장제도

216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신청방법

220 국민연금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
급여혜택

222 긴급복지지원

외국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지원 내용

225 자활사업

적용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227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종류
신청방법



취업과 근로

236 취업 및 직업훈련

취업
직업훈련

240 근로 관련 주요사항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도
퇴직급여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243 고용보험

사회보험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247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알아두어야 할 안전·보건
표지

251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록

260 FAQ

26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275 다누리콜센터 현황

276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7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284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86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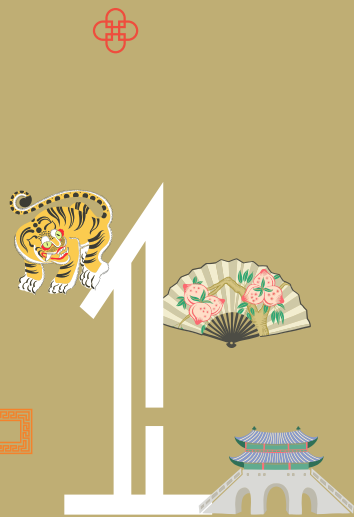
290 한국관광공사 관광 안내

291 주요 주한 외국 대사관
연락처

292 개인정보보호 안내

대한민국 소개

1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위치와 면적, 국기, 인구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또한 날씨, 화폐, 명절 등 대한민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014

일반정보

정식국명
위치와 면적
국기(태극기)
국화(무궁화)
인구
경제
정부조직
지방행정구역

020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022

화폐

022

명절과 공휴일

명절
공휴일

Republic of Korea



01 일반정보

1. 정식국명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줄여서 '한국(Korea)'이라고도 부른다.

2. 위치와 면적

아시아 대륙 북동쪽 한반도에 위치하며, 남한의 면적은 100,188.1km²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한 남·북한 전체 면적 221,000km²의 45%이다.

한반도의 면적은 캄보디아(181,035km²)보다 조금 크고, 필리핀(300,000km²), 베트남(331,210km²), 일본(377,915km²)의 약 2/3 정도의 크기이다.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는 북서쪽으로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북동쪽으로는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및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3면이 바다인 한국은 서쪽으로 황해, 동쪽으로 동해, 남쪽으로 남해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한반도의 남부 및 서부는 대체로 평야이며, 동부 및 북부는 산지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2,744m)이다. 북부의 개마고원은 '한국의 지붕'이라고 불리며, 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산맥인 태백산맥은 백두대간이라고도 불린다.

유명한 섬으로는 제주도, 거제도, 진도, 울릉도 등이 있는데, 제주도와 울릉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황해안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되어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출처 : 국토교통부).

3. 국기(태극기)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국민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파란색)과 양(빨간색)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는 땅을, 감괘는 물을, 이괘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획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상을 담고 있다(출처 : 행정안전부).

4. 국화(무궁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은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郷 : 무궁화 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로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무궁화>



<송례문>



<서울 전경>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무궁화는 조선 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사랑은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되었고, 광복 후에 무궁화를 자연스럽게 나라꽃(國花)으로 자리 잡게 했다.

무궁화의 학명은 Hibiscus syriacus L.이며, 영문명은 Rose of Sharon으로, 한국, 중국 중부, 인도 북부,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높이 3~4m까지 자라며 모양은 반원형이다. 매년 7월에서 10월까지 꽃이 피는데, 꽃은 색깔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아름답고 화려하며 새벽에 피어 저녁에 시들지만 매일 새로운 꽃이 100여 일 동안 핀다 (출처 : 행정안전부).

5.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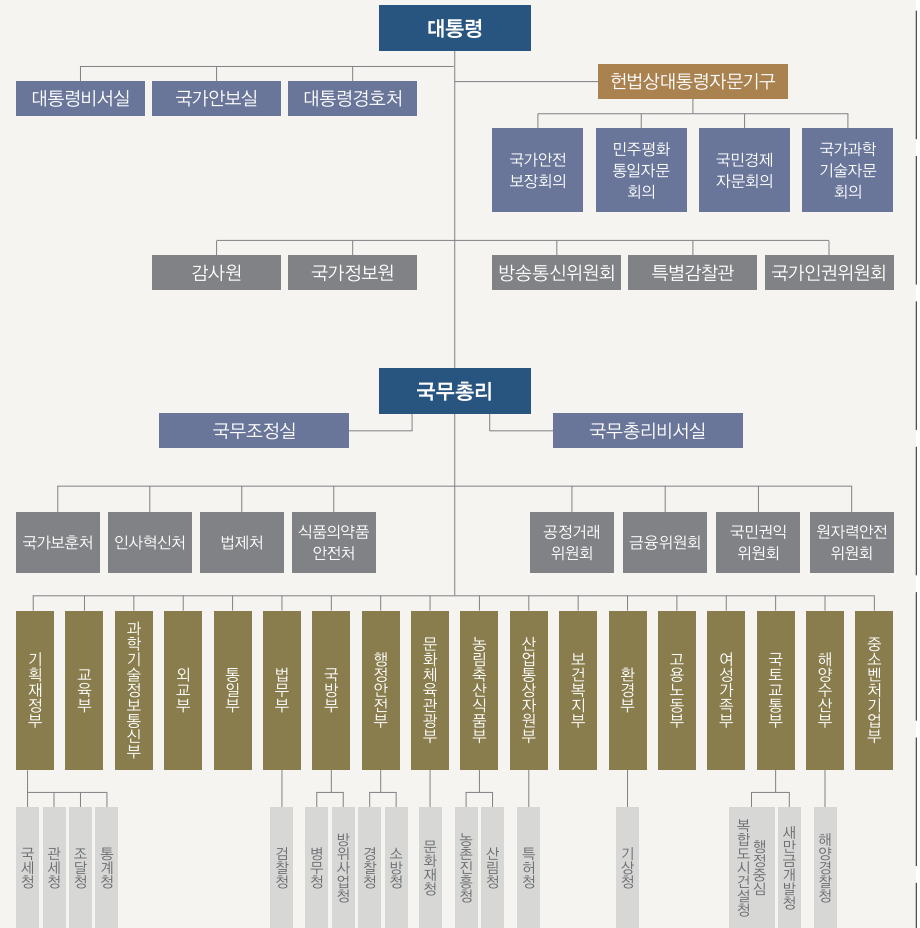
한국의 총인구는 51,629,512명(2018 통계청)으로 세계 28위에 해당하며, 인구 밀도는 529.652명/km²(2018 통계청)으로 세계 23위 수준이다.

6. 경제

한국의 GDP는 1조 5,801억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이며, 1인당 GDP는 3만 600달러이다 (2018, 통계청).

7. 정부조직

한국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정부조직은 2017년 7월 기준 18부 4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18개 행정각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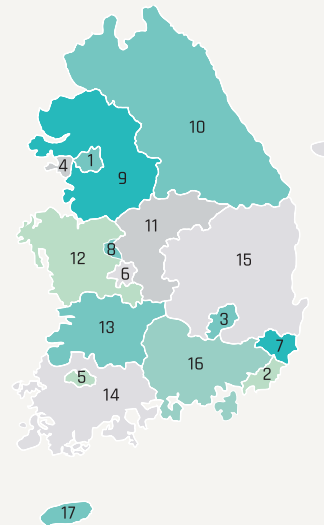


- ①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④ 외교부는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⑥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⑦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⑧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⑪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⑫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⑬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⑭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⑮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⑯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⑰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⑱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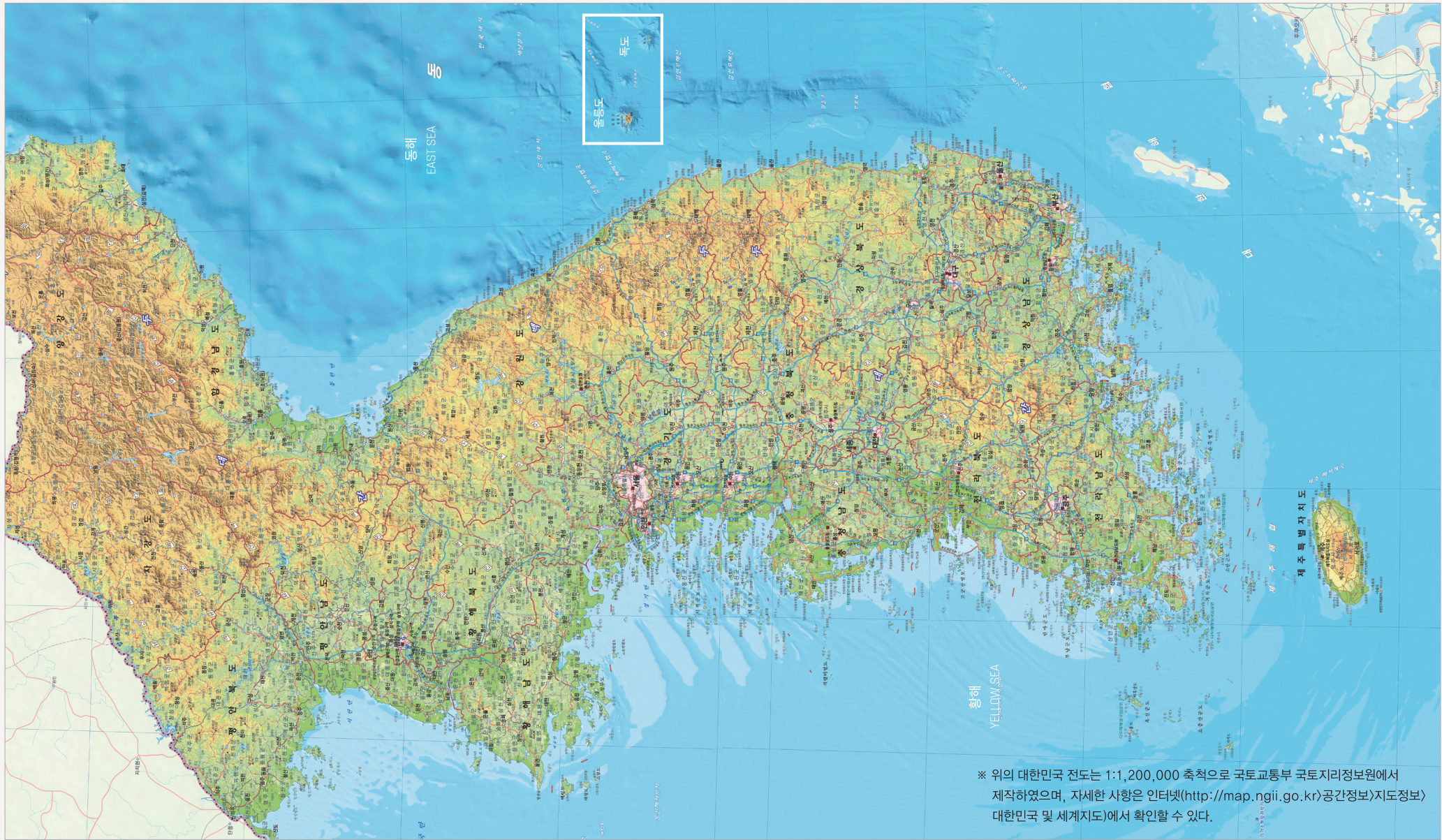
8. 지방행정구역

한국의 전 지역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75개의 자치시, 82개의 군(郡), 69개의 자치구(自治區)가 있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인 읍면동이 총 3,510개가 있다(2018년 12월 기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지도



※ 위의 대한민국 전도는 1:1,200,000 축척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http://map.ngii.go.kr>)공간정보)지도정보) 대한민국 및 세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분명한 온대기후이다.

1. 봄

3~5월. 아침저녁은 서늘하고 낮에는 따뜻하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다. 3월에는 따뜻한 겨울옷이 필요하고 4월에는 가벼운 옷차림이 좋다. 5월은 여름처럼 더운 날도 많다.

2. 여름

6~8월. 25~35°C 정도 되는 더운 날씨.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에 우기(장마)가 있다. 우기라고 해도 비가 매일 내리는 것은 아니다. 8월부터 9월 사이에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을 거느린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간다.

3. 가을

9~11월. 10~25°C로 하늘이 맑고, 건조하다. 11월에는 겨울처럼 추운 날도 많다. 미리 겨울옷을 준비하고 난방기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단풍이 무척 아름답다.

4. 겨울

12~2월. -10~10°C로 아주 춥다. 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 조금 덜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다. 따뜻한 옷과 난방기구가 꼭 필요하다. 2월 말이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03 화폐

화폐단위는 원(won, ₩)이다.

환율(2019. 6. 25. 기준) 1달러 : 1,156.00원 / 1유로 : 1,316.22원 / 100엔 : 1,080.93원

※ 경제상황 등에 따라 매일 변화

04 명절과 공휴일

1. 명절

한국에는 명절과 계절에 따라 지키는 행사(세시풍습)들이 있다. 한국은 달력에서 양력과 음력 날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명절과 계절행사는 주로 음력으로 지내고 있다.



〈세배〉



〈떡국〉



〈송편〉

◎ 설날(음력 1월 1일)

- 의미 : 음력 새해가 시작되는 날
- 음식 : 떡국, 만두
- 하는 일 : 새 옷(설빔)입기, 세배(어른에게 절함)와 성묘(조상 산소에 감), 윷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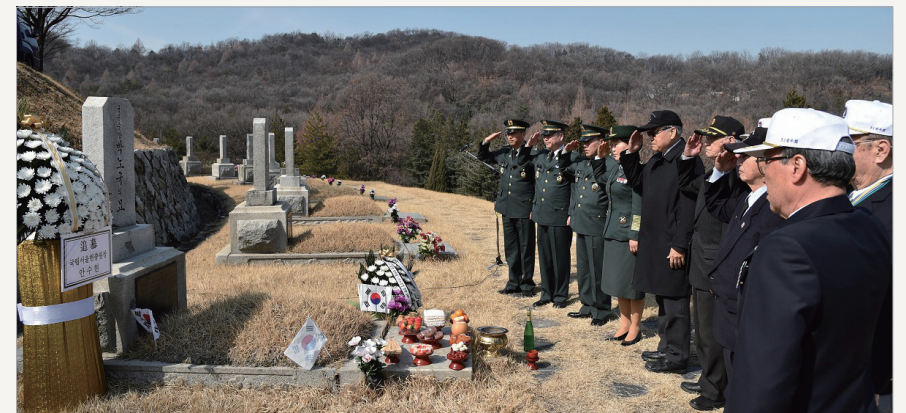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은 공휴일이 됨

◎ 추석(음력 8월 15일)

- 의미 : 한해 농사에 감사하는 날
 - 음식 : 햅곡식(가을에 새로 나온 곡식)과 송편
 - 하는 일 : 차례 지내고 성묘하기, 달맞이, 강강술래 놀이
-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은 공휴일이 됨

2. 공휴일

- ◎ 1월 1일 : 양력 새해가 시작되는 날
- ◎ 삼일절(양력 3월 1일) : 일본 강제점령시대에 독립을 요구하며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규모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
-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
- ◎ 어린이날(양력 5월 5일) :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 ◎ 현충일(양력 6월 6일) :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
- ◎ 광복절(양력 8월 15일)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강제점령에서 벗어나 독립한 날



〈현충일 기념 묘역 참배〉

- ◎ **개천절(양력 10월 3일)** : 한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
- ◎ **한글날(양력 10월 9일)** :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
- ◎ **성탄절(양력 12월 25일)** :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 ◎ **일요일**
- ◎ **임시공휴일** : 공직자 선거, 공휴일과 명절이 겹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



〈강화도 마니산에서 진행된 개천절 행사〉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동상〉

【 카툰으로 보는 문화 이야기 1 】

친근감을 표시하는 한국문화 ①



한국에서는 초면에 나이, 결혼유무, 거주지를 물어보는 등 개인적인 신상 정보에 대한 질문을 곧잘 한다.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관심 또는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한국인의 문화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빨리 친해지려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서비스

2장에서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등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누리콜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합니다.

028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서비스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생활교육

정보화교육

상담

이주여성 폭력 예방

031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다국어 지원 모바일앱

01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서비스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상담 등 다문화가족·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문화가 낯설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입국 초기에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1. 한국어교육

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어학당 등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2. 한국문화·생활교육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법률 및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 사회 적응교육 등이 강의와 체험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3. 정보화교육

한국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행정업무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 인터넷 검색 활용 및 각종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상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고통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가족상담, 노동상담, 체류상담, 법률상담 등).

※ 그 밖에 취업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이 제공되므로, 다음 장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 보고, 원하는 기관에 방문·문의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자세한 이용방법은 뒷 페이지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참조

5. 이주여성 폭력 예방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안내

- 한국어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 외국어 상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전국 28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동반 자녀포함)에 대한 일시보호 및 상담, 의료, 법률 등 지원 제공

*비공개시설로 ☎1577-1366, ☎1366, 경찰서 등 초기상담을 통해 입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전국 3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주거 지원

※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 지원센터(서울 1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원 제공
- 직업기술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전국 5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에 대한 상담 및 통·번역 지원 등

◎ 해바라기 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365일 24시간)
- 폭력피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 위기 및 지속상담, 무료법률지원
-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 의료기관 및 지역 내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 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변호 지원
- ※ www.klac.or.kr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란?

① 신체적 폭력

- 상대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상태 또는 손상을 입히는 것
- 밀치기, 때리기, 흉기나 칼 사용 등

② 언어·정서적 폭력

-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감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
- 폭언, 욕설, 비난, 조롱, 무시, 냉담 등

③ 성적 폭력

- 상대 배우자가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는 것
- 강제적인 성관계, 강제 불임, 낙태,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사이버) 성폭력

④ 경제적 폭력

-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는 것
- 자신의 소득을 통제 당하는 경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생활비 내지 않기

한국어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외국어 상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신고 경찰서 ☎112

02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다누리콜센터 ☎1577-1366(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이 정부의 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지역 또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이 있다. 다문화가족·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설치되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민센터, 지방문화원 등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족·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1.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 생활통역과 3자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13개 언어*로 해당국가의 이주여성 전문상담원과 편리하게 자국 언어로 통화하여 상담할 수 있다.
 -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로 상담을 제공한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자의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할 때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생활 상담은 물론 국적, 체류 문제 등의 상담과 법원 진술 시 통·번역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상담 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경찰, 변호사,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전국 병원 내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 서비스 제공내용

구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언어로 상담 • 다른 기관 전화연결 시 직통 연결 서비스(one-call, one-stop)
긴급, 폭력피해 상담 및 긴급지원서비스 연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일 24시간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국어 상담 • 긴급피난시설 운영(아동 동반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 법률, 검찰, 경찰서비스 등 연계 • 서울 및 지역 현장 방문 상담서비스 실시
생활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이주민 종합 생활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이주여성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 다문화관련 정보 제공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민, 다문화가족의 경우 3자 통역 (경찰, 응급, 병원, 주민센터, 교육기관, 은행 등) • 가족 내 의사소통 지원

(2) 이용방법

◎ 전화 상담(3자 통화 가능)

-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 언제나 ☎1577-1366을 누르면 가능
- 서비스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 : www.liveinkorea.kr
- 이용방법 : 쿼메뉴 → 온라인 상담
- 서비스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 방문상담 및 면접상담

- 방문상담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는 상담
- 면접상담 : 다누리콜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
- 이용방법 : 상담원과 상호일정 조정 후 사전 예약

◎ 긴급피난처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
- 이용방법 : 서울, 경기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 구미, 전북 전주 등의 지역에서도 방문 및 상담가능

지역	대표상담전화	지역별 직통전화
서울	☎1577-1366	1577-1366
경기 수원		031-257-1841
대전		042-488-2979
광주		062-366-1366
부산		051-508-1366
경북 구미		054-457-1366
전북 전주		063-237-1366

※ 서울(365일 24시간 운영) 외 지역 6개소 상담 및 긴급피난처는 365일(주말, 공휴일 포함) 주간(9:00~18:00) 이용 가능, 그 외 시간 상담전화는 서울로 착신되며 가까운 이주여성보호시설로 연계조치 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가족, 성평등, 인권 등),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상담, 정보 안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 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0년 현재, 전국에 22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1) 프로그램 내용

영역	구분	공통필수사업	선택 사업(예시)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이종언어 환경조성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아버지교육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자녀성장지원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내 성평등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이주여성 한국인 배우자부모 대상 프로그램(다함께 프로그램) 등 폭력피해 대처 및 예방교육
성평등,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기초소양교육 새일센터 연계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 교육훈련 협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경제교육 재난안전교육 학업지원반 운영 및 연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 결혼이민자 멘토링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프로그램 등
사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경제교육 재난안전교육 학업지원반 운영 및 연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 결혼이민자 멘토링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프로그램 등

영역	구분	공통필수사업	선택 사업(예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수요자 맞춤형 실용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7개 과정(자녀학습 지도, 취업준비, 지역문화활동, 중도입국, 자녀 topik읽기/듣기/쓰기) 운영
방문교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한국어교육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에게 방문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방문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자녀의 양육 관련 교육·정보 제공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자녀에게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 발달 교육, 문화역량 강화, 기본 생활습관 교육, 건강 및 안전지도, 진로지도 등 제공
사례관리 지원	가정폭력·이혼 등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정서적인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통·번역 서비스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방법을 제공
이종언어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종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종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종언어 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2) 이용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보통 09: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10장 부록 참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부부상담, 통·번역 지원
 - ※ www.liveinkorea.kr
 - ※ APP 다운
 - 안드로이드 폰 : 플레이스토어 > 다누리 입력 > 이용
 - 아이폰 : 앱스토어 > 다누리 입력 > 이용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명시된 이주배경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며, 동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정착과 학습능력 및 자립역량 향상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이주배경청소년은 부모 중 1인 이상 또는 본인이 한국 외 지역 출생이거나, 한국 출생 후 국외에서 성장한 청소년으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포괄하는 개념).

(1) 지원 내용

구분	내용
맞춤형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의 체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 전반의 정보 안내 • Rainbow School 등 활동프로그램 및 기관연계 지원 • 진로·진학지도, 심리·정서상담 연계 지원
입국초기 지원교육 레인보우 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서울·경기 및 16개 시·도 지역, 23개소 운영 예정(직영 및 위탁운영)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지원 • 전일제, 시간제(방과후,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운영 기관마다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있음
진로지원 프로그램 • 무지개 Job아라 • 내-일을 잡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서울·경기 등 5개소 운영 예정(직영 및 위탁운영) • 진로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의 진로탐색 및 설계, 직업체험 실시 (무지개 Job아라) •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직업실습 및 소양교육 등을 포함한 자격증 취득과정(내-일을 잡아라) (예) 바리스타, 메이크업아티스트, ITQ, 드론조종사 등

구분	내용
레인보우체험학교 • 비교문화체험 • 동기야! 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청소년의 기초생활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정착 지원 •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이해 및 입국초기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 실시
통합상담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실시 • 맞춤형상담 및 이중언어상담 실시(통번역 서비스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진로탐색을 위한 집단상담 "마음돋보기", "Job돋보기" 실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지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멘토링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마음으로 통하는 "통·통·통" 통합캠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8월 중 2박 3일 실시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초등학생 4~6학년 및 중학생 전 학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실시 • 전문가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지원
친친무지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등 배려 계층 청소년 교육비 지원, 봉사활동 실시 • 교육지원비 1인 6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

(2) 이용방법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9세~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대표전화 : 02-733-7587
- 맞춤형 정보서비스 : 02-722-2585(중국어 지원 가능)
 - ※ 09:00~18:00까지 이용 가능
- 온라인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 rainbowyouth.or.kr
- 이메일 rainbowyouth@rainbowyouth.or.kr

4. 외국인력지원센터

(1)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체불 · 사업장 변경(이동) · 출입국 체류 · 산업재해 · 의료/복지 · 사기/폭행 등 · 기타 일상생활 고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 · 컴퓨터 교육 · 특별 교육 : 법률, 안전, 생활적응교육 등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행사 · 교육행사 · 문화행사
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은 병원에도 쉽게 갈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은 질병과 상해의 기본적 진료 및 치료 실시

(2) 이용방법

평일 09: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안내 ☎1644-0644), 일부 교육에 대해서는 일요일에도 실시된다.

5. 외국인력상담센터

◎ 사업개요

-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주된 기능으로 한다.

◎ 현황

명칭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에머랄드빌딩 3층
운영시간	연중무휴(09:00~18:00) * 근무시간 이후 전화 상담 예약 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회신 상담(Call Back) 제공
상담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벵골어, 우르드어(파키스탄), 네팔어, 미얀마어, 키르기스스탄어, 동티모르어 등 총 17개 언어로 구성
상담내용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충 등 국내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생활 정보상담

6.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현황은 부록 참조)는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각종 체류허가, 위반조사, 국적, 난민업무 등 외국인의 국내 지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정보통신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을 사이버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여러 국가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웹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제공서비스
공공운영		
다누리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www.liveinkorea.kr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하이 코리아 (외국인 대상 전자 정부 포털)	www.hikorea.go.kr	법무부
다문화 구러미	www.kidsnfm.go.kr	국립민속박물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CSM	법제처
korea.net	www.korea.net	해외문화홍보원

웹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제공서비스
VisitKorea	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두리안	www.ebsd.co.kr	EBS
누리세종학당	www.sejonghakdang.org	세종학당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KBS World Radio	world.kbs.co.kr	KBS
서울시 한울타리	www.mcfamily.or.kr	서울특별시
서울시 글로벌센터	global.seoul.go.kr	

웹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제공서비스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global.iansan.net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소개, 8개 언어 웹진, 한국어 교육, 통역, 상담지원, 의료 및 법률 생활정보 등 제공
충남다올림	www.dawoolim.net	충청남도	한국 체류 및 충남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센터소식, 한국생활가이드, 나라별 문화소개, 일상생활 용어)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 보험료 납부 방법 등 국민연금 관련 정보 제공
민간운영			
이주민 방송	www.mntv.net	이주민 방송 MNTV	다국어 뉴스, 생활한국어
다문화 가정 e-배움 캠페인	ecamp.cuk.edu	고려사이버 대학교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배우자 출신 국가의 문화교육

8. 다국어 지원 모바일앱

모바일명	운영기관명	내용	제공서비스
다누리 (Danuri)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한국생활 가이드북,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긴급연락처 안내	안드로이드, IOS
共ZON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간하는 소통매거진 제공	안드로이드, IOS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법제처	결혼이민자, 비자·여권, 산업재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운전면허, 이사 주택임대차, 금전거래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법령정보를 12개 언어로 알기 쉽게 제공	m.easylaw. go.kr/MOM
My Seoul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정정보, 취업정보, 한국어 학습 정보, 다국어 채팅, 국제전화, 생활 전화, 급여계산, 다산콜센터 정보	안드로이드, IOS
다문화 행복스케치	부산광역시	한국생활 정보, 한국어 학습정보, 취업정보, 상담정보, 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 부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글로벌센터 정보	안드로이드, IOS
KBS World Radio	KBS	11개 언어의 뉴스, 시사, 엔터테인먼트, 기타 한국 관련 프로그램의 텍스트 및 동영상 제공	안드로이드, IOS
안전디딤돌	행정안전부	재난발생 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재난안전정보 제공	안드로이드, IOS



【 카툰으로 보는 문화 이야기 2 】

친근감을 표시하는 한국문화 ②



한국인들은 친근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식사'와 관련된 인사말을 많이 주고받는다. '식사하셨어요?'나 '밥 잘 챙겨먹어'라는 인사가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에도 이와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바로 '목욕했느냐'라고 묻는 것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상대방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정을 나누는 마음만은 같은 인사방식이다.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류 및 국적취득

3장에서는 입국·체류 시 숙지해야 할 정보부터 영주권 및 국적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격 정보를 다룹니다. 또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민자가 구성원으로서 적응·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048

외국인 입국·체류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

재입국 허가

외국인의 신고의무

059

영주(F-5)자격 취득

대상

영주자격 신청 구비서류

영주자격의 취소

062

국적 취득

대상

구비서류

간이(혼인) 귀화 신청 시 구비서류

068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친지 초청

주요 해외공관 연락처

069

이민자 사회통합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01 외국인 입국·체류

1.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두어야만 체류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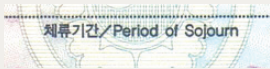
여권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입국 비자(사증) 읽기



- 체류자격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을 알 수 있다(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F-6).
- 입국심사확인증 안에 있는 일자는 한국에 입국한 날이다. 입국한 다음 날부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계산된다.



- 체류기간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다르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신청과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해야 한다(체류자격, 신청인의 연장 사유 등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다름).



- 체류기간 바로 아래에 있는 만료일은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을 나타낸다.

외국인등록증 읽기



외국인등록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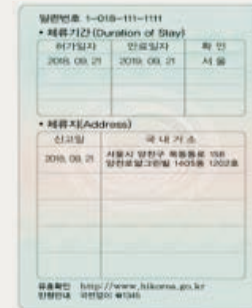
영주증 앞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앞면

❖ 앞면

- 신분증 명칭
 - (한글) 외국인등록증 (영문) ALIEN REGISTRATION CARD
 - (한글) 영주증 (영문) PERMANENT RESIDENT CARD
 - (한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문)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 외국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 형태로 표기
- 성별 :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 성명 :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표기
- 국가/지역 :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결혼이민자(F-6))
- 발급기관 :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외국인등록증 뒷면



영주증 뒷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뒷면

❖ 뒷면

◎ 체류기간

- 허가일자 :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한 날짜
- 만료일자 : 체류기간 만료일자
 - ※ 영주자격(F-5)인 경우 '유효기간'이라고 표기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하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표기

(1) 단기체류자(B, C계열 - 최대 90일 이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 장기체류자 및 영주자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영주증을 소지한 자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허가일자과 만료일자가 적혀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해야만 계속 체류할 수 있다.

2. 외국인등록**(1)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된다.

(2)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권(+원본, 사본)
- 통합신청서(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별지 34호 양식 비치)
- 여권용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현금)
-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할 것)

(3) 결혼이민자

위 서류 외에 한국인 배우자(한국인 남편 혹은 아내)의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발급

• 체류지 입증서류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 기간연장 수수료 30,000원
 - ※ 결혼이민자(F-6-1) 비자는 입국 당시 90일만 부여되며,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진행. 결핵위험 국가(18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 등록 병원에서 발행한 결핵검진 확인서 필요
 -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2년 부여

(4) 외국인등록 신청 및 발급

외국인등록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

**외국인등록증 교부방법**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약 3주 가량 소요되며,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교부받거나 또는 택배 서비스(요금선불)를 이용하여 집에서 받을 수 있다.

(5) 외국인등록증 관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하며, 휴대의무 위반 시 1,000,000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 쓰게 된 경우
- 필요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구비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 •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해야 하는 경우	반납시기	제출서류
완전히 출국할 때	출국할 때 공항만에서	없음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원본,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또는 주민등록증), 기본증명서
사망했을 때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배우자, 부모, 형제 등)	외국인등록증,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증명서류

3.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및 시기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2) 체류기간 연장절차



(3)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60,000원(결혼이민(F-6)의 경우 30,000원)

☑ 결혼이민자가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서류(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결혼이민자의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만 필요) 단,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할 것

4.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 ※ 단기방문 중 단체관광 등(C-3-2)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제한된다.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90일 이하 단기비자 소지자, 불법체류자 등 제외)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자격변경 수수료 100,000원(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 영주(F-5) 자격변경의 경우 200,000원(영주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5. 체류자격 외 활동

(1) 대상 및 시기

91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 소지자는 제외함)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별도의 세부 자격요건 있으며 ㉠1345 문외)
※ 어학연수생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허용함
-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동일재단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E-1)를 하고자 할 경우 결혼이민자(F-6)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가 있으며,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120,000원 단, 유학(D-2), 일반연수(D-4)는 수수료 없음

6. 재입국 허가

(1) 대상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
-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지위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자

(2) 기간

-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 재입국 최장기간 : 1년
-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 최장기간 : 2년

(3) 재입국 허가 면제 및 제외 대상

- A-1~A-3 및 등록외국인(모든 체류자격)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 허가 면제(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 F-5(영주)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면제

(4)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5) 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허가기간 내 또는 면제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허가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은 상실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므로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국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입국이 규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7. 외국인의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 신고사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D-1, D-2, D-4~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 D-10 자격 소지자의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H-2 자격 소지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 사실
- H-2 자격 소지자의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 및 명칭변경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2) 구비서류

- 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항 입증서류(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입증 서류)

알아두세요!

검역이란?(동·식물 검역)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공항, 항만에서 입국 전 검역을 실시합니다. 입국 시 반입금지 농·축산물을 소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입국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만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검역절차

- 한국에 도착(공항, 항만, 우체국)
- 입국심사
- 세관신고서(검역신고) 작성
- 동물, 식물, 농산물, 축산물 검역 : 검역결과 합격된 경우만 통과됩니다.
- 세관 검사
- 입국

◎ 동물·축산물 검역

- 휴대 반입 제한 축산물(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육류 및 육류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햄, 육포, 삶은 고기, 우지 가공품(카레 등)
- ② 유가공품 : 우유, 치즈, 버터 등
- ③ 알 및 알 가공품 :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 ④ 애완동물 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등

◎ 여행자 휴대품 불합격 사례



〈소시지〉



〈햄〉



〈육포〉



〈힘줄〉



〈순대〉



〈장조림〉



〈달걀〉



〈말린고기〉



〈만두〉

◎ 식물·농산물 검역

－ 휴대 반입 금지 품목

- ① 망고, 바나나, 사과, 배, 오렌지, 라임, 아보카도, 풋콩, 오이, 토마토 등 생과채류
- ② 고구마, 감자, 마 등 땅속채소와 껍데기가 붙은 호두
- ③ 흙 및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곤충, 잡초 종자 등



〈망고〉



〈라임〉



〈사과, 귤〉



〈오렌지〉



〈바나나〉



〈풋콩, 토마토, 고추〉



〈고구마, 감자〉



〈흙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 식물·농산물 휴대·우편 반입시 유의사항

종자, 묘목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 할 수 없습니다(2019. 7월부터 시행 예정).

※ 자세한 검역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912-1000 또는 032-740-2661, 2077).



02 영주(F-5)자격 취득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상

- ①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②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④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⑥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⑧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⑨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⑩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⑪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 ⑫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 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⑬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⑭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⑮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⑯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⑰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⑱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 영주자격 신청 구비서류

- ①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빠른메뉴 - 매뉴얼 - 첨부물(체류 자격 별 안내 매뉴얼) 확인 필요
- ② 체류지 입증서류
- ③ 수수료 200,000원(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별도)
 - ※ 현재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는 구비서류와 신청 요건이 다르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야 한다.

3. 영주자격의 취소(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주자격 취득 시 유리한 점

-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03 국적 취득

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18개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귀화허가(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을 참고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1. 대상

- ① 「민법」상 성년으로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혼인하였던 사람(상세 내용은 하단 결혼이민자 간이(혼인)귀화 대상 참고)
- ④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 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사람은 제외).
- 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⑥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결혼이민자 간이(혼인)귀화 대상

- ①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③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
- ④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

2. 요건

- ①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춘 것
- ②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③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④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3. 간이(혼인) 귀화 신청 시 구비서류

- ※ 간이(혼인)귀화 이외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 참고
- ◎ 귀화허가신청서(컬러사진 3.5cm×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중국은 호구부 포함)
-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공적 확인 받은 것)
-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예시 중 한 가지 증명)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0,000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공시지가 3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원본)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한글 번역문 첨부)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의미하며, 중국의 경우는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제출

- ◎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신분증명(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 ◎ 수수료 : 300,000원(정부수입인자)
-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 실종, 사망, 이혼 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인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주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혼인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단절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 '공인된 단체의 확인서' 등

(1) 국적취득절차

① 귀화허가 신청

귀화허가 신청은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18개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접수한다.



② 귀화심사

-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개별 통지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연락처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락처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정상적인 혼인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며, 면접심사를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 혼인관계 단절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 1차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③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 귀화심사 결과, 허가결정이 나면 국적증서 수여식(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에 일정을 통지)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귀화심사 소요기간은 매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 공지된다.
-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후에는 귀화증서 상의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④ 외국국적포기(본국 대사관)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 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 1년이 지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적 상실신고 후 국적 재취득 또는 국적 회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포기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국적포기 시 필요한 서류 등은 대사관에 문의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서약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하면 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처우 된다. 예를 들어 출입국할 때 국내 공항·항만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
 - ※ 복수국적 불인정 국가(중국 등)의 경우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본국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



⑤ 주민등록신고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사진(3×4)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우편송부도 가능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반납(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인 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 발급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 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cm×4cm)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사한 경우 :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살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04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친지 초청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부모나 친지가 직접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초청 가능한 친척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 정확한 정보는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1. 주요 해외공관 연락처

주요 해외공관	연락처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1-202-939-5600~3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86-10-8531-0700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81-3-3452-7611/9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66-2-247-7537~39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84-24-3771-0404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976-7007-1020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63-2-856-9210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855-23-211-900/3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7-495-783-2727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856-21-352-031~3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998-71-252-3151~3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977-1-4270172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380-44-246-3759/60/61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95-1-527142~4
주 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996-312-579-771

05 이민자 사회통합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입국하는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시 기초 생활정보, 서로 이해하는 결혼생활을 위한 상호문화이해(부부교육), 체류절차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및 조기적응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참여대상	특수과목	공통과목	교육시간
외국인 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위한 조언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질서와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3시간 (밀집지역 등 : 2시간)
밀집지역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과목만 실시 		
외국인 연예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 가족 간 상호 이해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중도입국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교육제도 소개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법의식, 생활법률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개설 목적** :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사회 정착

◎ **교육과정** : ①한국어와 한국문화 ②한국사회 이해

◎ **내용**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평가	없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 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참고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화과정에 참여						

◎ **운영주기** :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개설

◎ **운영기관** : 348개 운영기관(2020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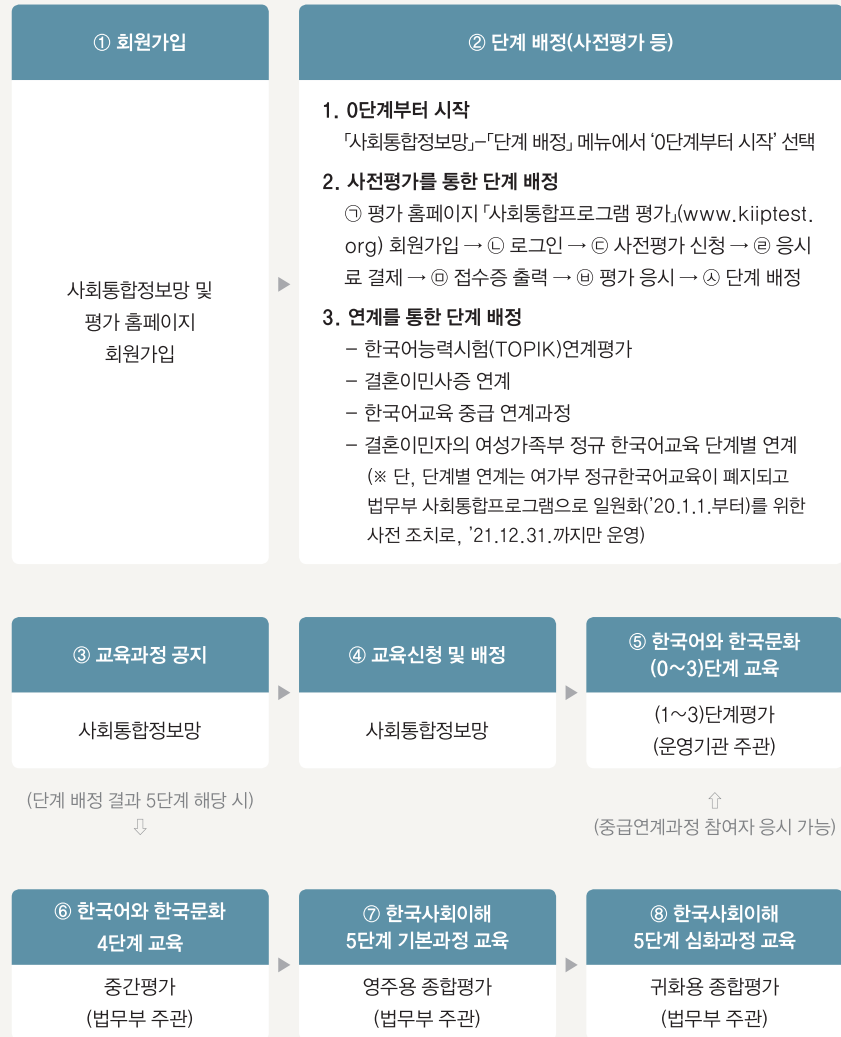
◎ **이수자 혜택**

- 귀화신청 시 혜택
 -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시 부여)
 - 귀화면접심사 면제(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시 부여)
-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기본소양 요건 충족으로 인정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D-8-4 기술창업점수제, D-9-1 무역비자점수제, D-10-1 구직비자점수제, E-7-4 숙력기능인력점수제, F-2-7 우수전문인력점수제)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절차도

-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 사회통합프로그램 ▶ 전국 운영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년도 이후 교육 및 평가 홈페이지 분리 안내

- ◎ 교육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가입 후 이용
- ◎ 법무부 주관 평가 신청 : 평가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회원가입 후 이용
※ 단, 평가 홈페이지는 사회통합정보망 아이디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하므로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평가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여야 함



* 사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는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평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알아두세요!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Hi Korea)'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운영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유학생 변동신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예약 등 외국인의 국내 체류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이용안내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회원가입 → 전자민원, 방문예약, 마이페이지 등 서비스 이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로, 한국어 포함 20개 외국어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용시간 평일 09:00~22:00(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홈페이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용안내

홈페이지 접속(www.socinet.go.kr) → 회원가입 →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 신청, 결과확인 등 서비스 이용



【 카툰으로 보는 문화 이야기 3 】

친근감을 표시하는 한국문화 ③



한국에서는 가족이 아니어도 친근감의 표시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곤 한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를 존중 받아야 할 부위로 여겨 만지는 것을 금기시 한다. 태국인들이 머리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만큼, 상대가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행동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문화와 생활

4장에서는 가족생활문화, 식생활, 주거 생활 등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교통수단, 공공기관, 근린생활시설 이용법 등을 소개합니다.

078

가족생활문화

한국가족의 특징

언어예절

가족생활에서 기억하고 축하할 날

084

의복문화

일상복

전통의상 '한복'

085

식생활

평소에 먹는 음식

한국의 기본음식

양념

091

주거생활

주거종류

주택구입과 임대차 계약 등

주택지원

전기사용

수도사용

가스사용

난방시설

통신

생활쓰레기 처리

107

소비경제생활

가계

물건구입과 사용

저축과 은행 이용

115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기차

항공

133

공공기관 이용

행정기관

경찰서(☎112)

소방서(☎119)

우체국

도서관

137

근린생활시설 이용

미용실

목욕시설의 종류

병·의원

약국

마트

영화관

근린공원

01 가족생활문화

1. 한국가족의 특징

한국의 가족생활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한국가족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가족 생활이 좀 수월할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문화는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한국 가족문화는 유교문화권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가족문화도 점차 변하고 있다.

(1) 가족관계

- 가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못지않게 가족 간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가족 내 위, 아래의 순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가정에서는 부모, 조부모, 친척 중 웃어른을 공경할 것을 가르친다.
- 성인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경우도 있으나, 노후를 자립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노부모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 다양화된 사회와 인식의 변화, 그 외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재혼 가족, 1인 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 부부관계

- 부부 간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가족 내에서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 가족과 관련된 일에서 남편과 아내가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함께 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가족 부양, 자녀 돌봄, 가사 노동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3) 가족생활의 적응

결혼을 통해 가족관계, 생활방식,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개개인이 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결혼 초기에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는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생활에 대한 생각 차이는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배우자와 생각 차이로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한다.

- 서로의 가족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가족 전통 물어보기
- 가족생활에서 힘든 부분은 대화하여 해결하기
-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 요청하기
- 전문상담기관인 다누리콜센터(☎1577-1366) 이용하기

※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상담원과 의논해 보는 것이 좋으므로,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이용한다.

2. 언어예절

한국에서는 같은 대상이라도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르거나 말하게 된다. 또 순수한 우리말 칭호와 한자말이 섞여서 쓰이고 있다. 때문에 호칭이나 지칭을 잘못 쓰면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호칭'이란 어떤 사람을 직접 부르는 말이고, '지칭'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가리키는 말인데 모두 말할 때는 '칭호'라 한다.

(1) 존댓말과 보통말

한국말은 상대방의 연령, 관계의 친밀성, 지위 등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상대방을 높이는 존댓말(높임말)과 높이거나 낮추는 말이 아닌 보통말이 있다.

-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한다.
-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아랫사람 또는 어린이인 경우에는 보통말을 사용한다.
예) 밥 먹다(보통말) / 진지 잡수시다(높임말) 고마워(보통말) / 감사드립니다(높임말)
잘 있어(보통말) / 안녕히 계십시오(높임말)

3. 가족생활에서 기억하고 축하할 날

가족생활에는 아기의 탄생, 결혼, 죽음 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므로, 이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거나 슬픈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예의다.

(1) 탄생 의례

- 백일 :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백일 되는 날을 기념한다. 백일 음식으로 백설기, 붉은팥으로 만든 수수경단, 미역국을 마련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 축하해 준다.
- 돌 :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되는 첫 생일에 친척 및 친지들을 초대하여 돌잔치를 한다. 아기에게는 한복을 입고 돌상을 차려준다. 전통적으로 돌상에는 백설기, 송편, 수수경단을 마련하고, 아이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돌잡이(아기가 무엇을 잡는지 봄)라는 특별한 의식을 하기도 하며, 덕담(좋은 말)과 함께 선물을 준다. 최근에는 식당에서 돌상을 준비해주는 경우도 있다.
- 생일 : 태어난 날을 말하며 어른의 경우 '생신'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생일날 아침 식사로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가정 형편에 따라 맛있는 음식을 차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을 초대한다. 초대받은 사람은 생일(생신)을 맞은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선물하거나 현금을 주기도 한다.



〈현대식 돌상차림〉

(2) 혼례(결혼)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식과 현대식 결혼식이 있는데, 전통적 방식의 결혼식은 현재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현대식으로 한다. 현대식 결혼식은 결혼식장이나 호텔, 교회, 절 등에서 할 수 있다. 신랑은 턱시도,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한다. 현대식 결혼식을 하더라도 신랑 신부가 부모, 친척에게 하는 공식 인사는 전통식 결혼처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사를 '폐백'이라고 한다.

(3) 회갑·고희연(장수를 바라는 예식)

- 회갑 : 만 60세(한국나이로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날을 의미한다.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마련하는 행사이다.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간단한 축하의식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잔치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현금을 포함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전해 드리기도 한다.
- 고희연 : 만 70세(한국나이로 71세)가 되는 해의 생일날을 의미한다.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매년 맞이하는 생일보다 더 크게 생일잔치를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한다.



(4) 장례

사람이 죽은 경우에 갖추는 예의를 말한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고인에게는 수의를 입힌다. 일반적으로 수의는 연세가 높은 어르신의 생전에 준비한다.

상복은 집안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베옷을 입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흰색, 검은색의 옷을 입는다. 문상* 가는 손님들은 너무 화려한 색깔의 옷은 피하고, 검은색 또는 흰색 종류의 옷을 입으면 좋다. 문상을 할 때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준비한 방법대로 기도 또는 절을 함으로써 슬픈 마음을 전한다. 형편에 맞게 '조의금(현금)'을 낸다.

* 문상 : 돌아가신 분의 가족에게 슬픈 마음을 드러내어 위문하는 것

(5) 제례

돌아가신 부모를 기리는 의식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혹은 그 전날 밤에 행해지는데,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참가자들은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며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가진다. 가족 문화에 따라, 개인의 종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기제사 : 조상이 돌아가신 날 밤에 지내는 제사로서, 보통 조상 2대조까지 한다.
- 차례 : 차례는 명절에 조상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로서, 신년 차례, 한식 차례, 추석 차례가 있다.



<기제사>



02 의복문화

1. 일상복

한국 사람은 평소에 양장을 한다.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봄과 가을에는 긴 소매 옷을 입고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짧은 소매 옷을 입는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코트나 점퍼 등의 외투를 덧입는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중요한 가족 모임 등이 있을 때는 보통 정장을 갖춰 입는다.

2. 전통의상 '한복'

한국의 전통의상을 '한복'이라고 부른다.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우며 단아한 멋이 있다. 한복의 종류는 예복과 평상복, 남녀별, 나이별, 계절별로 다양하게 나뉜다. 기본적으로 남자한복은 바지와 저고리, 여자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등을 착용한다.

(1) 남자 한복 입는 방법

바지와 저고리순으로 입는다. 바지를 입을 때는 허리띠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며야 한다. 바짓부리는 대님으로 맨다. 저고리를 입은 뒤에 고름을 매고 그 위에 조끼와 마고자를 입는다. 두루마기는 절을 할 때나 외출할 때 덧입는다.



(2) 여자 한복 입는 방법

속바지, 버선, 속치마 순으로 입고, 그 위에 겹치마를 입는다. 겹치마 자락이 왼쪽으로 오게 여며야 바르다. 속저고리와 겹저고리를 입은 뒤에는 저고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앞으로 당겨 정돈한다. 저고리 옷고름은 매듭을 지어 두 고름이 같은 길이가 되도록 한다.



03 식생활

1. 평소에 먹는 음식

한국 사람은 모여서 먹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먹기를 즐긴다.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차려서 대접한다. 한국 음식은 주로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진다. 국과 유사한 것으로 탕, 찌개가 있으며, 반찬에는 나물, 찜, 조림, 구이, 볶음, 튀김, 전 등이 있다. 반찬을 대표하는 것은 김치 종류다. 밥을 대신하는 것으로는 면류(국수, 냉면 등), 수제미, 떡 등이 있다. 점차 맛벌이 부부가 늘고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1인식, 간편식, 배달식 등도 많아지고 있다.

🔍 알아두세요!

한국인과 함께 식사하자

한국인과 함께 식사하면 훨씬 친해지기 쉽다.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은 한국에 적응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 음식에 마음을 열면 한국 문화에도 그만큼 친숙해지고, 한국생활도 훨씬 즐거워질 것이다.

식수

한국에서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편이다. 한국인들은 정수된 물을 그냥 마시거나, 차를 끓인 뒤 차게 식혀 먹기도 한다.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큰 탈은 없지만, 끓여 먹거나 정수해 먹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 한국에 와서 물이 바뀌면 며칠간 배탈이 날 수도 있다. 대부분 며칠 뒤면 좋아지지만, 심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음식점에서는 얼마든지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고, 필요하면 가게에서도 쉽게 살 수 있다.



2. 한국의 기본음식

(1) 밥

쌀을 끓여 익힌 것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밥보다 찰지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거나 배탈이 날 수도 있다. 일주일 정도 노력하면 한국 밥과 친해질 수 있다.



〈흰 쌀밥〉

알아두세요!

비빔밥

밥에 각종 나물, 쇠고기, 양념 등을 넣어 참기름과 고추장으로 비빈 한국의 대표 음식이다.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전주비빔밥'이 유명하다. 세계적인 유명 스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2) 국, 탕, 찌개, 전골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채소, 생선, 고기가 들어간 국물이 많은 음식을 밥과 함께 먹는다.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국, ○○탕, ○○찌개, ○○전골이라고 부른다.

- 북어국 : 말린 명태로 끓인 국. 간의 피로와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국물요리
- 콩나물국 : 콩의 뿌리를 연하게 키운 콩나물을 이용한 국물요리
- 미역국 : 해초의 일종인 미역을 넣고 끓인 국물요리
- 설렁탕 : 소의 여러 부위를 함께 넣고 푹 끓인 국 또는 그 국에 밥을 만 음식
- 갈비탕 : 갈비 부위를 오랜 시간 동안 우려낸 뒤에 국간장과 소금으로 양념을 하고 식성에 따라 면류를 넣어 먹는 음식
- 감자탕 : 돼지뼈와 감자, 채소를 함께 끓인 음식
- 닭볶음탕 : 닭고기, 채소에 매운 양념장을 섞어 끓인 요리
- 김치찌개 : 김치와 돼지고기 등을 함께 끓인 음식
- 된장찌개 : 된장을 푼 물에 두부, 호박, 버섯, 양파 등을 넣어 끓인 음식
- 부대찌개 : 김치와 햄, 다양한 채소를 함께 넣어 끓인 음식

- 동태(생태)찌개 : 동태(생태)와 무, 두부, 호박을 넣어 끓인 생선찌개
- 낙지전골 : 잘게 썬 낙지와 채소, 버섯 따위를 곁들이고 국물을 넉넉히 부어 끓인 음식
- 두부전골 : 두부를 주재료로 하여 양파, 당근, 미나리, 쇠고기 따위를 넣고 육수를 부어 끓인 음식



〈미역국〉



〈갈비탕〉



〈동태찌개〉



〈김치찌개〉

(3) 김치

김치는 한국인에게 매 끼마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음식이며, 맛과 영양, 저장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무, 배추, 오이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인 다음 고추, 마늘, 파, 생강, 젓갈 등의 양념 및 부재료를 함께 버무려 담근다. 그런 다음 밀봉하여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효·숙성시켜 먹는 음식이다. 겨울에는 배추를 재배할 수 없으므로, 11월 말~12월 초에 여러 가지 김치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김치를 많이 담그는데 이를 '김장'이라고 한다. 김장 때는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므로,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기도 한다.



〈김치〉

(4) 고기요리

- 불고기 : 약간 달고 고소한 맛으로 쇠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에 재웠다가 볶은 요리
- 갈비 : 소와 돼지의 갈비 부위를 양념하여 구운 요리
- 삼겹살 : 돼지뺏살 부위로 팬에 구워 다양한 채소에 싸먹는 요리
- 닭갈비 : 잘게 썬 닭고기를 채소와 함께 볶은 약간 매운 요리
- 제육볶음 : 돼지고기를 채소와 함께 볶은 요리



〈불고기〉



〈갈비〉

(5) 생선요리

- 생선회 : 익히지 않은 생선을 초고추장이나 된장, 간장, 고추냉이 등에 찍어 먹는 음식
- 생선구이 : 생선에 소금만 뿌려서 굽거나, 양념을 발라 구워먹는 음식
- 생선찜 : 생선에 양념을 하여 물을 붓고 끓이거나 증기를 이용하여 찌는 음식
- 생선조림 : 생선과 채소에 간장과 양념을 넣고 오래 조린 음식
- 오징어볶음 : 오징어를 채소와 함께 맵게 볶은 음식



〈생선회〉



〈생선구이〉

(6)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 라면 : 짧은 시간 동안 손쉽게 끓여먹을 수 있는 대표적 인스턴트식품. 매운 맛, 순한 맛 등 다양하며,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즉석 컵라면도 있음
- 김밥 : 김에 밥과 단무지, 햄(돼지고기), 계란, 당근, 오이 등을 넣고 돌돌 말아서 먹는 음식. 싸고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
- 국수(면) : 국수를 국물에 말거나 양념에 비빔 음식
- 만두 : 고기만두, 김치만두, 물만두, 튀김만두의 종류에 따라 밀가루 반죽에 고기·두부·김치 등을 넣어 찌거나 튀긴 음식
- 떡볶이 : 가래떡, 밀가루떡 등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어묵과 여러 가지 야채를 섞고 갖은 양념하여 볶은 음식
- 순대 : 돼지 창자에 당면을 넣고 선지를 섞어서 간한 것을 삶은 음식



〈라면〉



〈김밥〉



〈국수〉



〈만두〉



〈떡볶이〉



〈순대〉

(7) 계절별 과일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각 계절마다 신선하고 맛 좋은 과일이 많이 나온다. 요즘엔 비닐하우스 재배가 일반화되어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의 과일을 모두 먹을 수 있지만, 과일은 제철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 본국에서 먹던 과일을 먹고 싶다면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구할 수 있다.

- 봄 : 앵두, 딸기 등
- 여름 : 참외, 복숭아, 수박, 자두 등
- 가을 : 감, 배, 사과, 대추, 밤, 포도 등
- 겨울 : 귤, 오렌지 등



〈딸기〉



〈사과〉



〈귤〉

3. 양념

- 마늘 : 단단한 겉껍질이 있다. 맛은 자극적이지만, 구울 경우 매운맛이 줄어들고 달콤한 맛이 난다. 조미료로 쓸 때는 곱게 다져 사용하고, 향신료로 쓸 때는 통째로 사용한다.
- 간장 : 음식의 간을 맞추는데 쓰는 짠맛의 검은색 액체 조미료이다. 콩으로 만든 메주와 소금으로 발효해 만든다. 간장에는 국간장(조선간장, 진간장)과 양조간장이 있다. 국간장은 국이나 나물을 무칠 때, 양조간장은 무침이나 생선회, 찍어먹는 소스로 사용한다.
- 고추장 : 매운맛을 내는 양념장이다. 고춧가루, 메줏가루, 소금을 사용해 만든다. 메줏가루의 구수한 맛, 고춧가루의 매운맛, 소금의 짠맛이 잘 조화되어 고추장 특유의 맛을 낸다.
- 된장 : 콩으로 만든 메주와 소금을 가지고 만드는 한국 고유의 양념장이다. 국물요리에 많이 쓴다.
- 설탕 : 단맛을 내는 가루로 흰색, 노란색, 갈색이 있다.



〈간장〉



〈고추장〉



〈된장〉

- 식초 : 신맛을 내는 액체로 대부분 노란색이다. 식용유와 비슷해 보이거나 포장지에 사과, 쌀(현미) 그림이 있다.
- 소금 : 짠맛을 내는 흰색 가루이다. 설탕과 비슷해 보이므로 잘 구분해야 한다.
- 조미료 : 음식을 만드는 주재료인 식품에 첨가해서 음식의 맛을 돋우며 조절하는 가루이다. 음식의 맛을 내는 데 도움이 되며 소금, 설탕과 비슷하니 잘 살펴봐야 한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맛과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 식용유 : 음식을 튀기거나 부칠 때 사용하는 노란색 액체이다. 포장지에 옥수수, 땅콩그림이 있다.
- 참기름 : 고소한 맛을 낼 때 사용하는 갈색 액체이다. 참깨기름이라고도 하며 그 외 들기름(들깨기름)도 있다.
- 액젓 : 생선을 소금에 절여 만든 것으로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등이 있다. 태국, 베트남 등의 음식에 쓰는 생선소스(fish sauce)와 같은 맛을 내는 것은 까나리 액젓이다.



〈설탕〉



〈소금〉



〈조미료〉

04 주거 생활

1. 주거종류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는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있다. 요즘 도시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 주택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며, 농촌보다 도시의 집값이 훨씬 비싸다.

2. 주택 구입과 임대차 계약 등

(1) 주택 구입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집의 위치와 방향, 교통의 편리성, 주변의 환경 등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결정한 후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 근저당 등의 설정 관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전세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집 전체를 빌릴 수도 있고, 일부 공간(한 층, 또는 방 1~2개)만 빌릴 수도 있다. 집 전체를 빌릴 경우 보증금은 통상 주택 가격의 40~80% 선이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오피스텔은 1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3) 반전세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자 임대인들의 기존 전세를 보증금과 월세로 나눠서 매달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전체주택 10채 중에 3채 정도는 반전세로 보면 된다. 최근에는 오른 전세 가격을 아예 월세로 환산해(보통 은행예금 금리의 2배)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것이 성행 중이다. 예를 들어 2년 만에 전세 3억원이 4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오른 1억원 만큼을 월세이율로 환산해 보증금 3억원에 매월 400,000~600,000원을 받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월세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이다. 대신 같은 규모의 공간을 빌릴 때 전세보다 보증금이 훨씬 싸다. 계약할 때 집주인과 잘 상의하면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조절할 수도 있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 사용료가 적어지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 사용료가 그만큼 많아진다. 월세는 방 크기와 개수,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전세나 월세 계약에는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따로 부담한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만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냉장고나 세탁기 등 기본 가전제품은 갖춰 놓는 곳이 많다.



깎세

국내체류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족들에게 대개 '깎세'라 하여 1~3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집주인들도 간혹 있다(제주도지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치르는 '연세'가 일반적이다).

(5) 기숙사

회사 또는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숙소를 말한다. 해외투자기술연수생(D-3)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노동자에게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6) 주택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점

한국에서 주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거리에 붙은 광고지를 보고 직접 찾아가서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대신 확인해 주기도 하고,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기도 하며 법적인 문제 등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주택가격에 따라 정해진 법정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다. 과다중개수수료 요구시에는 시, 군, 구청의 지적과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7) 계약

◎ 계약상대

계약서는 집주인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거주 기간, 보증금 액수, 월세 액수 등이 적혀 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그 방에 살고 있던 세입자와 계약을 한 뒤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만일 집주인이 그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반드시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소유자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서류(인감증명서와 위임장)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택소유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이 된다. 등기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마다 지급 직전에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등기부등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주인의 이름, 주소, 집의 면적과 구조, 집주인의 채무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주로 인터넷(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으로 쉽게 발급 받는다. 잘 모르면 주변의 한국인 동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 지불 금액과 방법

계약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이다. 보증금이 2,000,000원인 방이라면 계약금은 200,000원이 된다. 나머지 1,800,000원 중 일부는 입주 전에 날짜를 정해 지불하고, 나머지는 입주하는 날 지불한다. 입주하는 날 잔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항

- 주택 소재지(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재지와 계약서에 기록되는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 계약 금액(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계약금은 보증금의 10%만 주는 것이 안전하다)
- 계약기간
-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 또는 손도장(지장)

(8) 계약기간 만료와 보증금 환불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 주면서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

가령 보증금 2,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인 방에서 살다가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방을 옮기게 되었다고 하자. 곧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나머지 3개월분의 월세 450,000원(150,000원×3개월)을 빼고 1,550,000원만 돌려주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옮기겠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이다.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므로,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일단 상담지원기관(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계약만료 한 달 전에 꼭 해야 할 일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이사 나갈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특별히 이야기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몰라 큰 손해를 보니 잊지 말아야 한다.

편리한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장단점

• 부득이하게 직거래하게 될 때 알아야 할 점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 보려고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하는 다문화가족들이 간혹 있다. 비용을 아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보통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등의 경우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 직원 등과 함께 오지 않아, 집을 내놓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는 중개사가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직거래 때는 임차인 스스로 흠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택의 설비나 마감 재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직거래이지만 통상 100,000원 내외 비용을 들이면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중개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중개업자가 거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직거래보다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하기

2009년 50여 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직거래 카페가 100여 개가 넘고, 카페의 회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부동산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카페와 직거래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는 매물 수가 월평균 100,0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월세 직거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매물 정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장터에 올라오는 매물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한정됐다. 이용하는 사람도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가구·단독주택·아파트 등 방 2~3개짜리 전월세 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 상가·사무실 등으로 직거래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비용 절약이나 편리성을 위해 찾는 부동산직거래는 계약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허가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다가 하면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이중계약)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등 피해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 직거래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계약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오픈마켓 거래에는 익숙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저렴한 매물을 찾아 직거래하다 보니 집주인을 가장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거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허가된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허가된 중개업소를 거래하면 이점이 있다. 비용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다 오히려 추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주택지원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은 다문화가족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청약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있어야 한다.

(2) 신청방법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일정에 맞추어 해당 사업주체에 신청해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일간신문, 관할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청약홈(www.applyhome.co.kr)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분양을 희망하는 청약자들은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 청약 관련 예금(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분양은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와 일정 기준의 가점과 감점 항목을 합해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추첨 등으로 선정된다.

4. 전기사용

(1) 전압 220V

한국 전기 콘텐서의 전압은 대부분 220V이다. 만약 전기기구가 110V 전용이라면 콘텐서를 220V에서 110V로 감압시켜주는 트랜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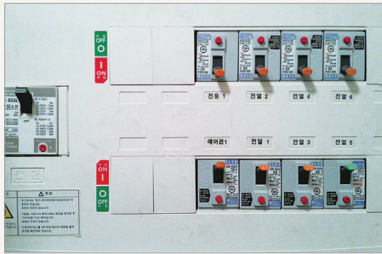


〈트랜스〉

* 한국전력공사 ☎123(www.kepco.co.kr)

(2) 누전 차단기

모든 주택에는 전기로 인한 화재를 막아주는 누전 차단기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전기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전기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전기 공급이 끊어진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을 새로 구했을 때는 누전 차단기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누전 차단기의 시험용 단추(적색, 누전 전용은 녹색)를 눌러보면 된다. 스위치가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 그렇지 않으면 불량이다.



<누전 차단기>

5. 수도사용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어 물을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물이 새고 있는지 여부 및 보온재(스티로폼)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복도식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벽체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계량기함은 외부 보호커버에 비닐을 부착하거나 또는 동파방지용 열선을 감아 보온 조치해야 하며 집을 장기간 비우거나 휴한 기간 중 수도물을 안 쓰는 기간에는 수도물을 아주 소량 흘려 보내야 동파사고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다.
- 또 수도계량기가 얼은 경우라면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녹이기 시작해서 점차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수도계량기를 녹여야 수도계량기 유리 파열을 막을 수 있다.

6. 가스사용

(1) 취사용 가스(LPG, 도시가스)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를 점화하여 사용한다. 사용이 끝나면 꼭 중간밸브를 잠근다. LPG가스·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려면 주방용 액체세제를 물과 1:1로 섞은 다음 호스의 연결부분 주위에 발라 본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정상이고 거품이 발생하면 가스가 새는 것이므로 즉시 수리해야 한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집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스회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러 나온다(사용량 검침은 매월). 이때는 가능하면 외출하지 말고 있다가 꼭 점검을 받도록 한다.

취사용 가스기구를 잘못 다루게 되면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 사용이 끝난 후에 항상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중간밸브를 잘 잠그는 습관을 갖는다.



<취사용 가스 사용의 예>

(2)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버너에 부탄가스를 넣어 사용한다. 잘못 넣어 가스가 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꽃이 작거나 가스 냄새가 나면 즉시 확인해야 한다. 다 쓴 부탄가스통을 버릴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실외에서 못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재활용통에 넣는다.



<부탄가스버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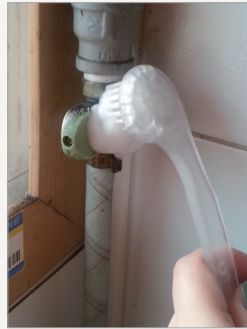


<부탄가스>

(3) 가스 사고 예방

가스 사고는 대부분 가스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발생한다. 가장 흔한 것은 가스질식과 가스 폭발이다. 점검 결과 가스가 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스 안전밸브를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킨다.
- 전기 스파크에 의한 가스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는다.



〈가스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비누 거품 바르기〉

7. 난방시설

대부분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난방시설로 실내바닥에 온수관을 설치하여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온수를 제공한다.

(1) 보일러

연탄을 사용하는 연탄보일러, 기름을 사용하는 기름보일러,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보일러가 있다. 연탄보일러는 가격이 싸지만 연탄을 시간에 맞춰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기름보일러와 LPG가스보일러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름과 LPG가스가 떨어지면 그때마다 주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도시가스보일러다. 도시가스는 파이프를 통해 늘 공급되고, 취사와 난방에 모두 쓸 수 있다. 가격도 싸다. 집을 얻을 때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도시가스가 설치된 집은 월세가 더 비싸지만 난방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으므로 더 이득이다.

(2) 전기난로·전기장판

전기난로와 전기장판도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과도한 전기요금 및 전자파가 많이 나오므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을 장시간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가스난로

실내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잠잘 때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가스난로를 켜놓고 자다가 산소 부족으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자주 환기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통신

(1) 일반전화

설치 신청을 받는 전화국 안내번호는 전국 어디에서나 100번(KT), 106번(SK브로드밴드)이다. 수화기를 들고 해당번호를 누르면 안내센터로 연결된다. 전화요금은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 되는 자동이체 방식, 인터넷을 통한 지로 방식(인터넷지로 www.giro.or.kr ☎1577-5500)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면 매달 은행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 * SK브로드밴드 : 국번없이 ☎106으로 전화하면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원 연결 후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 * KT : 국번없이 ☎100으로 전화하면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며, 국번없이 ☎1588-8448 KT 외국인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2) 휴대폰(핸드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할부로 휴대폰을 살 수 없으며 현금 일시불 구매만 가능하다. 또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 주요 휴대폰 통신사

- SKT(www.tworld.co.kr, ☎1599-0011)
- KT olleh(www.kt.com, ☎100)
- LG U+(www.uplus.co.kr, ☎101)

그런 경우 '카드폰'이라고 불리는 선불식 휴대폰을 주로 사용한다. 돈이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미리 사서 휴대폰에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그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휴대폰과 달리 가입비나 기본 요금이 없지만 통화 요금은 약간 비싼 편이다. 카드폰을 계속 사용 하려면 한달에 최소 10,000

원을 충전해야 하며, 통화요금이 10,000원보다 적더라도 다음달에 그 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휴대폰 가격은 제품에 따라 다양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공장 주변의 매점이나 외국인 식품점, 우체국(지역마다 판매여부가 상이함. ☎1588-1300 문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알아두세요!

광고 전화/광고 메시지

휴대폰을 이용하다 보면 광고 전화나 광고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다. 호기심에 전화를 했다가 예상치 못한 요금을 내게 되거나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광고나 성인용 메시지에 무심코 응답했다가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역번호

한국 내 지역번호는 총 17개로 구분된다. 같은 지역 안에서는 전화번호만 누르면 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전화할 때는 지역번호를 먼저 누른 뒤 전화번호를 눌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서울로 전화를 걸 때는 전화번호만 누르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화를 걸 때는 부산의 지역번호인 051을 누른 뒤 전화번호를 누른다.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서울	02	대전	042	충북	043	경남	055
부산	051	울산	052	충남	041	제주	064
대구	053	세종	044	전북	063		
인천	032	경기	031	전남	061		
광주	062	강원	033	경북	054		

(3) 공중전화

공중전화를 사용하려면 동전이나 카드가 필요하다. 시간대를 잘 선택하면 국제전화를 싸게 할 수도 있다. 시내 통화요금은 180초당 70원이고 휴대전화는 38초당 70원이다.



〈공중전화(카드전화)〉

〈공중전화(IC카드 및 동전 이용)〉

(4) 긴급전화와 수신자부담통화

모든 공중전화에는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빨간 버튼이 있다. 카드나 동전이 없어도 버튼만 누르면 범죄 신고나 화재신고를 할 수 있고,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음은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긴급번호이다.



범죄신고 : 긴급버튼+112

화재신고 : 긴급버튼+119

동전이나 카드가 없을 때는 수신자부담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화요금이 상대방에게 청구되며, 가격은 일반 통화요금보다 약간 비싸다. 이용 방법은 국내인 경우 '긴급버튼+1541+상대방 전화번호#'이다.



(5) 국제전화

국제전화는 인터넷이나 외국인을 위한 상점, 일부 편의점 등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한국 ▶ 해외

 **일반전화기에 전화하기**

• 한국에서 미국 LA의 123-4567번으로 전화하는 경우
국제전화 서비스번호 + **1** + **213** + **123** - **4567**
국가번호(미국) 지역번호(LA) 전화번호

 **휴대폰 인터넷 전화에 전화하기**

• 한국에서 일본의 휴대폰 080-123-4567번으로 전화하는 경우
국제전화 서비스번호 + **81** + **80** - **123** - **4567**
국가번호(일본) 휴대폰 번호

해외 ▶ 한국

 **일반전화기에 전화하기**

• 해외에서 한국 서울의 123-4567번으로 전화하는 경우
국제전화 서비스번호 + **82** + **2** + **123** - **4567**
국가번호(한국) 지역번호(서울) 전화번호

 **휴대폰 인터넷 전화에 전화하기**

• 해외에서 한국의 휴대폰 010-123-4567번으로 전화하는 경우
국제전화 서비스번호 + **82** + **10** - **123** - **4567**
국가번호(한국) 휴대폰 번호

※ 지역번호와 전화번호 앞에 '0'이 있는 경우, '0'은 제외하고 누른다.

 **알아두세요!**

국제전화의 올바른 사용

국제전화는 국가 간을 연결하는 통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내통화료보다 훨씬 비싸다. 국제전화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할인 시간대에 사용하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나라별, 통신사별로 요금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인터넷전화나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해서 저렴한 방법으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	국가번호	국가	국가번호	국가	국가번호	국가	국가번호
나이지리아	234	베트남	84	이라크	964	키르기스스탄	996
네팔	977	브라질	55	이란	98	태국	66
독일	49	수단	249	이집트	20	터키	90
라오스	856	스리랑카	94	인도	91	파키스탄	92
러시아	7	시리아	963	인도네시아	62	페루	51
말레이시아	60	싱가포르	65	일본	81	필리핀	63
멕시코	52	아르헨티나	54	중국	86	호주	61
몽골	976	앙골라	244	칠레	56	홍콩	852
미국, 캐나다	1	에콰도르	593	카자흐스탄	7		
미얀마	95	영국	44	캄보디아	855		
방글라데시	880	우즈베키스탄	998	콜롬비아	57		

(6) 유선방송 및 인터넷

한국에는 공중파 방송(KBS, MBC, SBS) 외에도 종합편성방송, 케이블TV, 지역 유선방송, 위성방송(Sky Life) 등 다양한 종류의 방송 채널들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PTV도 보급되어 있다. 지역 유선방송 및 IPTV 회사들 중엔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함께 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 유선방송과 인터넷을 함께 신청하면 다른 업체들보다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인터넷만 사용하려면 각 통신업체들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므로 자세히 비교해 본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집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필요할 때마다 PC방에 가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PC방은 보통 24시간 운영되며, 요금은 1시간에 1,500원~2,000원 정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9. 생활쓰레기 처리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류별(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로 지정된 봉투에 넣어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한다. 쓰레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함부로 버리면 수거해 가지 않으며, 심할 경우 벌금까지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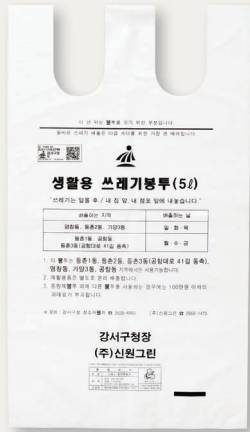
(1)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알아두세요!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할인마트에서 살 수 있다. 동네마다 일반 쓰레기를 담은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봉투 색 깔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한 뒤에 구매하도록 한다. 일반 쓰레기 봉투는 용량에 따라 1,2,5,10,20,30,50,60,75,100 리터용이 있으며, 지역마다 판매하는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10리터나 20리터짜리 봉투가 적당하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주 버려야 하므로 2~5리터 정도의 작은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웃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쓰레기 봉투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



(2)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빼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거주지역에 따라 음식물 수거통에 넣는다. 단,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를 실시하고 있다.

(3) 재활용품

재활용이 되는 물건들은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비닐류, 포장봉지(삼각형 재활용 마크 안에 PP, OTHER, LDPE 등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만 가능), 플라스틱류(페트병, 발포스티렌 (EPS), 포장재(스티로폼), 기타합성수지용기(요구르트병, 세제용기류 등)) 등이다. 음료수 병이나 캔 등은 물기를 모두 말린 후 부피를 줄여서 내놓는다.

(4) 대형쓰레기

몹시게 된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부피가 큰 쓰레기는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사다 붙여서 집 앞에 내놓는다. 스티커 가격은 물건의 종류와 부피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라 스티커를 지정판매소(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요금을 내면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배출신고 : 인터넷신청(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다.

05 소비경제생활

1. 가계

(1) 가계

가계란 한 집안 살림의 수입(들어오는 돈)과 지출(나가는 돈)의 상태를 말한다. 적은 수입이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계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2) 화폐가치

한국의 화폐는 동전(10원, 50원, 100원, 500원)이 있으며, 지폐로는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이 있다. 이외에도 100,000원 이상의 다양한 금액의 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

• 동전



<10원>

<50원>

<100원>

<500원>

• 지폐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권 수표>

※ 100,000원권 자기앞수표가 현금처럼 널리 쓰인다(수표를 사용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 뒤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한국의 화폐인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출신국 화폐와의 가치 비교와 한국의 물가 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알아두세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판기 커피 한 잔
300~500원



과자 한 봉지나
아이스크림
1,000~2,000원



백반, 냉면 등의
식사
6,000~8,000원



돼지고기 500g
10,000원



쌀 한 포대
(20kg)
55,000원

* 지역이나 상품 종류에 따라 위와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물건구입과 사용

계획 없이 쇼핑을 하면 불필요한 물건까지 사게 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가게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쇼핑 전에 꼭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1) 목록작성

물건을 사기 전에는 무엇을 살지 미리 적어본다.

(2) 물건구입 장소

어디에서 얼마나 살 것인지 정한다.

편의점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로서 식료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 매장이 작아 물건을 찾기 쉬우므로 한두 가지 물건을 급하게 사야할 때 편리하다.

재래시장(5일장)

식품, 의류, 잡화(생활용품)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모여 있는 재래시장은 대체로 물건 값이 싸고, 사는 양과 가격을 흥정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한국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다.

동네 슈퍼마켓

주로 과자, 야채, 고기, 음료 등 식료품 위주로 판매하며 집 근처(동네)에 있어서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

의류, 식품, 가전, 화장품, 보석 등 상품의 종류가 매우 많으며,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품질도 우수한 편이라 가격도 비싸다. 할인행사가 자주 있으므로 기다렸다가 이 기간에 이용하면 유리하다.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식품, 의류,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상품의 품질도 좋은 편이며 시설과 서비스도 좋은 편이다.

TV 홈쇼핑

텔레비전에서 상품 광고를 보고 즉시 전화,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의류,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편리하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매우 많다. 그러나 간혹 컴퓨터상의 화면에서 보이는 색상이나 사이즈 등이 실제의 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보거나 판매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3) 지불방식

지불방식에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등이 있다.



〈신용카드〉



〈상품권〉

(4) 물건구입

상품끼리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음식물의 경우 유통기한도 확인한다. 물건 값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구입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챙겨두고, 교환이나 환불할 때에는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5) 물건사용 전

- 품질보관서 보관 : 한곳에 모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사용설명서 읽기 :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 주의사항과 보관방법 확인 : 신체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사항과 보관방법은 반드시 확인한다.



〈품질보관서와 사용설명서〉

(6) 반품, 환불 시 주의할 점

- 물건을 사용하거나 손상시키지 말고 잘 보관한다.
- 7~14일 이내에 반품, 환불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반품·환불이 어렵거나 기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소비자원 : ☎ 1372, www.kca.go.kr

소비자시민모임 : ☎ 02-739-5441, www.consumerskorea.org

3. 저축과 은행 이용

(1) 저축의 필요성

재산 형성, 예상치 못한 재난대비, 노후대비, 내집마련, 자녀 등록금 등 목돈마련 등을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 저축을 위해서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2) 저축의 종류

- 보통예금 : 언제나 자유롭게 돈을 예금했다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 이자율이 낮다.
- 정기예금 : 목돈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찾지 않고 은행에 맡겨 두는 예금. 이자율이 높다.
- 정기적금 :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어 정해진 기간이 끝난 후 목돈이 되는 예금. 이자율이 높다.
- 자유저축예금 : 가계 저축을 우대하기 위한 신종 예금. 장기예금 시 이자율이 높다.

(3) 은행 이용

◎ 은행계좌 개설방법(통장 만드는 법)

- 준비물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도장, 저축할 돈
- 순서
 - ① 번호표를 뽑고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 ② 전광판에 자기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로 간다.
 - ③ 은행직원에게 용건(통장개설, 송금, 입금 등)을 말한다(현금카드가 필요하면 함께 신청한다).
 - ※ 현금인출카드 : 통장과 도장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 출금할 수 있는 카드
 - ④ 은행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 ⑤ 통장이 만들어지면 신분증과 함께 잘 챙겨온다.
 - ※ 비밀번호는 자신만 알고 있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말아야 한다.

◎ 은행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 09:00~16:00
- 업무시간 외 : 각 은행의 365일 코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 입금과 출금, 현금자동 인출

- 입금신청서나 출금신청서를 작성해서 창구로 가면 된다. 입금은 비밀번호가 필요 없지만 출금은 비밀번호, 사인(도장)이 필요하다.
-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입금, 출금을 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3번 연속 틀리면 입금, 출금을 할 수 없다. 은행업무 시간 외에 이용하거나,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인터넷 뱅킹

- 인터넷 뱅킹은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자기 계좌의 잔액조회, 입금과 출금, 송금이 모두 가능하다.
- 금융결제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PC 등에 저장해 두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하는 송금용 보안카드(secret card), OPT(one time password)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행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 알아두세요!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다.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인터넷 뱅킹보다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점이 있다.

◎ 공과금 납부

• 직접 납부

청구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한다. 요즘에는 창구에서 공과금 수납 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이 많다. 이런 경우엔 은행 내에 설치된 자동납부 기계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납부 기계를 이용하려면 해당 은행과 거래하는 통장이 있어야 한다.

※ 참고 : 우체국에서도 공과금을 받기 때문에 만약 통장이 없다면 우체국에 가서 내면 된다.

• 자동이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공과금이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지정하는 방식이다. 은행에 가서 신청해도 되고 공과금 청구기관에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뒤에는 공과금이 인출되는 날짜를 잘 기억해서 잔액을 충분히 남겨놓아야 한다.

◎ 송금

- 가족 이름으로 본국에 은행계좌를 만든다.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은행이름, 계좌번호, 송금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외환 창구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은행 직원이 알아서 해준다.
- 송금하고 받은 영수증은 잘 보관한다.

☞ 알아두세요!

가장 안전한 송금방법

가장 안전하게 송금하는 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과 같은 공식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 송금 조직(브로커)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이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송금업자가 중간에 돈을 가로채고 사라지는 사고가 빈번하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송금조직(브로커)은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알아두세요!

보이스 피싱

주로 전화나 문자로 고객들에게 허위 사실을 보내 예금이나 현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사기행위임

• 자녀납치 및 사고빙자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 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임

•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 금감원 명의의 허위긴급금지 문자메시지로 기망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편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정보를 알아내어 금전편취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하여 편취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 피해신고 전화번호

경찰청 국번없이 ☎112,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06 교통수단

1. 버스

버스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가 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 할 때는 승차권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 버스에 타기 전에 출발시간과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시내버스

◎ 시내버스 이용방법

- 버스요금은 탈 때 현금을 지불하거나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 교통카드는 정류장 주변의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교통요금은 한도금액 최대 50,000원까지 1,000원 단위로 현금을 충전할 수 있다.
* 요즘은 신용카드에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할인된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 탈 때 환승 요금이 적용되어 비용이 저렴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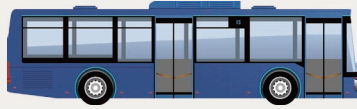
시내버스 요금 및 특징(일반요금)

구분	교통카드	현금
일반 시내버스	1,200원	1,300원
광역버스	2,300원	2,400원
마을버스	900원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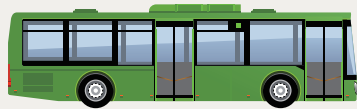
* 위의 표는 서울 지역 기준이며 이용방법 및 요금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역 시·구청의 교통정보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알아두세요!

서울의 시내버스



간선버스 : 중앙버스차선을 이용하여 교외 지역에서 서울 시내를 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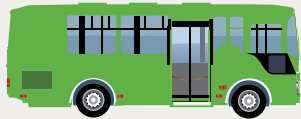
지선버스 : 서울 시내의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을 연결하며 운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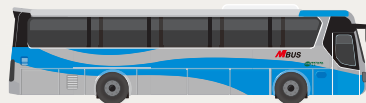
광역버스 : 서울 도심과 위성 도시 통근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한 특급 버스이다.



순환버스 : 서울 시내를 돌며 주요 철도역뿐 아니라 상업, 관광과 쇼핑 지역에 정차한다.



마을버스 : 철도역 또는 광역버스 환승거점, 아파트 단지 등 기타 지역을 잇는, 소규모 버스이다.



M버스(광역급행버스) : 수도권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을 신속히 하기 위해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4개 이내의 정류소만 정차한다.

환승제(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 접촉)

지하철과 전철이 다니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버스를 갈아타거나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할 때, 요금을 거리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 할인제도이다.

예를 들어 환승제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내고 버스를 갈아타면, 버스를 탈 때마다 요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환승제를 적용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더라도 총 거리 10km 이내에서는 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10km 이상이면 매 5km마다 추가요금 100원을 내면 된다. 지역에 따라 요금 할인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차 후 30분 이내 탑승해야 환승이 가능하다(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시간 이내).

(2)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방법**

-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며, 비교적 거리가 먼 지역의 도시를 방문할 때 이용한다.
- 시외버스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므로, 소요시간이 고속버스에 비하여 긴 편이다.
- 고속버스는 한 도시만을 방문하며, 일반 고속버스와 우등 고속버스,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있다. 우등 고속버스는 좌석 간의 거리가 넓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넓은 좌석 공간 및 테이블이 있고 개별 모니터가 전 좌석에 달려 있어 영화, TV 등 여러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프리미엄, 우등, 일반 고속버스 순서로 비싸다.

◎ **주요 도시 버스터미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탈 때는 각 지역마다 있는 버스터미널에 가야 한다. 코버스(www.kobus.co.kr)나 시외버스예매(txbus.t-money.co.kr)에서 운행정보, 승차권 예약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터미널 이름	전화번호	터미널 이름	전화번호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	1666-2600
동서울 종합터미널	1688-5979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1688-7797
센트럴시티터미널 호남	02-6282-0114	강릉 고속버스터미널	033-641-3184
상봉터미널	02-323-5885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033-631-3181
서울 남부터미널	1688-0540	춘천 고속버스터미널	033-256-1571
수원 종합버스터미널	1688-5455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1688-4321
인천 종합터미널	1666-7114	목포 종합버스터미널	1544-6886
안산버스터미널	1666-1837	전주고속버스터미널	063-277-1572
의정부 버스터미널	1688-0314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062-360-8114
대전 복합터미널	1577-2259	여수 시외버스터미널	1666-6977
천안 종합터미널	041-640-6400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1577-9956
동대구 터미널	1666-3700	마산 고속버스터미널	1688-3110

2. 지하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9개의 지하철과 인천1·2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노선별로 상이한 색상의 서울 지하철은 서울의 가장 번두리와 위성 도시 그리고 모든 곳을 가로지르는 많은 환승역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은 아침, 저녁 교통 체증 시간에는 2~3분 간격이고 그 외 시간에는 4~6분 간격이다.

(1) 승차권과 요금

구분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
어른	1,250원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	720원	일반 1회권 적용
어린이	450원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 위의 표는 수도권 지역 10km 이내 기준이며 이용방법 및 요금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지하철 운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 이용방법

- 1회 기본구간일 경우 1,250원이며(10km 이내 교통카드 사용),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 부과된다.
- 운행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 지하철 노선도는 지하철역 곳곳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휴대가 편리한 포켓용 노선도는 각 지하철 종합안내센터 또는 역무실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
- 지하철이 운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bus와 지하철을 바꿔 탈 경우, 환승요금제가 적용되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되는 방식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다를 수 있다.
- 요금은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나, 할인이나 환승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통카드에는 항상 1회 이용요금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잔액이 부족한 경우, 버스정류장의 매표소나 전철 내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원하는 현금을 내고 충전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무인 발매기 정보

- ① 교통카드 충전, 1회용 승차권 발급, 무임용 교통카드 중 원하는 서비스를 고른다.
 - ② 행선지 선택버튼(운임)을 누른다.
 - ③ 구매 시 필요한 매수를 누른다.
 - ④ 돈을 넣는다.
- ※ 1회용 승차권 구입 시 운임과 별도로 보증금이 필요하며, 보증금은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1회용 승차권의 보증금 및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무인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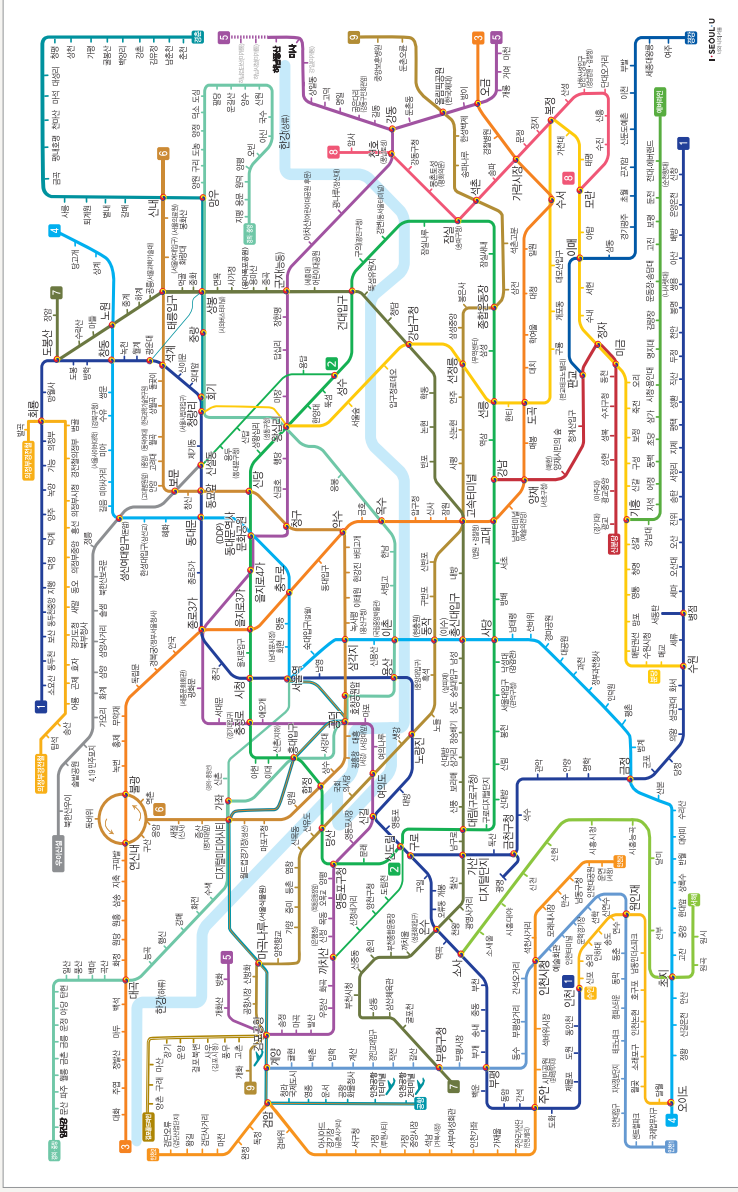
유아수유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지하철역, 기차역에 '아기사랑방',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등의 명칭으로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지하철 운행기관, 코레일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3) 지하철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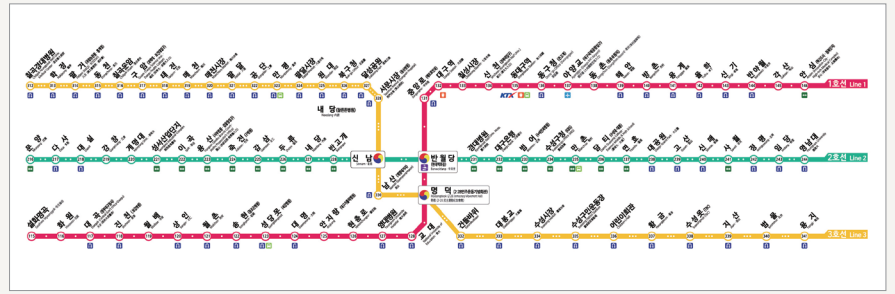
첫차나 막차시간, 역정보, 운행시간표, 빠른 경로 찾기 등의 정보는 다음 장의 각 지역별 지하철 운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서울교통공사 www.seoulmetro.co.kr
 서울시 메트로 9호선 www.metro9.co.k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네트웍스주식회사 www.shinbundang.co.kr
 코레일공철도 www.arex.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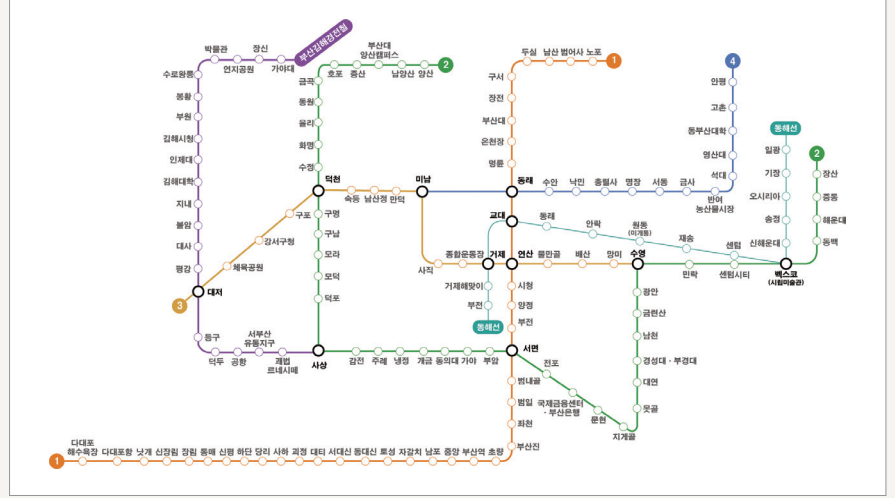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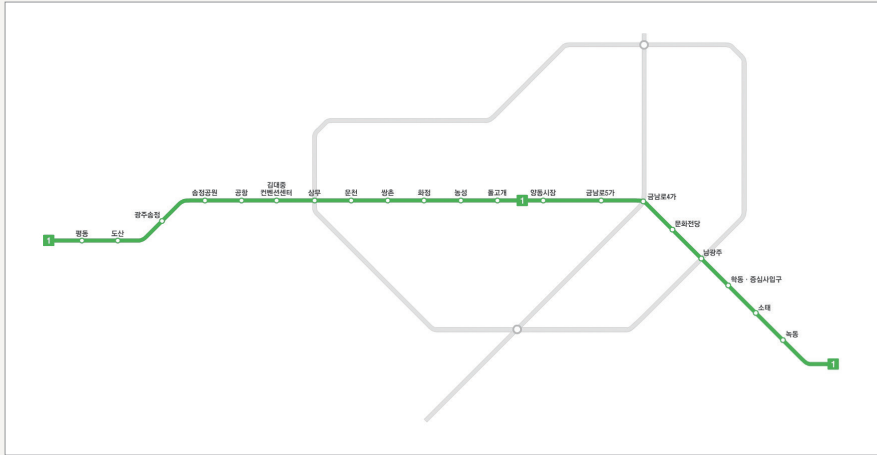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www.dtr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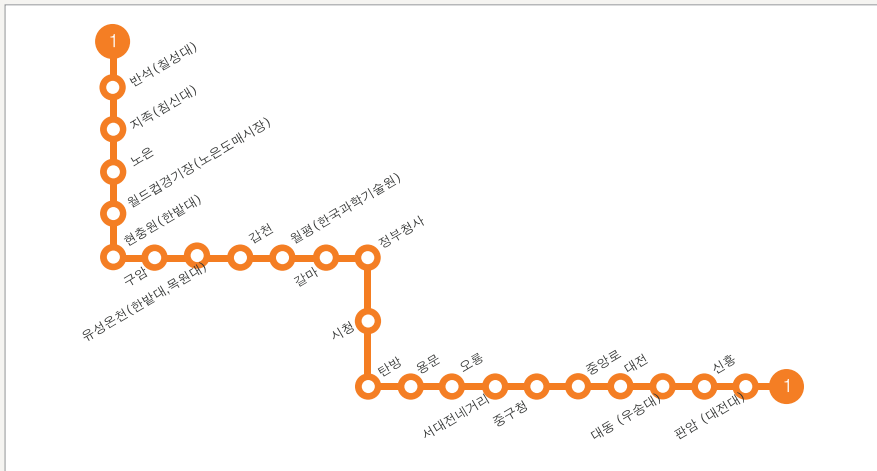
부산

부산교통공사 www.humetro.busan.kr





광주
광주도시철도공사 www.grtc.co.kr



대전
대전도시철도공사 www.djet.co.kr

3. 택시

택시는 24시간 운행한다. 자동차 위에 다양한 색상의 표시등을 달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과 쉽게 구분 된다. 택시를 타려면 택시 정류장에서 기다리거나 도로변에서 손짓을 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부르면 된다. 전화로 호출하는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택시요금 외에 별도의 수수료(통상 1,000원)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에는 각 지역마다 여러 콜택시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1) 일반택시

3~4명까지 탈 수 있고, 요금미터기가 있다. 기본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는데 3,800원(서울기준, 2km까지) 정도이다. 00:00~04:00까지는 심야 할증요금이 적용되며, 총 요금에서 20% 요금이 추가로 부가된다(2019년 4월 기준).



(2) 모범택시

배기량 2,000cc 이상의 고급승용차로 영업하는 택시이다. 대부분 검은색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기본요금이 6,500원(서울기준, 3km까지)으로 일반택시보다 훨씬 비싸다. 대신 야간탑승이나 장거리 이동 시에도 요금이 할증되지 않는다.



(3) 대형택시(콜밴 포함)

최대 9명까지 탈 수 있는 큰 택시로, 짐이 많거나 일행이 많을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모든 차량에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전화를 걸면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모범택시와 같은 6,500원이지만 기사와 승객의 흥정을 통해 요금이 결정되기도 한다.



4. 자가용

일반 가정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차를 자가용이라고 한다. 자가용의 종류에는 크기가 작은 경차부터 매우 다양한 차종이 있으며, 가격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 운전면허취득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장 또는 교통안전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한다.
- ② 신체검사(검사비용 별도)
- ③ 학과접수

필요한 서류	수수료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칼라사진 3매), 주민등록증(신분증 인정범위)	10,000원 (원동기 8,000원, 2종 소형 7,500원)

- ④ 학과시험(※ 학과접수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출제된 40문제 시험을 본다.
※ 응시가능 언어 : 한국어 외 3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⑤ 기능접수 :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기능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한다.

필요한 서류	수수료
응시원서, 주민등록증(신분증 인정범위) ※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	· 1, 2종 보통 22,000원 · 1종 대형·특수 20,000원 · 원동기 8,000원 · 2종 소형 10,000원

- ⑥ 기능시험 :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장내기능시험 코스를 통과하는 시험을 치른다.
- ⑦ 연습면허발급 :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운전면허가 나온다.

- ⑧ 도로주행접수 :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연습을 충분히 한 후 도로주행 시험접수 및 시험을 치른다.
- ⑨ 도로주행시험 : 도로주행 접수 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본다.
- ⑩ 운전면허증발급 : 운전면허 최종시험에서 합격하면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동차)에 따른 면허증이 발급된다.

◎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국내면허 인정국가 : 2020년 3월 경찰청 고시

※ 국내면허 인정국가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민면허로 교환 발급해주는 국가.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 선택

· 구비서류

구분	인정국가	불인정국가
외국인·외국 시민권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확인 가능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허용사진규격)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8,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확인 가능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허용사진규격)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18,000원(신체검사비 별도)

구분	인정국가	불인정국가
내국인·영주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 스탬프 등으로 면허증발급 국가에서 90일 초과 체류확인이 가능해야 함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8,000원(신체검사비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 스탬프 등으로 면허증발급 국가에서 90일 초과 체류확인이 가능해야 함 ·주민등록증 원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18,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 대사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에 '진위여부에 대한 증명서가 아니라고 명시된 경우' 교환발급이 불가합니다.
 - 캐나다 면허증 교환발급 시 '캐나다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와 '대사관 확인서'를 같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영국대사관/주홍콩한국총영사관/핀란드대사관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초과 체류 사실과 외국면허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로 90일 초과 체류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90일 초과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서류에 의한 확인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하다.
-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 교환 발급되는 면허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으로 달리 정한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기타 : 대리접수 불가(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 유의사항 :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단,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불필요).

◎ 국제면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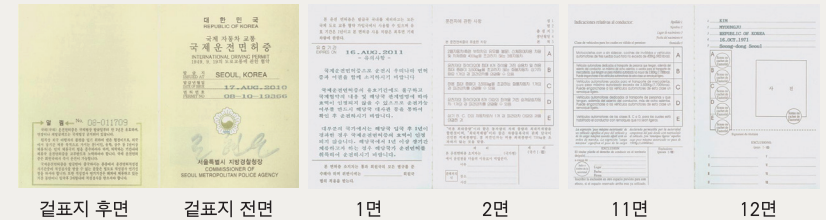
항목	내용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3.5×4.5cm)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3.5×4.5cm)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가능), 위임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도 국제면허증 발급 가능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에 한함),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3.5×4.5cm) 1매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경찰서 방문·신청 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후 신청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수료	8,500원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항목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고 운전해야 한다. · 또한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 양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단, 베트남에서는 운전불가)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년 7월 1일)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년 12월 20일)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하다.

대한민국 면허증 견본



국제운전면허증 견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혹은 전화로(☎1577-112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5. 기차

기차는 항공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다. 대부분의 주요 대도시에는 기차역이 있으며, 버스 및 지하철과 연결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있다.

(1) 승차권 구입방법

승차권은 인터넷(www.letskorail.com)과 코레일톡 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역의 매표소, 승차권 자동 발매기 등을 이용하여 예매할 수도 있다. 예약은 24시간 가능(인터넷)하며 승차하려는 열차의 출발 한 달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열차 탑승 시 지정된 승차권을 소지하여야 한다(SRT는 etk.srail.co.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2) 고속철도(KTX·SRT) 이용안내

고속철도(KTX·SRT)는 빠른 속도로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시키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일반실과 특실로 좌석이 구분되어 있으며 화장실, 수유실, 스낵 자동판매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 전원 콘센트 사용으로 쾌적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알아두세요!

- KTX 노선(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강릉선)은 '레츠코레일(www.letskorail.com)' 홈페이지의 '기차역 정보' 메뉴, 혹은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 SRT 노선(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은 'SR(etk.srail.co.kr)' 홈페이지의 '이용안내 > 기차역 정보 > 철도노선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다.

6. 항공

비교적 장거리를 이동할 때 항공편을 이용하면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비용이 다른 교통편에 비해 비싸다. 국내에서는 주로 서울-부산, 서울-제주, 서울-울산, 서울-광주, 서울-사천, 서울-여수 등을 운행한다. 항공티켓은 보통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예매한다.

(1) 국제공항

공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	1577-2600	www.airport.kr
김포국제공항	1661-2626 (한국공항공사)	www.airport.co.kr/gimpo/main.do
김해국제공항		www.airport.co.kr/gimhae/main.do
대구국제공항		www.airport.co.kr/daegu/main.do
무안국제공항		www.airport.co.kr/muan/main.do
양양국제공항		www.airport.co.kr/yangyang/main.do
제주국제공항		www.airport.co.kr/jeju/main.do
청주국제공항		www.airport.co.kr/cheongju/main.do

(2) 국내공항

공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군산공항	1661-2626 (한국공항공사)	www.airport.co.kr/gunsan/main.do
광주공항		www.airport.co.kr/gwangju/main.do
사천공항		www.airport.co.kr/sacheon/main.do
여수공항		www.airport.co.kr/yeosu/main.do
울산공항		www.airport.co.kr/ulsan/main.do
원주공항		www.airport.co.kr/wonju/main.do
포항공항		www.airport.co.kr/pohang/main.do

(3) 주요 항공사 연락처

나라명	항공사명	전화번호	나라명	항공사명	전화번호
대만	중화항공	02-317-8888	일본	일본항공	02-757-1711
대한민국	대한항공	1588-2001	일본	ANA항공	02-2096-5500
대한민국	아시아나항공	1588-8000	중국	길상항공	051-463-0093
대한민국	에어부산	1666-3060	중국(홍콩)	케세이드래곤에어	1644-8003
대한민국	이스타항공	1544-0080	중국	중국국제항공	02-774-6886
대한민국	제주항공	1599-1500	중국	중국남방항공	1899-5539

나라명	항공사명	전화번호	나라명	항공사명	전화번호
대한민국	진에어	1600-6200	중국	중국동방항공	1661-2600
대한민국	티웨이항공	1688-8686	중국	중국상하이항공	1661-2600
라오스	라오항공	02-6357-0808	캄보디아	스카이앙코르항공	02-752-2633
러시아	야쿠티아항공	02-335-6944	태국	타이항공	02-3707-0114
몽골	몽골항공	02-756-9761	필리핀	세부퍼시픽	02-6105-2037
베트남	베트남항공	02-757-8920	필리핀	필리핀항공	1544-1717
일본	피치항공	02-2023-6764	베트남	비엠히항공	02-319-4560

07 공공기관 이용

1. 행정기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찾게 되는 행정기관으로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이 있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신고 등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수행한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문화강좌 등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주요 지하철역의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인터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2. 경찰서(☎112)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이를 목격한 때에는 ☎112로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공중전화에서는 빨간색 긴급통화버튼을 누른 후에 ☎112를 누르면 되고, 일반전화나 휴대폰에서는 국번없이 ☎112를 누르면 된다. 범죄피해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와 함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침착하게 설명하고, 범인의 인상착의나 특징, 도망친 방향과 어떻게 도망쳤는지를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3. 소방서(☎119)

불이 나거나 누군가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때, 또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면 된다. 공중전화에서는 빨간색 긴급통화버튼을 누른 후에 ☎119를 누르면 되고, 일반전화나 휴대폰에서는 국번없이 ☎119를 누르면 된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집의 위치와 층수, 종류와 함께 주변의 주요건물을 설명하고, 빨리 누군가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경우에는 아픈 사람에 대한 기본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담원과 연락을 지속하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4. 우체국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에는 집 근처의 우체국을 이용하면 된다. 우체국에서는 국내우편, 국제우편 업무를 모두 취급하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역할도 한다. 국제우편 용무가 있을 때는 외국으로 빠르게 우편물을 보내는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할 수 있다.

- 우편고객만족센터 : ☎1588-1300, ☎82-2-2108-9895(영어 가능)
- 금융고객센터 : ☎1588-1900
- 우정사업본부 : www.koreapost.go.kr
- 인터넷우체국 : www.epost.go.kr

(1) 국내 우편

보통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 배달한다. 섬 지역이나 산간 지역은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요금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기준을 초과하는 중량이나 크기의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초과한 요건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 통상우편물요금

구분	중량	우편요금
규격 우편물	5g까지	350원
	5g초과 25g까지	380원
	25g초과 50g까지	400원
규격 외 우편물	50g까지	470원
	50g초과 1kg까지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1kg초과 2kg까지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kg초과 6kg까지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2) 우체국 택배

우체국 택배를 신청하면 직장이나 가정을 방문하여 택배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화신청 : ☎1588-1300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접수불가)
- 인터넷접수 : www.epost.go.kr(24시간 연중무휴 신청 가능)
- 요금안내(등기소포 창구접수)

구분	~1kg (50cm)	~3kg (80cm)	~5kg (100cm)	~7kg (100cm)	~10kg (120cm)	~15kg (120cm)	~20kg (120cm)	~25kg (120cm)	~30kg (160cm)
익일배달	3,500	4,000	4,500	5,000	6,000	7,000	8,000	9,000	11,000
제주 익일배달	5,000	6,500	7,000	7,500	8,500	9,500	10,500	11,500	13,500
제주 D+2일 배달	3,500	4,000	4,500	5,000	6,000	7,000	8,000	9,000	11,000

※ 우체국 택배는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하고, 제주(D+2)는 접수 2일 뒤까지 배달함.

(3) 국제 우편

국제 우편은 항공 소포와 선편 소포, 국제특급우편 EMS, EMS프리미엄이 있다. EMS란 편지나 서류, 상품 등을 전 세계 143개 국가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최고 30kg까지 보낼 수 있다. 취급 품목은 편지나 서류, 신용장, 서적, 금융기관의 교환수표, 상품 견본, 각종 물품 등이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는 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기도 한다. 또 나라에 따라 취급을 금지하는 품목도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중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1588-1300번으로 문의하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ems.epost.go.kr), EMS프리미엄(www.emspremiu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MS 다문화가정 할인제도

다문화가정 내 외국인 및 국적취득자의 국내 조기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발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물건을 국제특급우편(EMS) 접수 시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우편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 감액적용대상

- ①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로 명시된 자
-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③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4) 금융 서비스

구분	이용가능일	이용시간	비고	
우체국 창구	대민업무	평일(월~금)	09:00~16:30	공휴일 이용 불가
	CD/ATM* *우체국 내부 설치 자동화기기	평일(월~금)	09:00~18:00	공휴일 이용 불가
365코너	연중무휴(월~일)	(기본) 07:00~23:30	일부장소는 05:00~익일 04:00(23시간)	

5. 도서관

도서관은 서적이거나 시청각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관하여 지역주민의 학습이나 교양, 평생교육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시·군·구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알아두세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02-535-4142)이 있다.

- 이용시간 : 자료실 : 월~일요일 09:00~18:00(야간 도서관 18:00~22:00)
- 휴관일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필기도구를 제외한 개인 휴대품은 보관함에 넣고 입관
- 이용자 등록(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회원가입) → 이용증 신청 → 이용증 발급 → 출입게이트 통과 → 자료실 이용 → 자료이용종료 → 이용증 반납
- 찾아가는 길 :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도보 10분,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5번 출구 도보 15분

 **08** **근린생활시설 이용**

1. 미용실

파마, 커트, 염색, 손톱손질,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른데, 단순 커트일 경우 대개 10,000~30,000원 정도이며, 파마는 20,000원에서 100,000원 이상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2. 목욕시설의 종류

한국의 대중목욕시설은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으로 나뉜다.

- 목욕탕 : 욕조와 샤워시설이 있다. 요금은 5,000~6,000원 정도이다.
- 사우나 : 욕조와 샤워시설, 휴식공간이 있다. 요금은 시설에 따라 다르다.
- 찜질방 : 욕조와 샤워시설, 휴식공간, 수면실이 있다. 욕탕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남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설에 따라 다르다.

- 사우나와 찜질방 입장료엔 휴게실, 수면실, 운동기구 등 내부 시설들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음식 구입, 이·미용 서비스, 마사지를 이용할 때는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한다.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면 때를 밀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 목욕시설 대형 욕조의 수온은 43~45℃이며, 찜질방의 실내 온도는 40~70℃다. 무료로 이용하는 건식 사우나 공간은 70~100℃, 한증막은 70~130℃다. 적당한 시간 동안 체질에 맞게 잘 이용하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한편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 알아두세요!

• 한국의 목욕 문화

한국은 목욕 문화가 유난히 발달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1~2주에 한 번씩 대중목욕시설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때를 벗겨 낸다.

목욕할 때는 모든 옷을 벗고 목욕한다. 한국에서 함께 목욕을 하러 가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뜻한다. 친하지 않으면 알몸으로 함께 목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가 없는 나라 사람에게는 아주 낯설고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때때로 목욕탕에 간 외국인들이 속옷을 입고 탕 속에 들어가서 한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다. 알몸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목욕하는 것이 익숙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지켜야 한다.

• 목욕탕에 가면 안 되는 경우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사람도 뜨거운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임신부나 심장병 환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들어가는 안 된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약 30분 간격으로 물을 한 잔씩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식수는 대개 무료로 제공되며 청량음료 등도 판매한다.

밤에 술을 많이 마신 뒤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잠을 잔 다음 곧바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건강에 몹시 해롭다.

또한, 피부질환이나 전염병이 있다면 절대로 대중목욕시설에 가서는 안 된다.

•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순서

- ①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샤워하고 머리를 감는다.
- ② 뜨거운 물로 채워진 대형 욕조 안에 5~10분 정도 앉아서 땀을 뺀다.
- ③ 욕조에서 나와 손이나 목욕수건으로 몸을 문질러 '때'를 제거한다.
- ④ 각자 취향에 따라 냉수탕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간다.
- 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샤워한다.

• 목욕탕에서 지켜야 할 것

속옷을 입은 채로 욕탕 안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때를 밀지 않는다. 따뜻한 물과 비누가 있다고 해서 빨래를 하지 않는다.

3. 병·의원

병·의원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기 위한 곳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질병별 진료과목에 따라 운영되는 일반병원, 모든 질병을 관리하는 종합병원, 한방의학을 통해 치료하는 한방병원 등이 있다. 질병의 상태와 치료방법에 따라 진료비용은 다양하다.

※ 병·의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장 건강과 의료 > 3. 의료기관' 내용 참고

4. 약국

약사가 치료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곳으로 건강보조 및 보건에 필요한 의약품 판매를 겸하는 곳이다. 약국은 국가로부터 인증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도록 특별히 관리되고 있으며 조제 업무 외에도 투약과 복약 방법을 지도한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5. 마트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판매한다. 규모에 따라 소형마트부터 대형마트로 분류된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서비스와 품질이 좋아 이용객이 많다. 시간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 경제적인 쇼핑도 가능하다.

6. 영화관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공간으로 그 규모가 다양하다. 최근 상영관마다 특징을 달리하여 3D, 4D영화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폭넓은 상영 시간대를 갖추고 있다.

7. 근린공원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이다. 지역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있으며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과 성인을 위한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인근 거주자들의 건강과 정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카툰으로 보는 문화 이야기 4 】

한국의 가정을 방문할 때의 예절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약속 시각에 딱 맞춰 방문하거나 5분 정도 일찍 방문하는 것이 예의다. 또 초대해준 사람의 인테리에 대해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약속 시각보다 10~30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이 예의 바른 태도다. 더불어 인테리어 물품 등을 계속 칭찬하는 경우에는 손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신과 육아

5장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보육 및 유아 교육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룹니다.



144

임신과 출산

아기를 위한 준비

임산부가 받아야 할 검사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 주의할 점

임산부를 위한 보건소 서비스

출산

151

영유아 건강관리

아이의 발달 단계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157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보육 및 유아교육

보육료·유아학비·가정

양육수당 지원

01 임신과 출산

1. 아기를 위한 준비

◎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필요한 검사

-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전 검사 및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구분	검사 필요성	예방처치
풍진	임신 초기 감염 시 태아 기형 초래 가능	면역력이 없다면 풍진(MMR*) 백신 최소 1회 접종 ※ 접종 후 3개월 이후 임신 권장
B형간염	임신부가 B형간염 감염 상태인 경우 출생 시 신생아 감염 위험이 높음	• 면역력이 없다면 임신 전 B형간염 백신(0, 1, 6개월 간격으로 총 3회) 접종 • 임신부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경우 분만 직후 자녀(신생아) 예방처치 필요 ※ 2. 영유아 건강관리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고

*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

** 과거에 접종받았다라도 풍진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양성이 아니라면 1회 더 접종해야 하며, 총 접종횟수는 3회를 넘지 않도록 함

선천성지카증후군

- 출생 전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태아 감염 전파를 통해 소두증 등 심각한 뇌 기형 같은 신경학적 결손을 유발
- 동남아시아 등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람(남·여 모두)은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여 6개월간 임신을 연기

2. 임신부가 받아야 할 검사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상태에 따라 한층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검사항목과 검사 내용

혈액 검사	일반혈액검사	임신부의 건강을 평가하고 임신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혈액검사(혈색소, 혈소판, 적혈구 등) 및 에이즈, 풍진 등의 질병 여부를 검사한다.
	혈액형검사	ABO혈액형과 Rh인자를 검사한다. Rh음성인 임신부에게는 임신 28주에 Rh면역글로블린을 투여한다.
	매독검사	태아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태아감염을 초래하는 매독 여부를 검사한다.
	간염검사	간염 여부를 검사한다. 특히 B형 간염은 임신 중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태반을 통해 분만이나 수유 시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다.
소변검사		당과 단백질을 검사해 임신독증이나 당뇨병 등을 진단하고, 요로감염 여부도 검사한다.
초음파검사		자궁 내부를 보면서 태아 성장발육 정도, 태아의 위치나 모양, 기형유무 등을 알 수 있다.

3.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 주의할 점

- 건강한 엄마에게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엄마가 건강해야 한다. 만약 이미 질병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는다.
- 약물은 함부로 먹지 않는다.
임신 중에는 가능한 약물 복용을 피해야 한다. 약물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임신 초기는 태아의 손, 발, 심장, 중추신경계 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매우 주의해야 한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나 감염으로 인한 장기간의 고열 등 그냥 내버려두면 임신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복용을 포함한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 술이나 담배는 절대 금지한다.
술은 강력한 기형유발 물질로 태아 알코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절대 음주를 하지 않는다. 담배는 태아 성장을 방해하여 저체중출생아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임신 전에 담배를 끊는 것이 좋다.

-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일상적인 식사만 제대로 한다면, 영양제를 따로 복용할 필요는 없다. 영양 섭취에 이상이 없으면 임신 초기 4개월간은 월 1kg, 후반기 6개월은 월 2kg 정도로 총 13kg 정도 증가한다. 다만, 철분은 임신 5개월째부터 별도로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 철분제는 공복에 먹는 것이 흡수를 증가시킨다. 가임기 여성은 신경관 결손의 예방을 위해 매일 일정량의 엽산을 섭취해야 한다.
- 임신 중 생리적으로 장운동이 감소하여 변이 딱딱해지고 커진 자궁에 의해 장이 압박되어 변비가 잘 생긴다. 신선한 과일, 채소의 섭취로 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충분한 물의 섭취, 규칙적 운동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무리한 활동은 자제한다.
임신한 여성이라고 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일상생활은 계속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나 운동을 강화하는 것은 주의한다. 무리한 중노동이나 높은 곳을 오르는 위험한 작업은 피해야 한다.
- 임신 마지막 4주 전까지는 임신 중 성고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한다.
-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을 권장한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아 예방이 필요하여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임신부는 장기간 앉아서 여행을 할 경우 적어도 한 시간마다 하지를 규칙적으로 움직여 정맥순환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 임신 시에 부종은 하대정맥 또는 골반내 정맥이 눌러서 하지에 잘 발생한다. 다리를 높이 들어주면 도움이 되나 임신성고혈압에서도 잘 나타나므로 임신 후반기 부종이 있으면 반드시 혈압을 확인한다.
- 임신 중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
이는 증가된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궁목샘에서 점액의 생산이 증가되기 때문이며 병적인 것은 아니다.
-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는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는다.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산전관리를 통해서 어머니 아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들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

☞ 알아두세요!

한국의 태교

한국에서는 임신 중 어머니의 마음과 몸가짐이 태아에게 정서적·심리적·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왔다. 건강하고 좋은 자손을 얻기 위하여 임신부가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하고,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며,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려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태교라고 한다. 따라서 음식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일일이 금지되는 것이 많다. 한국인 식구들이 태교를 위해 충고할 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도 태교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4. 임신부를 위한 보건소 서비스

모든 임신부는(결혼이민자 포함)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는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고위험 임신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임신부(20세 미만 및 35세 이상),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임신질환이 있는 경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낳은 적이 있는 임신부를 말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1) 무료 산전검사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임신 조기진단 검사, 소변검사(당뇨, 단백질검사),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신부 산전검사는 보건소에 등록하기만 하면 지원을 받는다(보건소마다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음).

(2) 출산준비교실 등 교육 실시

- 모유수유교실, 임신부체조교실, 출산준비교실, 아기마사지교실 등을 운영한다.
 - 임신·태교·분만 관련 서적 및 CD, 비디오 등을 대여해 주는 지역도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3)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한다.

(4) 엽산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한다.

(5)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의 90%(300만원 한도 내)
-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등

(6)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이들의 영양위험요인 개선과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 지역 내 거주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영양식품 패키지 제공.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굴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품을 무료로 제공(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초과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 자부담) ◎ 영양교육 및 상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영양 위험요인을 고려한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 가정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병행 • 최소 한 달에 1번 이상 실시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처 : 보건소 ◎ 필요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건강보험증,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서류 : 임신·출산여부 증명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단,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도 제외)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 '라파엘클리닉'(http://raphael.or.kr ☎02-764-7595)에서도 기형 검사 등의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7)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제공하여 임신부 및 태아의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 임신부(주수에 관계 없이 접종 가능)
 -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1회
-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 * 주소지에 관계 없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 우리아이예방접종관리 →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

5. 출산

출산은 산부인과를 이용한다.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를 받았던 임신부라도 출산은 일반 병·의원에서 해야 한다. 출산 전 준비는 차근차근 해놓아야 출산 시 당황하지 않게 된다. 아기를 낳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가 있다.

(1) 자연분만

- 약물이나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적인 진통이 일어나 질(산도)을 통해 아기를 분만하는 방법을 말한다. 분만을 쉽게 하기 위해 회음부를 절개한다.
- 오랜 시간 경과해도 출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진통촉진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처음 아기를 낳는 경우는 10시간 이상, 둘째 아이 이상인 경우는 5시간 정도 걸린다.
- 출산과정에서 통증이 심하지만 일단 아기를 낳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는 가장 좋은 분만 방법이다. 또한 입원 기간도 2박 3일 정도로 짧으며 비용 역시 저렴하다.

(2) 제왕절개

- 자연분만이 어려울 때는 제왕절개 분만을 해야 한다. 고령출산, 골반이 좁거나 태아가 거꾸로 있는 경우 등, 분만 시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한다.
- 제왕절개는 수술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왕절개 분만을 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 혹은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보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도움을 주는 기관에 연락을 하면 통역·번역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2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기는 신체발육이 왕성하고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보건소를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 및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 아이의 발달 단계

(1) 체중

출생 시 3kg, 6개월에 2배(6kg), 1년에 3배(9kg)

(2) 신장

출생 시 약 50cm, 1년에 1.5배(75cm)

(3) 신체발달

4개월	머리를 가눌 수 있고, 누운 채로 좌우로 몸을 돌릴 수 있음
5개월	몸을 뒤집을 수 있음(복부에서 등으로)
6개월	등에서 복부로 뒤집으며, 엎드린 채 양팔로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음
7개월	도움을 받아 앉음
8개월	도움 없이도 앉음
9개월	기어다님
10개월	가구 잡고 일어남
12개월	가구 잡고 걸어다님

알아두세요!

육아갈등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집안 어른들의 육아방식과 달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은 한국의 가정에서 시부모와 젊은 부부 간에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시부모님과 대화를 통하여 풀 수 있도록 한다.

육아갈등의 예

- 음식이나 우유는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먹인다. ↔ 시간에 맞춰 먹인다.
- 통통해야 좋으니 많이 먹여야 한다. ↔ 적정량을 먹인다.
- 보채면 업어준다. ↔ 자꾸 업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 찬 우유를 먹어야 장이 튼튼해진다. ↔ 너무 찬 음식은 장을 자극한다.

2. 예방접종

예방접종이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성 질환 예방 주사제를 접종대상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다.
-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평소 다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도록 한다.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한다.
- 예방접종 후 문제 발생 시 병원 재방문이 가능하도록 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시행한다.
- 아이의 예방접종일정을 확인하고, 접종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수첩을 챙긴다.
 - * 예방접종기록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전산등록이 누락된 접종정보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하기 위함
- 미리 목욕시킨 다음, 깨끗한 옷을 입혀 데려간다.
- 아기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부모가 직접 데려간다.

(2)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한다.
- 접종 당일엔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쉬도록 하고, 접종 후 2~3일간은 아이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갧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된다.
-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 * 소아가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 백신에 대한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 지원대상 및 접종 기관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무료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면제자 포함)가 있는 경우 보건소 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본인(또는 보호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여권 등)를 가지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 *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자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 * 지정 의료기관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 우리아이예방접종관리 →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

◎ 어린이 표준예방접종 일정(2020)

구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출생~ 1개월이내	1개월	2개월	4개월
국가 예방 접종 ¹⁾	결핵	BCG(피내용)	1	1회			
	B형간염	HepB	3	1차	2차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DTaP	5			1차	2차
		Tdap/Td	1				
	폴리오	IPV	4			1차	2차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			1차	2차
	폐렴구균	PCV	4			1차	2차
		PPSV	-				
	홍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2				
	수두	VAR	1				
	A형간염	HepA	2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	5				
		LJEV(약독화 생백신)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2				
인플루엔자	IIV	-					
기타 예방 접종 ²⁾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1	2			1차	2차
		RV5	3			1차	2차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가능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 23개월	24~ 35개월	만4세	만6세	만11세	만12세
3차									
3차			4차			5차			
								6차	
		3차				4차			
3차	4차								
3차	4차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1차					2차			
	1회								
			1~2차						
			1~2차		3차		4차		5차
			1차		2차				
									1~2차
매년 접종									
3차									

※ 일부 백신의 경우 권장접종일정보다 접종시기가 지연된 경우 의사와 상의한 후 지연된 일정에 따라 접종

※ 1) 국가예방접종 :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2) 기타예방접종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이외 감염병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유료예방접종

◎ 기타 예방접종 서비스

• 예방접종내역 조회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및 모바일 앱에서는 예방접종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의 접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자녀정보 등록 필요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모바일 앱 로그인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 무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출력) 받을 수 있다.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예방접종 알림 문자서비스

대상자가 다음 예방접종일정을 잊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서비스로,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휴대전화 문자 수신을 동의하는 경우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사전알림 및 누락접종 안내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다국어 문자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보건소 또는 접종기관에 희망 언어를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언어로 수신할 휴대전화번호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 ※ 다국어 문자서비스가 제공될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등록된 번호로 발송
- ※ 다국어 서비스 제공(12개 언어) : 네덜어, 라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방처치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항원·항체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산기 : 출산 전·후 기간(임신 29주~생후 1주)

◎ 지원대상 및 사업 참여 방법

- 지원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대상자가 분만기관에 산모 본인의 B형간염 검사결과지와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시 참여 가능

* 동의서 작성 시 B형간염 접종 및 검사일정 안내를 위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안내문자 수신 가능

◎ 예방처치일정

•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 출생 시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는 총 4회 기초접종 필요(0, 1, 2, 6개월 실시)

• (생후 1, 6개월) B형간염 2, 3차 예방접종

• (생후 9~15개월) B형간염 항원·항체 1차 정량검사

* B형간염 항원·항체 1차 검사결과에 따른 재접종(최대 3회) 및 재검사(최대 2회) 비용 전액지원

03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1. 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어린이집

-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시키는 시설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설이다.
- 보육시간은 평일 07:30~19:30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기관에 따라 시간 연장보육, 24시간 보육지원을 하기도 한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발달을 위한 내용으로 교육한다.
- 월간 보육료는 보육시간 및 아이의 연령, 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만 0~2세(다문화가족 아동 포함)까지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는 343,000~470,000원, 만 3~5세(다문화가족 아동 포함)는 누리공통과정으로 월 240,000원,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에게는 478,000원을 지원한다.

(2) 유치원

-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학교이다.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은 보통 09:00~17:00까지 운영된다. 유치원 여건에 따라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위하여 07:00~22: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유치원은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교육한다. 주로 체험 및 활동(주제) 중심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전인발달을 돕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 월간 유아학비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월 60,000원, 사립유치원 월 240,000원을 지원한다.

알아두세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로 지정된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을 통해 다문화유아를 위한 언어 및 기초학습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131개 유치원(2018년 기준)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또는 다문화교육 포털(www.nime.or.kr)을 통해 거주지역의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유치원)를 확인할 수 있다.

2. 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영유아(만 0~5세 이하)는 어린이집(만 0~5세)이나 유치원(만 3~5세)을 이용할 수 있고, 국가는 각 연령에 맞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이다.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0~5세 아이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 영유아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0~2세(다문화가족 아동 포함)까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는 343,000~470,00원, 만 3~5세(다문화가족 아동 포함)는 누리과정과정으로 월 240,000원,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에게는 478,000원을 지원한다.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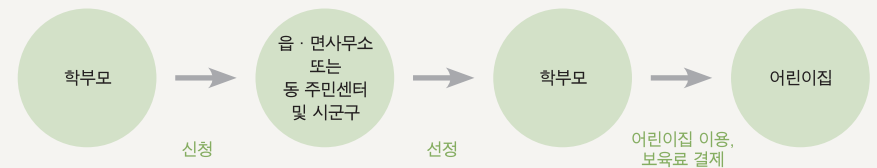
구분	지원단가	장애아보육료	비고
만 0세 보육료	470,000	478,000	-
만 1세 보육료	414,000		
만 2세 보육료	343,000		
만 3~5세 보육료	240,000		

※ '20.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기본보육(07:30~16:00)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인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다.

◎ 신청방법

보호자(부모 및 기타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www.bokjiro.go.kr), 아이사랑 모바일앱(안드로이드마켓 등 다운)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단,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원하는 비등록 장애아동인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온라인신청 불가)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신청서, 종일형 사유 확인서 및 자격 기준 증명서류(종일형 자격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아이행복카드가 발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매월 아이행복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아이행복 카드로 함께 결제).

(2)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연령	구분	지원범위
만 3~5세	유아학비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전 계층 지원
	방과후 과정비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참여자(1일 기본 교육과정 포함 8시간(학부모 동의 시 7시간) 이상)에게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만 5세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60,000	240,000
	만 4세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만 3세	2016년 1월 1일 ~ 2017년 2월 29일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4년 1월 1일 ~ 2017년 2월 29일	50,000	70,000

◎ 지원 절차 및 방법

- (신청) 보호자가 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www.bokjiro.go.kr)
-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 확인
- (지원) 지원대상가구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3)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취학전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양육 수당 : 12개월 미만(월 200,000원), 12~24개월 미만(월 150,000원),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월 100,000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36개월 미만(월 200,000원), 36개월~86개월 미만(월 100,000원)
- 농어촌 양육수당: 12개월 미만(월 200,000원), 12~24개월 미만(월 177,000원), 24~36개월 미만(월 156,000원), 36~48개월 미만(월 129,000원), 48~86개월 미만(월 100,000원)

(단위 : 원)

연령	양육수당	연령	농어촌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0,000	0~11개월	200,000	0~35개월	200,000
12~23개월	150,000	12~23개월	177,000		
24~35개월	100,000	24~35개월	156,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36~47개월	129,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출생아 소급지원**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
- 지급방법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 **거주지 변경 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 지원기간 산출식: 대상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 **선정기준**

- 소득수준 무관하게 전(全)계층 지원. 단,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선정기준 구비서류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사본	농어업인가구의 자녀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아동 '장애인등록증'

◎ **신청**

- 보호자가 영유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 '복지로')

(4)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돕는다.

◎ **지원 대상** :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에게 지급한다.

◎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지원 절차 및 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 복지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을 한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5) **아이돌봄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 **사업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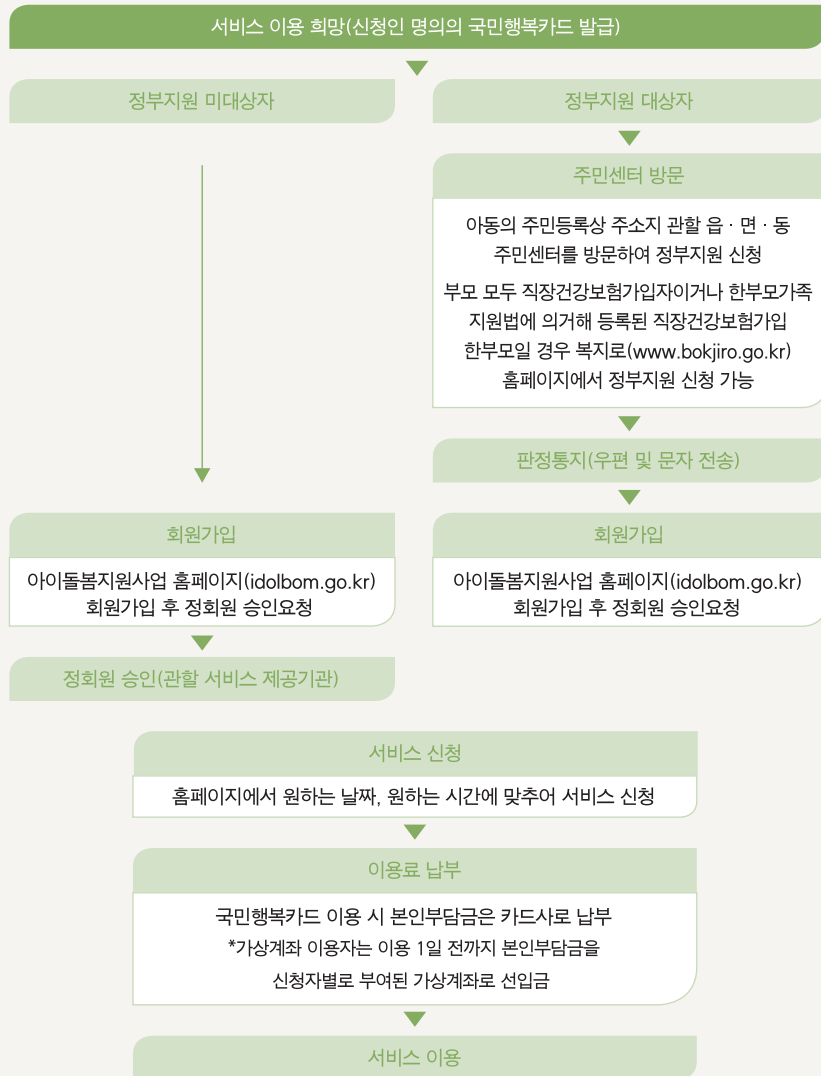
◎ **수행기관**

-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3개소

◎ **주요내용**

- 시간제·종합형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 종합형 돌봄 서비스는 가사 포함
- 영아 종일제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

◎ 서비스 신청방법·절차



※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하거나 아이돌봄지원사업(idolbom.go.kr)을 통하여 검색 가능하며,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카툰으로 보는 문화 이야기 5 】

한국의 산후조리음식, 미역국



한국에서는 산후조리를 할 때 보통 미역국을 먹는다. 요오드, 칼슘, 무기질이 풍부한 미역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모유수유 시에도 도움을 준다. 베트남에서는 산후조리 시 닭고기, 새우, 안심을 볶은 요리와 '샤오톳'이라는 채소를 많이 먹는데 자궁수축과 자궁 속 찌꺼기 배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나라별로 산후조리 문화가 다르므로 출산을 앞둔 다문화가족은 미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교육

6장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 사업도 소개합니다.



168	171	178
한국의 교육제도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교육제도 일반	교육 내용	교육 내용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초등학교 입학안내	
	입학준비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도	
184	187	190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교육	청소년 국제교류 (다문화가정 참여 지원)
교육 내용	대학의 종류	국제교류 사업 소개
고등학교 유형	장학금	다문화가정 우대
학생복지		신청방법

01 한국의 교육제도

1. 교육제도 일반

한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전문대학은 2년)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기간으로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2. 교육과정 운영

일 년을 두 개의 학기로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일반적으로 1학기는 3월초, 2학기는 8월말~9월초에 시작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된다.

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 한국어학급(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학급으로 지정된 유·초·중·고등학교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등 학생의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 217개 학교(2019년 기준)에서 326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 또는 다문화교육 포털(www.edu4mc.or.kr)을 통해 거주지역의 한국어학급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중언어교재 및 전자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foundation.miraeasset.com) 또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 접속하여 이중언어교재 「엄마아빠와 함께 배우는 ○○어*」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다.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학교·지역대회를 거쳐 매년 10월 말~11월 초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등 10개 언어

◎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과 1:1 매칭하여 학교적응과 기초학습을 지원한다. 대학생 멘토가 멘티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방과 후 또는 방학동안 학습을 도와준다. 주당 20시간(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 정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다문화 대안학교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원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명	학교급	특징	교육비	문의처
지구촌학교 (서울 구로구) www.globalsarang.com	초	•한국어, 영어, 제2외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다중언어 특화교육 실시	무료	02-6910-1004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구 서울다솜학교, 서울 종로구) www.sds.hs.kr	고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교육과 한국어교육 실시 •관광콘텐츠과, 관광서비스과 운영	무료	070-8685-7798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충북 제천) dasom.kopo.ac.kr	고	•기술습득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운영 •전교생 기숙사 생활	무료 (기숙사비 무료)	043-649-2800
인천한누리학교 (인천 남동구) (www.hanuri.icesc.kr)	초· 중· 고	•한국어교육과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학력신장, 진로과정, 체험활동) 운영 •초등 5학년 이상 기숙사 생활 가능	초·중등 : 무료 고등 : 유료 (기숙사비 별도)	032-442-2104 032-442-2109

해밀학교 (강원도 홍천군) (haemillschool.com)	중	•기숙형 작은학교(학년별 20명)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 통합교육 •한국어교육 및 이중언어교육(중국어, 일본어) •텃밭 농사 등 노작활동	무료 (기숙사비 포함)	033-433-8761
--	---	---	-----------------	--------------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및 한국어능력 부족 등으로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는 총 40교로, 서울 19교, 경기 6교, 부산 5교, 인천 2교, 경남 2교, 대구 2교, 대전·광주·울산·강원 각 1교씩 있다.

◎ 입학자격

-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복수국적자 포함)
- 다음의 사유로 일반학교에서 학업지속 어려운 귀화자 자녀(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필요)
 -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 그밖에 해당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 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학교별로 실시하므로 구체적 전형방법은 다르지만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연중 지원 가능하다.
- 입학에 필요한 서류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건강기록부, 이전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국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을 요구한다. 각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에서 각 학교별 입학절차, 학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2 초등학교 교육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해(우리나라 나이로 8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해에 1세가 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2세가 된다. 2016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17년 1월 1일에 2세가 된다.)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다만, 만 5세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해부터 입학할 수도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부모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1. 교육 내용

초등학교 교육은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습관,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시간 수업은 40분이며 1~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기초 능력 및 기본 생활습관을 배우고, 3~6학년은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등을 배운다.

교과(군)	1~2학년 교과	3~6학년 주요 학습 내용
국어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사회/도덕		(사회)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지리인식, 장소와 지역,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인문 환경과 인간생활, 지속 가능한 세계, 역사일반, 정치·문화사. 사회·경제사, (도덕)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
수학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과학/실과		(과학)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실과)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 생활과 안전, 자원 관리와 자립,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
체육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예술 (음악/미술)		(음악)표현, 감상, 생활화, (미술)체험, 표현, 감상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2.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선택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영역	활동	교육의 중점
자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적응활동 창의주제활동 등 	입학 초기 적응활동, 사춘기 적응활동, 민주적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 이해 및 실천,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다양한 주제 활동 등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 	다양한 경험과 문화 체험을 통한 재능 발굴, 신체 감각 익히기와 직접 조작의 경험, 소속감과 연대감 배양 등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등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진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이해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설계활동 등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일의 중요성 이해, 직업 세계의 탐색, 진로 기초 소양 함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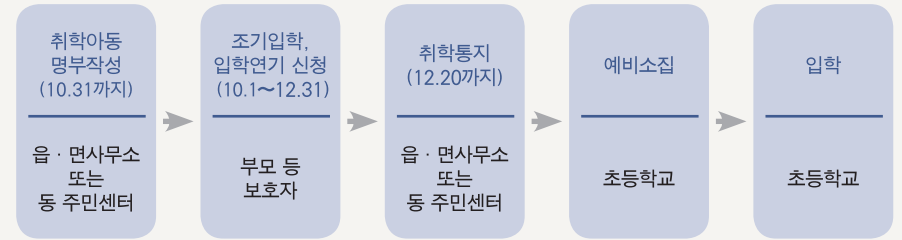
3. 초등학교 입학안내

(1) 입학(취학)대상자

- ◎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도달한 아동을 말하며, 그 다음 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입학(취학) 대상자로 포함하고,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은 제외한다.
 - ※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 202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

(2) 초등학교 취학 절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립 또는 사립초등학교는 위와 같은 취학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을 모집하는 시기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립 또는 사립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직접 입학 신청을 해야 한다.

※ 국립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 또는 사범대학의 부설초등학교를 말하고, 사립초등학교는 거주지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3)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조기입학·입학연기 대상자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초등학교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사람(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 2021학년도 조기입학의 경우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신청할 수 있다.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초등학교 입학 1년 연기하려는 사람
- ※ 2021학년도 입학연기의 경우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아동으로 2021학년도(2021년 3월 1일 입학)에 취학하려는 아동이 해당된다.
-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청을 하기 전 미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4) 일반적인 취학절차를 거치지 어려운 아동의 취학

-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서류와 학력증빙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신청을 하면 된다.
 - 출입국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학력증빙관련 서류 : 졸업증명서, 재학 사실 증명서류, 성적증명서 등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하여 자녀 편·입학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한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책자가 12개 언어로 제작되어 있다.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내려 받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4. 입학준비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어린이에게 있어 매우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부모님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미리 격려하고 준비해야 한다.

- **옷(복장)** : 학교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간편하고 활동적인 옷을 입혀 등교시킨다.
- **가방** : 가방은 등에 멜 수 있으며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준비한다. 무늬가 복잡하거나 잠시 유행하는 캐리커 가방보다는 단순하면서 깔끔한 가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연필, 필통, 지우개** : 필통은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것이 좋으며, 게임기가 있는 필통은 피해야 한다. 학년 초에는 2B연필(진한 심)을 쓰면 좋다. 두세 자루 정도 미리 준비하고 지우개는 1개만 준비하면 된다. 샤프펜슬은 고학년 때 쓰는 것이 좋다.
- **공책** : 공책은 1~2학년용으로 준비한다. 알림장, 종합장은 미리 준비하고 다른 공책은 담임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다(예 : 받아쓰기 공책, 알림장, 종합장 등).
- **크레파스와 색연필** : 1학년에게는 열두 색 정도가 적당하다.

- **신발주머니와 실내화** : 신발주머니는 운동화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고 실내화는 흰색, 분홍색, 밝은 하늘색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걷기가 불편하거나 너무 큰 실내화는 피해야 하고 신발 가게나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살 수 있다(단, 실내화를 사물함에 넣고 다니는 경우에는 신발주머니가 불필요하다).

알아두세요!

입학 전에 미리 알아 두기

- 학교 이름 알고 말하기
- 가족, 자기 이름 쓰기
- 자음과 모음 공부
- 기본 숫자 알기(1~10)
- 연필, 크레파스, 가위, 지우개 쓰는 법 익히기
- 색연필로 동그라미, 가로, 세로 줄 긋기
- 색 이름 알기
- 자기 물건과 남의 물건 구별하기
- 집 주소와 전화 번호 알고 전화 걸고 받을 줄 알기
- 식사할 때의 기본예절

5.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도

○ 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 주기

-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 이런 어린이에게는 학교에 미리 와서 1학년 교실을 둘러보거나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학교는 재미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 학교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준다.
- 많은 친구들과 형, 언니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준다.

○ 선생님은 학교생활을 도와주시는 분

- 학교에서 선생님은 알고 싶은 것,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준다.
-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말해 준다(규칙을 잘 지키는 어린이,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 등).

◎ 자기 일 스스로 하기

- 아이에게 물건 목록을 주고 가방에 차례차례 넣어 보게 하고 학용품 정리하는 방법과 책가방 정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물건을 챙기는 연습을 해보게 한다(세수하기, 정리정돈 스스로 하기, 화장실 바르게 사용하기 등).

◎ 건강한 몸으로 학교에 다니기

- 입이나 눈, 코, 귀 따위에 잔병이 없는지 미리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한다.
- 어린이가 특별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앓고 있는 병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미리 알린다(우유 알레르기, 아토피, 장염 등).

◎ 안전한 통학 방법 알기

- 걸어 다니는 것이 좋으며, 통학로를 충분히 확인한다.
-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우측통행, 횡단보도, 교통신호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 버스를 이용할 때는 순서에 따라 승차하도록 한다.
- 버스에서 내리면 버스의 바로 앞 또는 뒤에서 횡단하지 않도록 한다.
-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곳에서는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도록 한다.
- 횡단보도에서는 달리지 않는다.
- 교통 정리원이 있는 경우 지시에 따른다.
- 건너가기 시작할 때 신호가 바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중앙보다 더 갔을 때는 빨리 건너간다.

🔍 **알아두세요!**

방과후 활동 지원

저소득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방과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보육(보육시설) 등을 통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비롯하여,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숙제지도를 도와준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상담을 통해 이들 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 **알아두세요!**

방과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대상	초1~6학년	만 6~12세 미만	만18세 미만	초 4~중 3학년	
지원기준 (소득)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00%이하)	돌봄취약계층 우선지원	
지원 형태	무상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이용료 자부담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 간식비는 실비 별도 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무상	
운영 시간	학기	방과 후~17시 (일부 저녁돌봄 운영)	14~19시	14~19시	방과 후~21시
	방학	여건에 따라 자율	09~18시	12~17시 포함 8시간 운영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내용	보호, 교육 및 일부 급·간식 지원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급식 및 상담 등	

🔍 **알아두세요!**

‘e학습터’ 온라인 학습지원 사이트

e학습터 사이트는 초1~중3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과학습 콘텐츠, 교수학습자료, 평가문항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교사들은 온라인 학습을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03 중학교 교육

중학교 과정은 3년이다. 중학교는 지역별·학교군별 추천에 의하여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교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1. 교육 내용

중학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은 매학기 8개 정도의 과목을 배우게 되며,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교과(군)	1~3학년 수업 시간	주요 학습 내용
국어	442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정치, 법, 지리인식, 역사, 자신과의 관계 등
수학	374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힘과 운동, 물질, 생물, 지구, 가족, 기술활용, 정보문화 등
체육	272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예술(음악/미술)	272	표현, 감상, 생활화, 체험
영어	340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선택	170	한문, 환경,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2.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영역	활동	교육의 중점
자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적응활동 · 창의주제활동 등 	원만한 교우 관계 형성,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 함양, 폭넓은 분야의 주제 탐구 과정 경험 등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체육활동 · 학술문화활동 · 청소년단체활동 등 	예술적 안목의 형성, 건전한 심신 발달, 탐구력과 문제해결력 신장, 다양한 문화 이해 및 탐구, 사회 지도자로서의 소양 함양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등 	학생의 취미, 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진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활동 · 진로탐색활동 · 진로설계활동 등 	긍정적 자아 개념 강화, 진로 탐색

알아두세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피해학생의 징후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꺼린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학교생활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 쉽게 잠을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되며,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수련회·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 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

- 푸른나무재단 제공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자녀가 SNS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 푸른나무재단 제공

가해학생의 징후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
-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
- 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

- 푸른나무재단 제공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고방법

담임 선생님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서,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로 전화하면 긴급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365일 24시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1) 학교

• 학교폭력 전담기구

자녀가 폭력을 당한 사실을 학교의 담임선생님께 알려야 한다.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사안 조사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며,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학교장은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부동의할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위(Wee) 클래스(학교 상담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단위학교에 설치된 1차 상담기관으로 학교 적응을 위해 상담서비스 및 심리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 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한다.

• 위(Wee) 센터(학생상담지원센터)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한 2차 상담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위(Wee) 스쿨

학업중단 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단위에 설치된 3차 상담기관으로 기숙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담·치유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사회 단체·기업

• 학교폭력 SOS지원단

푸른나무재단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SOS지원단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 해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선(☎1588-9128)과 온라인(www.btf.or.kr)으로 이용 가능하다.

- 학교폭력 통합지원센터 :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 의료, 법률, 장학 등 다각적 통합 서비스 지원, 학교폭력 관련 전문 기관 연계 지원 등
-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센터 : 피·가해학생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치료, 면접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찾아가는 상담, 캠프, 교육 등
- 학교폭력 화해·분쟁·갈등조정센터 : 피·가해학생, 가족, 학교 대상 관계회복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해·분쟁조정 프로그램, 갈등관리·코칭, 컨설팅, 법률상담 등

·청소년상담1388

청소년상담1388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서비스이다. 학교폭력 피해나 교우관계 문제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해 전문상담선생님과 365일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다. 유선(☎1388), 온라인(www.cyber1388.kr), 문자·카카오톡(#1388)으로 이용 가능하다.

·상다미 쌤

상다미쌤은 교육부, KB국민은행, kakao, 열린의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관련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모바일 심리상담 서비스이다. '카카오톡'에서 "상다미쌤"을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보내면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상담가능 시간 : 평일 10:00~24:00, 주말/공휴일 제외). 상담을 받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 중에서 매월 10명 이내를 선정하여 80만원 이내의 심리 치료비를 지원한다.



친구 목록에서 '친구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 검색창에 '상다미쌤'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 채팅창에 '상담 신청'을 입력하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알아두세요!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이니셜



04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등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학생 선발 방법은 시·도 또는 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무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1년 전 학년까지 확대된다. 다만 학교장이 입학금, 수업료를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부 등)는 무상교육의 예외가 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1. 교육 내용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1시간 수업은 50분이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등이다.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며, 학생들은 선택 과목 중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학생들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2. 고등학교 유형

<p>(1) 일반고등학교</p>	<p>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고등학교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은 지역에 따라 컴퓨터로 추천·배정하거나 내신성적 등으로 학교장이 선발한다.</p>
<p>(2) 특수목적고등학교</p>	<p>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외국어고), 국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국제고),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예술고),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체육고),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교원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특히,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p>
<p>(3) 특성화고등학교</p>	<p>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등과 같은 보통 교과 이외에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업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은 내신성적, 면접, 실기 등으로 선발한다.</p>
<p>(4) 자율고등학교</p>	<p>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학교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여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컴퓨터로 추천·배정하거나 내신성적 등으로 선발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원추천서, 면접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한다.</p>

3. 학생복지

※ 지원에 관한 기준은 지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대상자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으로 등록되어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 받는 학생(기초생활보호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정 등)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학생(차상위 자활대상자 등)
- 소득·재산 조회 결과 중위소득 50~60% 내외에 해당되는 학생(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상이)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학생

◎ 지원 항목

- (고교 학비)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급식비) 초·중·고 학교 중식비 전액 지원(연간 180식, 무상급식 지역 제외)
- (방과후 수강권) 초·중·고 방과후 수강권 연 600,000원 내외 지원
- (교육정보화) 인터넷 사용료 월 17,600원 내 지원, 저소득층 가구당 PC 1대 지원

대상자	기초수급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소득·재산 조회자	학교장 추천
고교학비	○	○	○	△	△
급식비	○	○	○	△	△
방과후 수강권	○	○	○	△	△
인터넷·PC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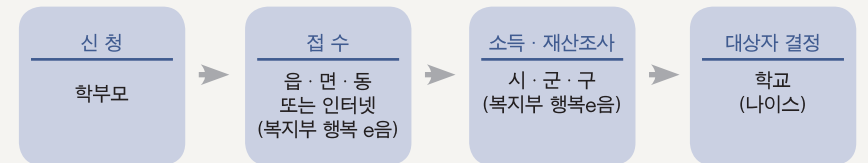
※ ○ : 신청 시 100% 지원, △ : 신청 시 지원 기준에 따른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자세한 교육비 지원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전화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제출 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 보호대상자(법정) 소득·재산 조회 대상자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학교장 추천	① 담임교사(업무 담당자) 의견(추천서) ② 기타참고서류(부채/사망/실직/파산/이혼 등) ※ 의견서는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가 작성

◎ 신청 절차

- 매년 초 집중신청기간 운영(연중 상시 신청 가능, 학교에서 신청 절차 별도 안내(가정통신문 등))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는 학교에서 납입금을 면제 처리



05 대학교 교육

한국의 대학에는 4년제 대학과 2~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대체로 4년제 대학은 직업 교육보다는 전공 공부를 하고, 2년제 전문대학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배운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 논술,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시모집에 지원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나온 결과인 수능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학교·전형·모집단위에 따라 학생 선발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학생은 각 대학에서 제시한 모집요강을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 자격으로 하는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의 종류

대학은 4년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3년제인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

구분	내용
대학	여러 분야의 전공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이 진학하는 대학
산업대학	주로 산업 인력을 키우는 대학
교육대학(사범대학)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전문대학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텔레비전,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공부할 수 있는 원격교육 대학
기술대학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교육 받을 수 있는 대학

2. 장학금

대학의 등록금은 국·공·사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개인 부담이 원칙이다. 정부 및 대학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이 있으며, 지급대상은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대학 교내·외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금 지원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장학금 종류, 신청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19년 등록금 수준(4년제, 대학정보 공시 기준) : (국·공립) 416만원, (사립) 746만원

(1) 국가장학금 안내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학생 본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 결정
-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최대 연 520만원)

2020년 국가장학금 | 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원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 **신청기간** : 매년 학기말 및 새학기 시작 전·후
※ '20년 1학기 신청 기간 : (1차) '19. 11. 19 ~ 12. 17, (2차) '20. 2.3. ~ 3.23.
※ '20년 2학기 신청 기간(예정) : (1차) '20. 5월 ~ 6월, (2차) '20. 8월 ~ 9월

(2) 대학생 근로장학금 안내

- ◎ **신청자격** : 대학의 재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 C0 이상(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 **혜택내용** :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조건 조성 및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장학금 지원
- 시급단가 : (교내) 9,000원, (교외) 11,150원
- 최대 근로인정시간 :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주당 40시간
※ 학기 중 야간 교육과정 및 원격대학 등은 40시간 근로 가능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06 청소년 국제교류(다문화가정 참여 지원)

청소년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우의증진과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한국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1. 국제교류 사업 소개

사업	대상	기간	내용
국가 간 청소년교류	만 16~24세 청소년	10일 내외 *일본 : 15일 내외	약정체결 국가 청소년들과의 교류, 홈스테이,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타문화 이해 능력 향상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만 15~20세 청소년	10일 내외	해외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아실현 및 국제 역량 강화 사회적 배려계층 및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만 16~24세 청소년	10일 내외 *회의별로 상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 등 국제회의·행사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하며 발제, 각국 청소년 대표들과 토론 및 교류

2. 다문화가정 우대

- 참가 청소년 선발 시 다문화 청소년 선발 우대
 - 국가 간 청소년교류 경우, 부모의 출신국에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가점 부여
 - 우대혜택
 - 다문화가정 청소년 참가비 지원을 통해 국제교류 참여 장려
- * 왕복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방문국 체재비 및 비자발급 비용(국가별 상이) 전액 지원(국내교통비 자부담)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ie.youth.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www.kywa.or.kr)
- 모집알리미 신청
 - 카카오톡채널에서 @청소년교류센터 추가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www.youth.go.kr/ie)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불가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알아두세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은 성장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 향상 및 리더십 개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부모자녀 관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와 부모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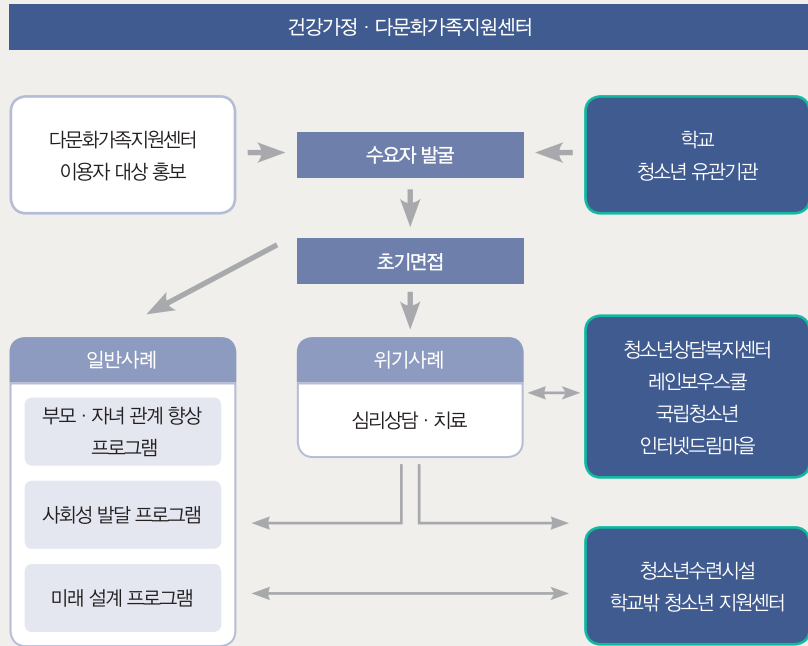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및 부모, 중도입국청소년 등

◎ **수행기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206개소

◎ **주요내용**

-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 자아정체성 확립, 가족상담, 부모교육(부모역할, 부모·자녀 의사소통스킬 습득, 갈등관리 등), 가족통합캠프 등 운영
-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 사회성 진단, 청소년 동아리 활동(자조모임), 봉사활동, 리더십캠프, 체험활동 등 제공
- 미래설계 프로그램** : 동기부여, 적성검사, 진로소양교육, 진로설계, 직업체험활동 등 지원
- 위기사례 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부모 개별 및 가족상담 심리정서치료 및 미술·음악·놀이치료
-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레인보우스쿨,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 추진체계



※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을 통하여 검색 가능하며,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카툰으로 보는 문화 이야기 6 】

한국인의 인사말 문화



인사말의 의미를 몰라 오해가 생길 때가 있다. 한국에서는 헤어질 때 '연락할게',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연락하고 식사 한번 하자는 뜻도 있지만, 헤어질 때 아쉬운 마음이 담긴 한국식 인사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과 의료

7장에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다룹니다. 이와 더불어 응급처치법, 건강검진 정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196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개요

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가입방법

보험료 납부

체납에 대한 불이익

상담기관 또는 문의처

199

의료급여제도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절차

200

의료기관

의료기관 유형

진료 분야와 진료 과목

의료기관 이용 절차

응급상황 대처법

약국, 의약품 등

205

보건소

일반진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

208

응급처치

210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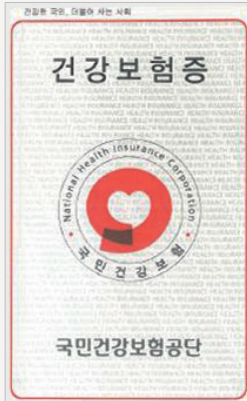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기간

비용부담

01 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 개요



〈건강보험증〉

한국은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신청에 의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며, 보수를 제외한 별도의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의 100%를 적용한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므로, 병·의원, 한의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단 진찰, 치료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는다. 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2. 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시 지역가입자가 된다(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입국 즉시).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18.12.18. 이후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9.7.16. 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당연취득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강보험에 준하는 다른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가입방법

(1)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피부양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한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의 가족관계 서류는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2) 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 외국인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며, 이 경우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등록증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이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 2019.7.16.부터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외국인은 6개월이상 국내 거주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며(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아래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각각 해당 지역의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서울 → 서울외국인민원센터(신도림)
- 안산, 시흥, 군포 → 경인외국인민원센터(안산)
-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 경인외국인민원센터(수원)

4. 보험료 납부

(1) 직장가입자

◎ **보험료 납부** : 매월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한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와 근로자 본인 50%씩 부담)는 매월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며, 연간 종합소득(3,400만원 초과)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다.

(2) 지역가입자

◎ 보험료 납부

- 외국인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며(단,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는 최초보험료에 합산부과),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일 경우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 '20년도 보험료는 123,080원이다.
- 체류자격이 F-5, F-6인 국내 영주 외국인인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유의사항

외국인인 배우자가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여 내국인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경우 내국인의 부과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
 * 배우자 외에도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세대합가 가능

5. 체납에 대한 불이익

-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전월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보험혜택이 제한된다.
- 보험료나 건강보험 기타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비자연장 시 최대 6개월까지만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3회를 초과하면 그 이후로는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기타징수금 체납 사실을 법무부 체류허가(신고)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6. 상담기관 또는 문의처

건강보험 보험료, 자격요건,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표전화(☎1577-1000) 또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상담전화(☎033-811-20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0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게 된다.

1.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노숙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2. 본인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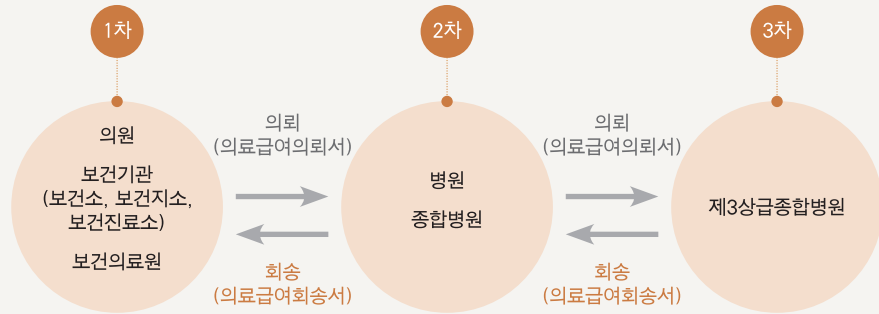
의료급여 대상자도 의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야 한다.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입원	급여비용 면제	급여비용의 10%
외래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1,500원) 상급종합병원(2,000원)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상급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약국	500원(처방전 1매당)	500원(처방전 1매당)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129) 또는 시·군·구(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3.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예외 있음).



03 의료기관

1. 의료기관 유형

의료기관은 규모와 이용 순서, 서비스 내용 및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감기나 소화기 장애 등 병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의원에 가서 치료받고, 병이 낫지 않거나 세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

요양급여 단계	1단계		2단계
해당 요양기관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료 내용	외래진료, 예방접종, 건강관리	종합검사, 입원치료	정밀검사, 장애나 질병 치료, 관리
해당 의료기관	보건소, 한의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등	여러 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는 1단계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한국에는 서양의학 외에도 한의학이 발달되어 한의원이 지역마다 있다. 한의원에서 침, 뜸, 부항을 받거나 약용 식물을 달여 만든 한약을 지을 수 있다.

2. 진료 분야와 진료 과목

병원 또는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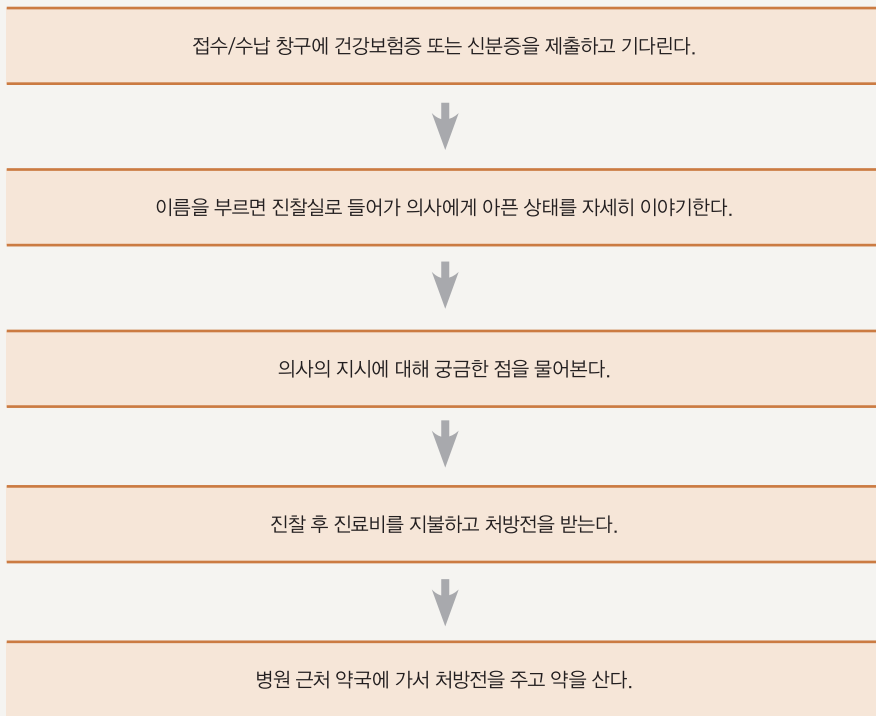
진료 과목	주요 진료 분야
내과	각종 내부장기를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 식도, 위 등 소화기 질환, 폐암, 심장, 혈관, 혈압, 당뇨 등과 관련된 병 치료
소아청소년과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들의 질환 치료 미숙아, 신생아 치료, 소아의 신장, 신경, 호흡기, 알레르기 등을 치료
산부인과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 치료
신경과	뇌졸중, 간질, 치매, 신경통 등 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치료
가정의학과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 검진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의료 제공
피부과	여드름, 탈모, 두드러기 등 피부와 관련된 질환 치료
일반외과	맹장염, 감염질환, 소화기 계통 등 수술을 요하는 질환 치료
정형외과	골격 및 근육에 관한 질환을 수술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 화상 및 후유증 치료 등 몸의 형태와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
재활의학과	재활전문 의사가 물리치료사와 함께 근육, 뼈, 신경 계통의 질환 치료
비뇨기과	콩팥, 방광 등 요로계 장기들과 음경, 고환 등 생식기관에서 발생하는 질환 치료
안과	백내장, 녹내장, 근시 교정 수술처럼 눈과 눈의 신경에 관련된 질환 치료
이비인후과	귀, 코, 목 등과 관련된 질환 치료
치과	치아교정, 보철, 스케일링, 치아신경치료 등
응급의학과	응급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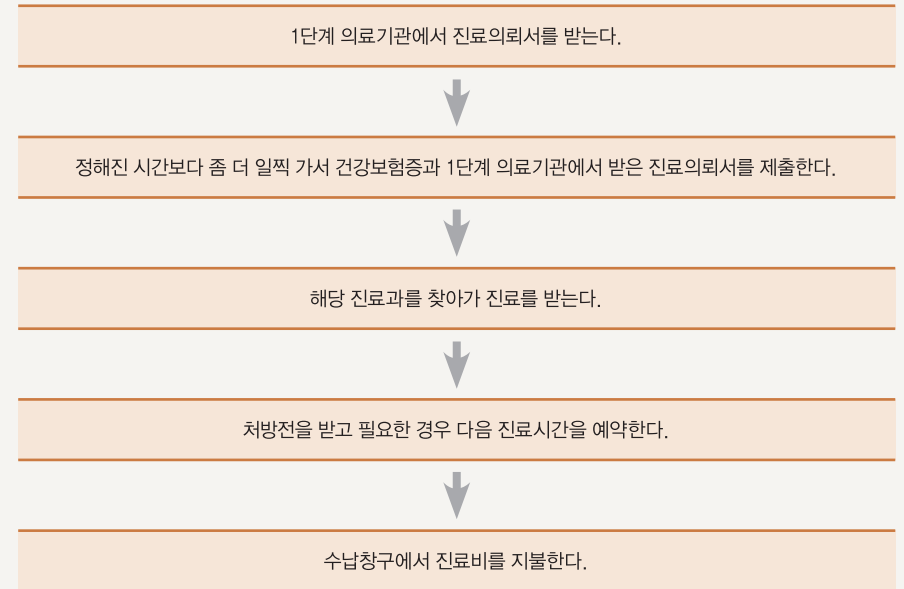
진료과목	주요 진료 분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등 8개 진료 과목	동양에서 발전해 온 의학으로, 모든 분야의 질병을 치료하지만 치료 방법이나 약을 만드는 방법이 일반 병원과 다르다.

3. 의료기관 이용 절차

(1) 1단계 의료기관 이용 절차



(2) 2단계 의료기관 이용 시 다른 점



4. 응급상황 대처법

- 평상 시 약국에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을 구입해서 집에 두는 것이 좋다.
- 응급전화 ☎119에 전화를 하면, 구급차가 오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안내된다.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처치를 받은 후 수술이나 검사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면 병실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 병실이 배정되면 입원 수속을 한다.

알아두세요!

의료기관과 약국에 갈 때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간다.

- 응급전화 ☎11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휴대폰으로 할 때는 지역번호 + 129)

5. 약국, 의약품 등

의약품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있으며,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있다. 일반의약품은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상처에 바르는 각종 연고제, 설사 관련 지사제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의약품이 아닌 살충제, 생리대, 건강보조음료, 콘돔 등은 일반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가벼운 증상에 스스로 판단하여 시급히 사용하도록 최소한으로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중 13개 제품은 24시간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구급약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집에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일부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항상 구입이 가능하지만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급약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다음은 집에 꼭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의약품들이다.

- 해열제 : 열이 많이 날 때 먹는 약
- 진통제 : 통증을 줄이기 위해 먹는 약
- 소화제 : 배탈이 났을 때 소화를 돕는 약
- 지사제 :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
- 안약 : 눈이 피로하거나 눈병이 났을 때 넣는 약
- 소독약 :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벤 상처에 덧나지 않도록 바르는 약
- 바셀린 :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 바르는 약
- 피부연고제 : 습진이나 가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약
- 물파스 : 벌레 물린 곳이나 가려움에 바르는 약
- 붙이는 파스 : 근육통에 붙이는 약
- 소독밴드 :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밴드
- 구급함 : 거즈, 탈지면, 가위, 체온계, 소독밴드, 붕대, 반창고 등 응급상황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한 상자

04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보건기관이다.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진료, 실험 및 검사, 식품공중위생, 의약품 지도·관리, 일반행정 등이 있으며 이중 진료 부분에서는 만성질환진료 및 각종검사, 물리치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보건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소마다 진료범위, 내용, 비용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야 한다.

1. 일반진료

구분	내용
진료범위	기본적인 1차진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각종 검사와 물리치료
한방진료	상담 및 한방진료
치과진료	구강검진 및 상담, 예방치료, 충치치료, 발치 등
진료비용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보건소의 방문건강 전문인력이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 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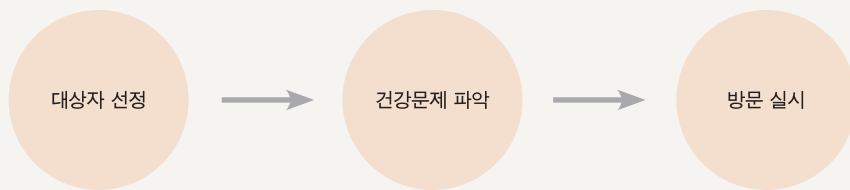
-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자체에서 선정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또는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방문이 필요하여 의뢰된 자 등

(2) 서비스 종류

- 건강문제 스크리닝(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임신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노인 허약 예방 관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행태개선 등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

(3) 제공 방법

- 지역 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를 발굴한다.
- 담당자가 방문하여, 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자 가족의 생활환경, 건강위험 요인 등을 파악한다.
- 분석결과를 토대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군으로 분류한다.
- 군분류에 따라 집중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추진 및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한다.



3.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재활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중독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 적용 대상

-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프로그램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정신질환예방 프로그램은 일반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 절차 및 방법

-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월~금요일) 09:00~18:00까지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 ◎ **서비스 이용절차**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우 상담과 심리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문제의 상담이 가능하다.
- ◎ **이용료** : 무료(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 프로그램의 경우 소정의 비용이 들 수 있다)

05 응급처치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르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응급조치 후에는 신속히 ☎119(긴급구조전화)나 병원 응급실로 연락을 해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1)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눈동자를 움직이면 부상이 심해지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눈에 이물질이 박혀 있다면 빼지 말고, 다친 눈을 붓대로 감은 다음 양쪽 눈을 감는다. 이후 빨리 병원으로 옮긴다.



(2) 이가 빠졌을 때

이가 빠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시 끼우고 치과로 간다. 만약 이를 제자리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의 입 속이나 미지근한 우유 속에 담아서 옮긴다. 빠진 치아를 너무 깨끗하게 씻는 것은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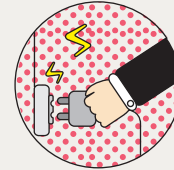
(3) 코피가 날 때

우선 머리를 앞으로 숙여 숨을 쉬면서 코뼈 밑 부분을 잡는다. 이때 말을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기침을 해서는 안 된다. 10분 정도 지난 뒤에도 피가 멈추지 않으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코피가 멎은 후에도 한동안 머리를 앞으로 굽히고 미지근한 물로 코와 입 주위를 닦으며 물리적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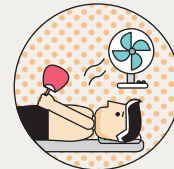
(4)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이 심하고 상처 부위가 넓은 경우 전문치료가 필요하다. 일단 소독 거즈로 감싼 후 호흡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심하지 않을 때는 상처 부위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흐르는 찬물로 최소한 20분 이상 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 상처 부위는 절대 문지르면 안 되며, 물집도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상처가 심할 때는 연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5) 감전되었을 때

즉시 전원을 끈다. 전원을 끌 수 없는 곳이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옷차림을 갖추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해 감전을 일으킨 물건을 환자에게서 떼어낸다. 구조 후엔 환자에게 의식이 있는지 살피고, 의식이 없으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다. 호흡이 멎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이 멎었다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해준다. 감전은 몸의 내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의식이 있더라도 즉시 응급실로 옮겨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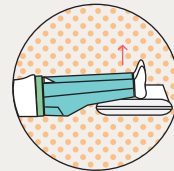
(6) 일사병·열사병

일사병은 머리나 목 부분에 직사광선을 받아 생기는 병이고, 열사병은 체내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환자를 덮은 다음 부채나 선풍기로 바람을 쏘며 주면서 병원으로 신속히 옮긴다.



(7) 질식

질식하면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또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눈 주위가 튀어나오며 심하면 얼굴색이 파랗게 된다. 이럴 때는 환자를 공기가 맑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의식이 없더라도 호흡이 유지되고 있으면 엎드린 자세로 서서히 회복시키는 것이 좋다. 만일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심하게 곤란한 상황이라면 즉시 인공호흡을 하고, 회복의 기미가 없으면 병원으로 신속히 옮긴다.



(8) 뼈가 부러졌을 때

골절 부위가 변형됐거나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고정시킨 다음 구조요원을 부른다. 상처 부위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담요나 베개를 이용해서 심장보다 높여주는 것이 좋다. 단순히 뻐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탄력붕대로 넓게 감싸고 움직임을 줄이면 부은 것이 가라앉는다. 통증을 줄이는 데는 얼음찜질이 효과적이다.



(9) 손가락이 잘렸을 때

잘린 손가락은 다시 접합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적절히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상처부위를 눌러 피를 멎게 하고 손을 심장보다 높이 든다. 잘린 손가락은 거즈로 잘 싸서 얼음이 담긴 비닐봉지에 넣어 병원으로 신속히 운반해야 한다. 잘린 부위에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06 건강검진

1.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

- 대상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 지역 세대원 및 피부양자(2년마다 1회, 다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64세(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 시행)
- 검진항목 : 공통항목 및 성·연령별 항목
- (공통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 (성·연령별 항목)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항체,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치면세균막검사로 검사항목별 대상연령이 변경됨
 ※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확진검사 실시

2. 암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6대 암 대상으로 실시

- 대상 암종 및 연령 : 위암(4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50세 이상, 1년 주기), 유방암(40세 이상, 2년 주기), 자궁경부암(20세 이상, 2년 주기),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폐암(만 54세~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
 ※ 국가건강검진의 대상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와 6대암 산정특례 적용자에 대해 암검진 5년간 유예

3. 영유아 건강검진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검진과 보호자 교육을 실시

- 대상 : 6세 미만(71개월 이하)의 영유아
- 검진항목 : 진찰 및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검진항목 :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구강검진, 성매개질환검사 등
 ※ 학교 밖 청소년 확진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5. 건강검진 실시기간

-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다만, 확진검사 및 2단계 검사(위암, 대장암) 및 폐암 사후관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영유아검진은 출생시기(4개월~71개월)별 7차에 걸쳐 실시

6. 비용부담

- 일반건강검진, 확진검사, 영유아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
-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 > 본인부담 없음(전액국고지원)
- 암검진 > 본인부담 10%(국가암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자궁경부암·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



건강검진 절차

-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공단에서 검진대상자에게 발송한 검진표로 검진종목 및 항목 확인
 - 검진기관 예약 및 방문
 -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검진기관에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지참하여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 검진 받은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검진결과 발송
- ▶ 전국민의 30%가 건강검진으로 질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 하오니 미리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카툰으로 보는 문화 이야기 7 】

한국과 캄보디아의 서로 다른 상차림 문화



한국에서는 국그릇을 오른쪽, 밥그릇을 왼쪽에 놓지만 캄보디아에서는 국그릇을 왼쪽에 놓는다. 또 깨끗하게 그릇을 비우는 것이 한국에서는 '음식을 잘 먹었다'는 뜻이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음식을 더 먹고 싶다'는 뜻이다. 캄보디아에서는 밥술 아래에 있는 밥을 맛있는 밥이라 생각해서 어른의 밥을 나중에 푸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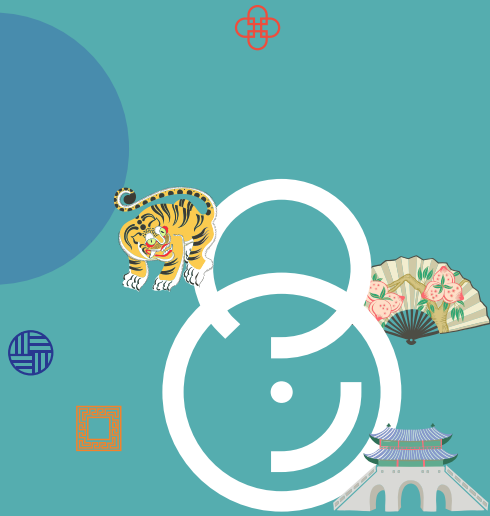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8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16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신청방법

220

국민연금

적용대상

보험료 부담

급여혜택

222

긴급복지지원

외국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지원 내용

225

자활사업

적용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227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종류

신청방법

0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국토부), 교육비(교육부),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적용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면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국내에 등록·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그 외의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같은 가족 내에 한국인이 있다면 그 한국인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

* ('20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맞춤형 급여 개편('15.7월)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라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18.10월~)

참고

◎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0년 수급자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의 %)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중위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중위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중위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49,858

2.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text{생계급여액} = \text{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text{소득인정액}$$

(2) 주거급여

- 급여의 내용 : 거주지, 거주 유형, 가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
- 급여액 : 임차가구에게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용 차등 지원

참고

◎ 임차가구의 최저보장수준(2020년 기준)

(단위 : 만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26.6	22.5	17.9	15.8
2인	30.2	25.2	19.8	17.4
3인	35.9	30.2	23.6	20.9
4인	41.5	35.1	27.4	23.9
5인	42.9	36.5	28.5	24.9
6인	50.4	43.0	33.1	29.1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의 최저보장수준(2020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기준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43%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급,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분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교육급여

◎ 급여의 내용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20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4,000원
중학생		212,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72,000원
중학생, 고등학생		83,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4)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시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

(5)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1인당 800,000원 지급

3.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준다.



알아두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www.129.go.kr)

-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와 상담을 원하면,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 상담내용 : 소득보장, 민생안정지원,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은 365일 24시간

02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적용대상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8세 미만이라도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서 가입을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21개국)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통가, 피지, 그루지야, 스와질랜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2. 보험료 부담

-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소득월액의 4.5%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부담한다.
-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는 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3. 급여혜택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급여(노령, 장애, 유족)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구분	~52년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장애연금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한 자가 가입대상기간(18세~노령연금 지급연령 전)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유족연금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한 자 또는 연금(노령, 장애1~2급)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유족에게 매월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 반환일시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본국으로 귀환,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① 그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우리나라 체류 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45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홍콩, 벨리즈,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가나,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엘살바도르, 요르단,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부탄, 콜롬비아, 우간다, 튀니지(이상 24개국, 상호주의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페루, 스위스, 터키, 인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이상 21개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반환일시금 지급)

※ E-8, E-9, 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지급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
 참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03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③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④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2. 지원 대상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① 위기사유(7가지)와 ② 소득·재산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위기사유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③ 교정시설 출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소득·재산 기준요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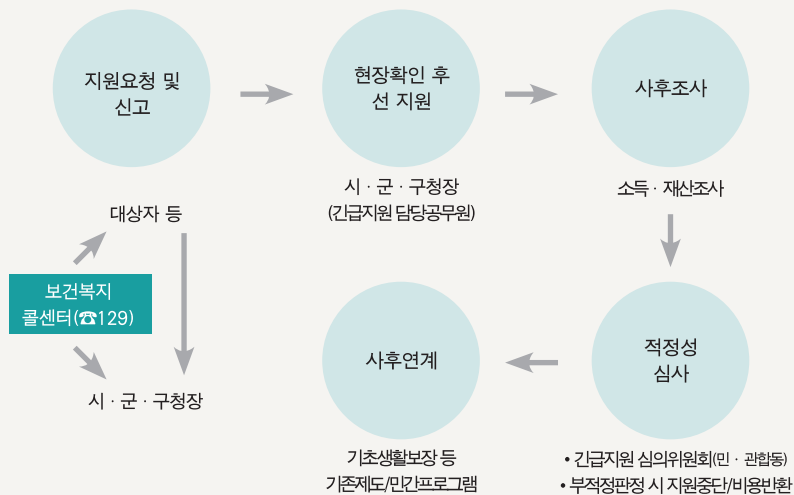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 재산기준 : 대도시(188,000,000원), 중소도시(118,000,000원), 농어촌(101,000,000원)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한다.
-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
-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절차



4. 지원 내용(4인 기준/월)

생계비(1,230,000원), 주거비(643,200원), 복지시설이용비(1,450,500원), 의료비(1회 300만원)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생계지원 기준(2020년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구성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 명의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해야 할 자녀(대한민국 국적)가 있고 남편의 사망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긴급한 상황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04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활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자활근로(근로 기회 제공),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

1. 적용대상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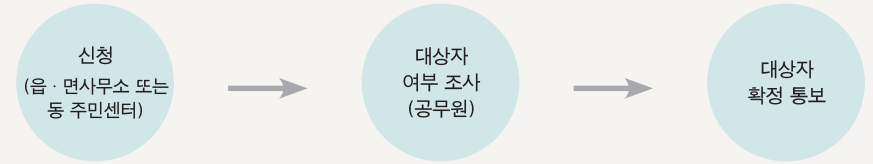
- (자활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자
- (희망키움통장Ⅰ)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개인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는 생계수급 청년(만15세~39세)

2. 지원조건

- (자활근로) 1일 5시간·8시간 1주 5일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고, 자활근로 참여에 대한 대가로 1일 28,810~56,110원(실비포함)의 자활근로인건비를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매월 일정액(50,000원 또는 100,000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급
- (희망키움통장Ⅱ)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매월 일정액(100,000원)을 저축하고, 3년을 유지(교육, 사례관리 이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 매칭) 지급(2014년 7월~)
- (청년희망키움통장)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3년 이내 생계수급 가구에서 벗어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정액 100,000원)과 근로소득장려금(청년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급

3.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뒤 신청한다.
 -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 신규 모집은 모집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다.
-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다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담당 기관이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 자활근로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적합한 사업을 추천한다.
-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한다.



05 한부모가족 지원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1. 서비스 종류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으로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복학시만 해당)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0,000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0,000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월/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아동 양육비 등 급여 기준
	기준 중위 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2016년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16년부터 신규대출 없음
-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1397, <http://www.kinfa.or.kr>)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내용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60%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제외) 청소년한부모가구의아동 1인당 월 350,000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 시 연 1,540,000원 이내 지원 • 고교생 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정규 고교과정 이수 시 입학금· 수업료 실비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 시 월 100,000원 지원

2020년 청소년 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아동 양육비 등 급여 기준
	기준 중위 소득 72%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5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2. 신청방법

-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주소지 시·군·구에서 가구 및 소득조사를 한 후 지원대상가구에 해당이 되면 서면으로 통보
- 상담 및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온라인상담(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한부모] 메뉴)

남편과 헤어져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적다면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필요사항에 대해 조사한 다음 결정합니다. 긴급하다면 긴급복지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알아두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의 경우 22세+군복무기간까지 지원)
 - ※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경우 지원

◎ 지원 서비스

-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대면상담을 통한 양육비 관련 상담
- 당사자 간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인지)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 이행상황 모니터링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

-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음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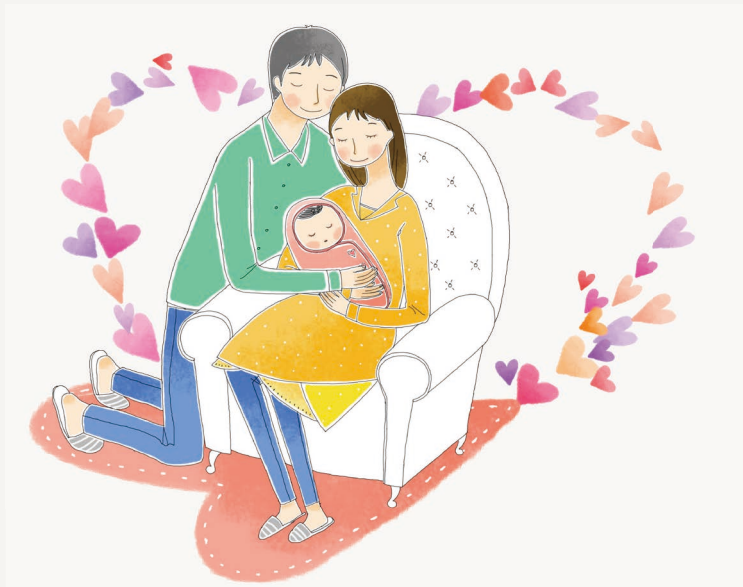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 월 10만원)
- 지원기간 : 9개월(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

◎ 이용 방법

- 전화 상담 : ☎1644-6621
- 온라인 상담 : www.childsupport.or.kr
- 방문 상담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508호(예약제)

- ※ 접수는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만 받음
- ※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카툰으로 보는 문화 이야기 8 】

음력과 양력이 공존하는 한국문화



음력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1달을 계산하고, 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해 활용한다. 한국에서는 음력과 양력을 함께 쓴다.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음력이 사용됐으나, 서양에서 쓰는 양력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현재는 통상적으로 양력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과 근로

9장에서는 취업 및 직업훈련을 비롯해 근로기준에
관련한 주요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이밖에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물론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한 정보도 소개합니다.

236

취업 및 직업훈련

취업

직업훈련

240

근로 관련 주요사항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도

퇴직급여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243

고용보험

사회보험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247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알아두어야 할 안전·보건 표지

251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01 취업 및 직업훈련

1. 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다. 결혼이민자(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취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들과 취업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 보는 것이다.

(1) 일자리 알선기관 방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구분	내용
고용센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료취업알선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체를 알아보기도 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적합한지를 안내해 준다. 또한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체 면접을 주선하고 있다.
취업정보센터	주거지의 시나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취업알선기관이다.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하면, 대부분 취업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취업할 사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을 실시해주는 기관이다.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유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는 민간기관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취업알선,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인터넷 이용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서울글로벌센터(global.seoul.go.kr)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한외국인을 위한 박람회 및 취업지원, 채용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한다.



워크넷(www.work.go.kr)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채용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 직업훈련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하고, 추천 받은 일자리에 온라인으로 직접 입사지원 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경력 설계, 구인·구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일자리·복지·서민금융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이트를 통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욕·구직 기술 향상·복지/금융서비스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진로지도 프로그램(WiCi)'을 비롯하여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 시 사업체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직원이 직접 동행하는 사업체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다양한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여성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며 취업을 알선해주는 여성종합 취업지원기관이다.

시·군취업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

2.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에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

(1) 내일배움카드제란?

훈련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훈련비 지원이 가능한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이주청소년,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이 1년 이상 도과하였고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일 것), 고3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 등

(3)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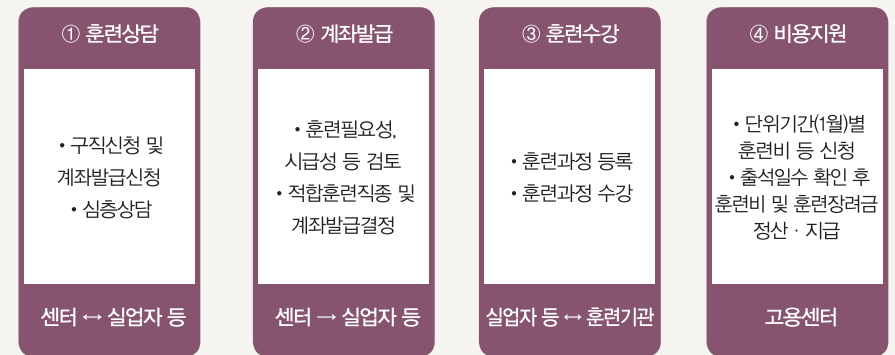
-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20%~95% 지원(나머지 훈련비는 훈련생이 직접 부담)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실제 훈련비의 30%~95% 지원, 1유형은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직종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이상 취·창업 상태를 유지한 사람(수료자 및 조기취업자)에게는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별도 지급
-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 미참여 시 계좌사용 중지 및 한도 전액 소멸되며(다만, 취업 등 사유로 미참여시에는 유효기간 내에 재사용 가능), 계좌 재발급 시 계좌한도를 50% 감액하여 지원

(4) 지원대상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공고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 중 심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공고한 과정으로서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검색하여 훈련생과 고용센터 상담원이 협의·결정한 훈련과정을 수강

(5) 지원절차



(6) 기타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여성회관 등에서 유·무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기관이 결혼이민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당해 기관이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02 근로 관련 주요사항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 근로안전과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근로기준법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 근로 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말한다. 계약 체결 시에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당사자 간에) 주고받아야 한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된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하였을 때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할 수 있다.

(고객상담센터 ☎1350)

(3) 임금체불

◎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 진정 사건이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월급통장,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처리순서

- ① 상담 및 신고 사건 접수(지방노동관서 민원실)
- ② 노동청 출석 및 사실관계 조사
- ③ 사실관계 조사
- ④ 사실관계 조사 후, 법 위반 확인 시 금품 지급지시 등 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 명령
- ⑤ 사업주가 불응 시 사법처리(검찰) 등으로 처리

(4)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노동시간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휴식시간

- 휴식시간은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 휴식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휴식시간에 한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7)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한다.
-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말한다.
- 휴일근로라 함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등)이나,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 연장,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 휴일근로의 경우, 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18.3.20 법 개정).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8) 교대근무

- 생산시설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회사는 근로자들을 두 팀이나 세 팀으로 나누어 교대로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을 교대제 근로라고 한다.
- 교대제로 일할 경우,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1주일 간격으로 주간팀과 야간팀을 번갈아 맡기도 한다.
- 이와 달리 주간팀과 야간팀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는 공장도 있다.

2. 최저임금제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법률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2020년 최저임금액은 1시간당 8,590원 1일 68,720원이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 임금지급 체계

- 임금계약은 시간제,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가 있다.
- 제조업은 월급제가 많고, 건설업은 일당제가 많다. 시간당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에 한해 시간급으로 계산되며, 일당으로 계산해 주기도 하지만 대개 월급날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매일 근무시간을 기록하여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 출근 카드를 찍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3. 퇴직급여보장제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동일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4.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는다.

- 최종 3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 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급여(90일분의 평균임금)

03 고용보험

회사는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준다.

1. 사회보험

- 한국 국적이 있는 자가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 국적이 없는 외국인인 사회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혜택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이와 관련된 보험료는 회사가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걷어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제공한다.

2.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금이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1) 적용대상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직장에 중대한 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알아두세요!

고용보험 가입자격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나,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국적에 따라 별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 실업급여 혜택

-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 하한액: '19.1월 현재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단, 2018년도 이직자는 54,216원)
-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연령 : 퇴사 당시의 만 나이

(3) 신청절차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 후 즉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준다(불인정 시 서면통보).

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1) 가입방식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2)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기사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3) 기준보수(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실업급여 : 2%)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월 구직급여	910,000	1,040,000	1,170,000	1,300,000	1,430,000	1,560,000	1,690,000

(4) 혜택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월 91~169만원)을 90~180일간 지급

구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 일부 지원

04 산업재해 보상보험

1.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 공단 홈페이지 - 미디어룸 - 브로슈어 - for foreigners - Comwel working for workers 참조

(1) 산업재해 기초상식

- 산재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손가락 절단사고가 나면,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생긴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산재보험급여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를 당해 치료를 받게되면 즉시 통장을 만들고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산재치료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산재를 당했는데도 법률을 잘 몰라 강제출국 당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족들이 한국 실정에 어두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산재를 당하는 즉시 상담지원 단체와 의논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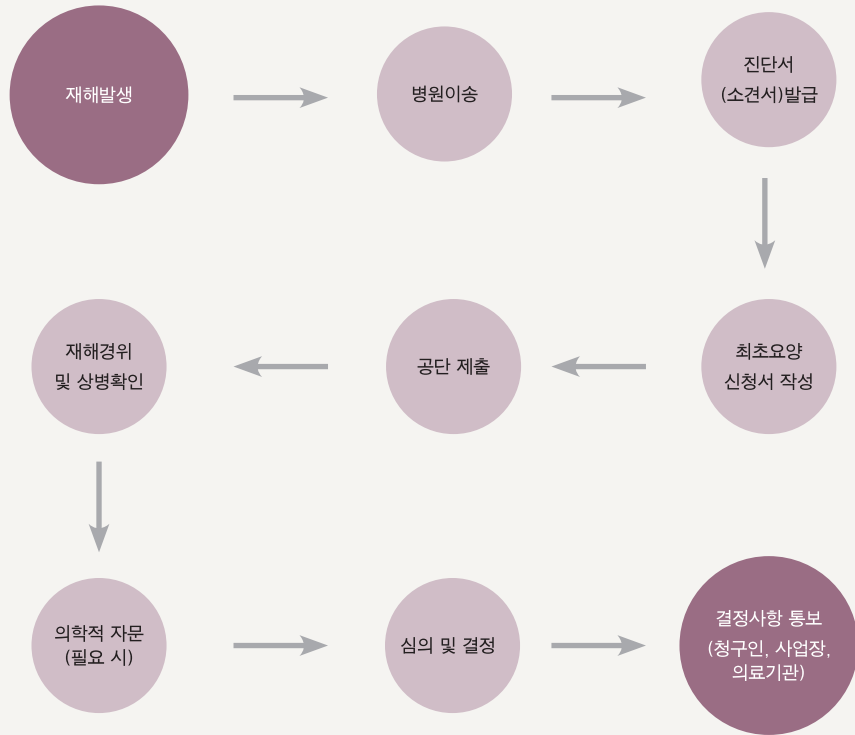
(2) 신청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 서류작성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가능하면 재해 내용과 일시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한다.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의료기관인 경우 요양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4) 보상절차



(5)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구분	내용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 태등급 1~3급 해당자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구분	내용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작업재활급여	장해1~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으로서 장해1~12급이 명백한 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및 장해급여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 사업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여
유족급여·장의비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

2. 기본적인 안전수칙

사고예방의 일차적 조건은 작업장과 주변 통로를 자주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해두는 것이다. 통로의 장애물을 모두 치워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모든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다.

- 매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조치 후 작업하자.
- 청소, 수리, 정비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전원을 반드시 끄자.
-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말자.
- 회전하는 기계에서 작업할 때는 면장갑을 끼지 말자.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자.
- 절단, 연삭, 기계 등 미세먼지나 찌꺼기가 날리는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쓰자.
- 유해물질은 종류별로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구분해서 보관하자.
- 세척제, 접착제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보호(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자.
- 항상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두자.
- 구급상자와 소화기 설치 위치를 알아 두자.
- 금지·경고·지시·안내 등과 같은 안전·보건표지의 메시지를 잘 알아두자.
- 식사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자.

3. 알아 두어야 할 안전·보건표지

1

금지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탐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 경고	고안전기 경고	매달린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경고	평균형상소음경고	레이저광선경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착용	안전장갑착용	안전복착용	

4

안내표지

				
독심자표시	응급구호표지	들 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비상용기구		

05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출산전후 휴가를 받는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1. 출산 전후휴가

(1)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출산 전후휴가 기간

◎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는다.

◎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

※ ①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 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음

◎ 출산 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출산 전후휴가도 종료된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쌍둥이 등)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받는다. 이때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출산 전후휴가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출산 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
- 대기업의 경우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월 2,000,000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월 2,000,000원 한도) 최초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한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쌍둥이 등)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 75일분은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월 2,000,000원 한도). 중소기업의 경우 12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월 2,000,000원 한도).

(4) 출산 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 ◎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 필요한 서류
 - 회사에서 받는 서류 : 출산 전후휴가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받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2. 유산·사산휴가

(1) 적용대상

-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 유산인 경우에만 부여하며,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유산·사산 휴가 기간

- ◎ 유산 또는 사산하기 전 임신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 임신 12~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 임신 16~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 임신 22~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 임신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유산·사산휴가 급여

- 유산·사산휴가 시 급여는 출산 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된다.
- 대기업은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월 2,000,000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월 2,000,000원 한도).

(4)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 유산·사산휴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유산·사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3.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다.

(1) 적용대상

- 육아휴직은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 남녀근로자가 육아문제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2)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장된다.

(3)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지만, 이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0,000원, 하한 700,000원), 이후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0,000원, 하한 700,000원)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 : 2,500,000원) 지급(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육아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월 300,000원(우선지원대상 기업만 해당)) 및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월 800,000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0,000원))이 지원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하였을 때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 휴직을 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다.
-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 서류
 - 회사에서 받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받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1) 적용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부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어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와 업무숙련도 저하 방지, 고용 연속성 보장 등이 가능하다.

(2) 사용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장된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하루 1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0,000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0,000원)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월 300,000원(대규모기업은 월 100,000원)) 및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월 800,000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0,000원))이 지원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 서류
 - 회사에서 받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받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출산 전후 휴가를 받는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 사업목적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감소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출산급여 지원('19.7.1 시행)(※결혼이민여성만 해당)

(2) 지원대상

- ◎ 소득활동을 하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 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3)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으로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다. 기한 내 미신청시 소멸된다.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 출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 필요한 서류 : 출산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 ※ 고용센터 담당이 필요한 서류 외에 출산급여 지급을 위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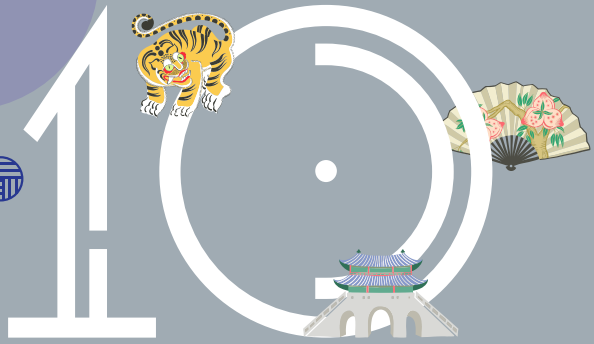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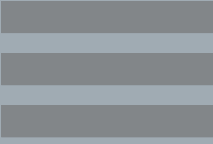
【 카툰으로 보는 문화 이야기 9 】

‘절하기’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인식 차이



한국에서는 웃어른에게 격식을 갖춰 인사할 때 보통 절을 한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절을 하는 경우는 큰 잘못을 저질러 용서를 빌 때,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상황에서 이별할 때뿐이다.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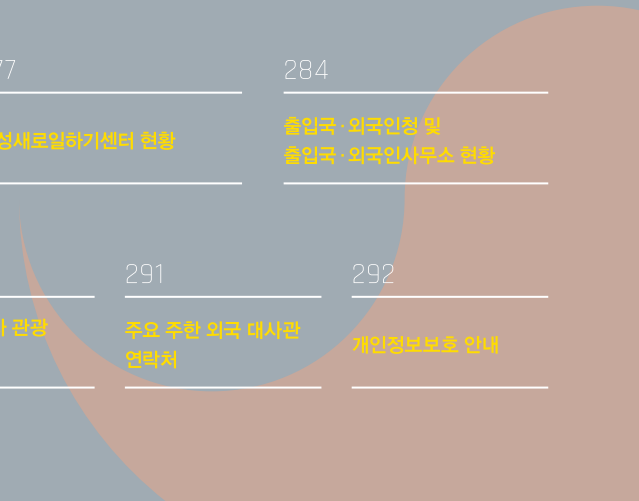


부록

10장에서는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팁을 Q&A 형식으로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연락처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260	265	275	
FAO	건강카펫·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다누리콜센터 현황	
276	277	284	
이주배양원소년지원재단 우치개항소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황	
286	290	291	292
외국인복지원센터 현황	한국관광공사 관광 안내	주요 주한 외국 대사관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안내



1. FAQ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한국생활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언어,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전국 22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교육, 상담 등) 및 방문교육 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자녀생활 서비스는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전화로 법률상담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 ☎1577-1366)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하여 전화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 다양한 한국생활 정보제공, 생활통역과 3자통화지원서비스를 1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로 제공합니다. 휴대폰에 ☎1577-1366을 저장해 놓으면 보다 편리하게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얻고 싶어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포털 <다누리>입니다. 다문화 동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다문화 관련기관 제휴를 통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13개 언어로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후 주소창에 'www.liveinkorea.kr'을 입력하세요. 즐겨찾기에 추가해놓으면 보다 편리하게 포털 <다누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잘하고 엄마 나라 말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나라 말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접한다면 엄마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중언어 사용이 자연스러운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및 부모교육이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문의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중도입국자녀,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9세~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 정착, 교육, 취업·진로, 생활 전반의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원한다면 ☎02-733-7587로 전화하여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정보를 얻고 싶어요!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에서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인턴, 직업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1350, www.work.go.kr)의 취업성공패키지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든 임산부(결혼이민자 포함)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하기만 하면 무료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이후에 기간별로 철분,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가면 지원하는 서비스와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한국은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자격요건,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전화(033-811-20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주택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다문화가족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분이어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일간신문, 관할 지자체(시·군·구)홈페이지, 청약홈(www.applyhome.co.kr)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한 집합교육(가족, 성평등, 인권 등),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상담, 정보 안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0년 현재, 전국에 22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도	시군구	주소	전화
서울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8	02-3412-2222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2층	02-471-0812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29길 6	02-987-2567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길 35 김삼준문화복지기념관 3층 사무실	02-883-9383
	광진구	1센터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새마을회관 2층 2센터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5층	02-458-0622(1센터) 02-458-0666(2센터)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종합지원센터 2,3층	02-869-0317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1층	02-803-7747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979-3501~2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7층	02-957-0760
	동작구	1센터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2,3층 2센터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우성3단지@304동 107호	02-599-3301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B2층	02-3142-5482
	서대문구	1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2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7길 19, 2층 3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48, 연희성원아파트 관리동 2층	02-322-7595 02-375-7530~1
	중구	서울시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02-2279-3891

시도	시군구	주소	전화
서울	서초구	1센터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2센터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05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2층 3센터(1인가구지원센터)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 주민센터 4층	02-576-2851~2(1센터) 02-6919-9745~50(2센터) 02-2155-8281(3센터)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6길 9(홍익동) 3층	02-3395-9445~7
	성북구	1센터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2센터 :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61-6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	02-3290-1660
	송파구	1센터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2센터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41길 12 3센터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 408호 아이돌봄지원사업팀 4센터 :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19길 37 토성경로당 2층 공동육아나눔터	02-443-3844 02-403-3844 02-430-3844 070-7459-3844
	양천구	1센터 :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6길 57, 4층 2센터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88길 5-7	02-2065-3400 02-2699-6900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02-2678-2193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3층	02-797-9184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02-376-3761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종로53길 29(창신동 197-17) 토월 2층	02-764-3524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369	02-435-4142
부산	금정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2층(남산동)	051-513-2131
	기장군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 기장종합사회복지관 2층	051-792-4750
	동래구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63번길 20-7, 사직종합사회복지관 2층	051-506-5766(센터) 051-506-5765(센터) 051-503-3530(아들)
	동구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48(초량동, 엘림빌딩 3층)	051-465-7171
	진구	부산시 진구 백양대로 160, 2층(당감동, 부산진구 여성가족문화센터)	051-817-4313
	남구	부산시 남구 수영로 356, 2층(대연동,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051-610-2027

시도	시군구	주소	전화
부산	북구	부산시 북구 효열로 76(금곡동 1108)	051-365-3408
	서구	부산시 서구 구덕로 127 서구가족센터 6층	051-241-6200
	사상구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다누림센터 4층	051-328-0042
	사하구	부산시 사하구 신산로 177(신평동) 농협신평동지점 2층	051-205-8345
	수영구	부산시 수영구 황령산로 7번길 45(남천동, 헤리티지) 지하 1층	051-758-3073
	연제구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46번길 11	051-851-5002
	영도구	부산시 영도구 하나길 448	051-414-9605
	해운대구	부산시 해운대구 양운로 91, 좌1동 주민센터 2층	051-702-8002
대구	달서구	대구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3길 60	053-593-1511
	달성군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5층	053-636-7390 053-637-4374
	남구	대구시 남구 이천로10	053-475-2324
	동구	대구시 동구 안심로 300, 4~5층	053-961-2202~3
	북구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73, 2층(관음동, 조은빌딩)	053-327-2992 053-327-2994
	서구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330, 5~6층	053-355-8042 053-341-8312
	중구	대구시 중구 남산로 53-1, 2층	053-431-1230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16길 78, 두산문화센터 1층	053-795-4300
	강화군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11-1	032-933-0980
	계양구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032-547-1015 032-541-2860
인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논현동)	032-467-3904
	미추홀구	1센터 : 인천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29, 주민복지관 1동 2센터 :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89, 새암빌딩 5층 3센터 : 인천시 미추홀구 인화로 100, 인하대학교 미래융합대학관 101호	032-875-2993 032-875-1577 032-875-2995
	동구	인천시 동구 박문로 8(송림동)	032-773-0297
	서구	인천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6(공촌동)	032-569-1560
	연수구	인천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4층	032-851-2730

시도	시군구	주소	전화
인천	중구	인천시 중구 답동로 23, 천주교사회복지센터 3층	032-763-9337
	부평구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03(십정1동 279-20) 열우물어울림센터 7층	032-511-1800~1,9
광주	광산구	광주시 광산구 광산로57-1	062-954-8004
	남구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831, 7층	062-351-9337
	동구	광주시 동구 남문로 693번길 14	062-234-5790
	북구	광주시 북구 하서로 195	062-363-2963
	서구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1224번길 18	062-369-007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6로 40-17 (관평동)	042-932-9995
	서구	대전시 서구 배재로 155-40, 우남관 103-1호(도마동, 배재대학교)	042-520-5928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우송도서관 706호	042-630-9945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대흥동445-1)	042-335-4566
울산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2 (오정동)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관, 2층	042-639-2664
	남구	울산시 남구 여천로 12번길 50(해피투게더 타운, B1)	052-274-3136
	동구	울산시 동구 대학길 59, 3층	052-232-3357
	북구	울산시 북구 동대5길 31(호계동 259-13)	052-286-0025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5길 39-7, 중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052-242-9600
세종	중구	울산시 중구 중앙길 162, 4층	052-248-1103
	세종시	세종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044-862-9336~8
경기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2층	070-7510-5870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길 58	02-503-0070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4 철산별관 노릇들 1동 2층	02-6265-1366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 52번길 19	031-798-7137, 7141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신로 27 정원빌딩 4층	031-938-9801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8 건영빌딩 3층	031-556-3873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112, 수리산상상마을 슬기관 1층	031-392-1811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LH한가람 2단지 내	031-996-5920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제2청사 2층, 4층	031-553-8211 031-556-8212

시도	시군구	주소	전화
경기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49 두드림희망센터 2층	031-863-3801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조종로 68번가길 4(원미동)	032-327-1370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 신성빌딩 3층	031-257-8504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95번길 1	031-740-1175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51	031-319-7997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층(초지동)	031-599-1700~16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산수유길 15, 안성종합사회복지관 3층	031-677-7191~2 031-677-9336~7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 동안구청 별관 2층	031-8045-5572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39,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6층	031-858-5681 031-848-5622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 행복플러스센터 2층	031-775-5951, 5957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61, 현대아파트 상가동 3층(홍문동)	031-886-0321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종합복지관 5층	031-835-0093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83(주사무소)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7 오산시자원봉사센터 3층(부설사무소)	031-372-1335 031-378-9766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용인시종합가족센터 3층)	031-323-7131, 7133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19, 청계종합사회복지관 4층	031-429-8931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번길 67	031-878-7117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	031-631-2260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031-949-9161~4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295(서정동), 북부복지타운 1층	031-615-3952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지하 1층	031-532-2062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30-5(덕풍동) 계명빌딩 7층	031-794-5158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4층 (병점동 734)	031-267-8786	

시도	시군구	주소	전화
강원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48, 2층	033-648-3019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97, 여성회관 1층	033-681-9390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1길 20-3, 동해시청 제1별관	033-535-8377~8 033-535-0185~6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2길 72-6번지, 5층	033-576-0761~2 033-573-5434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도리원길 5(경동대 속초캠퍼스 유아교육관2층)	033-638-3523 033-637-2680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장터길 43(양구행복나눔센터)	033-480-2727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74-52	033-673-0020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2, 4층	033-372-4769 033-375-8400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8	033-764-8612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0 하늘내린센터 2층	033-462-3651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 3층	033-562-3458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22-1	033-452-7800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5(홀트춘천복지센터1층)	033-251-8014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해지개길 41	033-554-4003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문화복지센터 2층)	033-332-2063~4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미로 87 2,3층(홍천농협 본점 2,3층)	033-433-1915 033-433-1925 033-432-1935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212	033-442-2344 033-442-2342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횡성군종합보건복지타운 3층	033-344-3458
충북	괴산군	충북 괴산군 괴산읍 금산길 3	043-832-1078
	단양군	충북 단양군·읍 별곡12길 5 여성발전센터 2층	043-421-6200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515, 거성상가 2층	043-544-5422
	영동군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여성회관 1층	043-745-8489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26, 다목적회관 2층	043-733-1915
	음성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서길103, 여성회관 2층(본점)	043-873-8731

시도	시군구	주소	전화	
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 명륜로 13길 3, 제천가톨릭복지관 2층	043-645-1995	
	증평군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5-1	043-835-3572	
	진천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2층	043-537-5435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상당보건소 내 2층	043-293-8887	
	청주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 청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263-1817	
	충주시	충북 충주시 사직산21길 34, 복합복지관 2층(문화동, 충주시건강복지타운)	043-855-2253	
충남	계룡시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94 4층 411호	042-551-1133	
	공주시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 유아교육관 2층(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041-853-0881~2	
	금산군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35	041-750-3990	
	논산시	충남 논산시 관촉로 277번길 23-13, 2,3층	041-733-7800	
	당진시	충남 당진시 시청 1로 38 수청동(1005, 당진시종합복지타운 4층)	041-360-3160	
	보령시	충남 보령시 한내로 45(문화빌딩 2층)	041-936-8506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나성북로 17	041-830-2900	
	서산시	충남 서산시 고운로 239, 3층	041-664-2710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38, 2층	041-953-3808 041-953-1911	
	아산시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4층	041-548-9779	
		충남 아산시 시민로 467-15, 글로벌가족센터	041-548-9772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1층	041-546-9772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60, 2층	041-533-9879	
		예산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 2층	041-339-8382~9
		천안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3층	041-558-8653
	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32, 청양복지타운 2층	041-944-2333~5	
	태안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0, 교육문화센터 1층	041-670-2396 041-670-252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75번길 17	041-634-7432 041-631-9337 041-631-7432	

시도	시군구	주소	전화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57, 1층	063-561-1366
	군산시	전북 군산시 축동1길 15-2	063-443-5300
	김제시	전북 김제시 요촌길 45,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	063-545-8506
	남원시	전북 남원시 용성로 43	063-635-5474
	무주군	전북 무주군 무주읍 신교로 2길 17	063-322-1130
	부안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89, 2층	063-580-3941
	순창군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3층	063-652-3844
	완주군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39, 완주가족문화교육원 1층	063-261-1033 063-231-1037
	익산시	전북 익산시 고현로 10-3	063-838-6046
	임실군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80, 3층	063-642-1837
	장수군	전북 장수군 장수읍 사리재로 15	063-352-3362
	전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26, 3층	063-243-0333
	정읍시	전북 정읍시 중앙2길 22	063-531-0309
	진안군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28, 3층	063-433-4888
전남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사의재길 41	061-433-9004
	고흥군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56, 새마을회 3층	061-832-5399
	곡성군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6	061-362-5411
	광양시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커뮤니티센터 6층)	061-797-6800
	구례군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781-8003
	나주시	전남 나주시 예향로 4075	061-331-0709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5, 담양군여성회관 내 4층	061-383-3655~6
	무안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11	061-452-1813
	목포시	전남 목포시 산정로 150번길 22	061-278-4222
	보성군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86-5	061-852-2664
	순천시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B동 1층	061-750-5352~7
	신안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보건소 4층	061-240-8706
	여수시	전남 여수시 새터로 33	061-692-4173
	영광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길 35-7	061-353-7997 061-353-8880
	영암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가재로 88, 삼호종합복지회관 2층	061-463-2928~9
	완도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34-10, 3층	061-554-3400
	장성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충무5길 24, 가정복지회관 1층	061-393-5420

시도	시군구	주소	전화
전남	장흥군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4, 장흥종합사회복지관 4층	061-864-4810~5
	진도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여성플라자 1층 우)	061-544-9993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들샘길 36, 함평천지종합복지관 4층	061-324-5431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0, 2층	061-534-0017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1(화순희망센터 2층)	061-375-1057
경북	고령군		
	경산시	경북 경산시 경산로 131	053-816-4071
	경주시	경북 경주시 북성로 87(북부동, 평생학습가족관 2층)	054-779-8929
	구미시	경북 구미시 산책길 73, 원평동 460-4	054-443-0541
	군위군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31-10	054-383-2511
	김천시	경북 김천시 공단로 152-32	054-439-8280
	문경시	경북 문경시 매봉로 65, 4층	054-554-5591
	봉화군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로 12-3	054-673-9023
	상주시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3063-10	054-531-1342
	성주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9길 45	054-930-8245
	안동시	경북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5, 안동종합사회복지관 3층 다문화북카페	054-853-3111
	영덕군	경북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 영덕군민체육센터 내 여성회관 2층	054-730-7383
	영양군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36	054-683-5432
	영주시	경북 영주시 명륜길 28번길 25	054-634-5431
	영천시	경북 영천시 운동장로 41(교촌동) 3층	054-334-2881~2
	예천군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39, 2층(베스트프라자A)	054-654-4321
	울릉군	경북 울릉군 울릉읍 봉래2길 31	054-791-0205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	054-783-8988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1길 21	054-832-5440
	청도군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 청소년수련관 3층	054-373-8131~4 054-373-7421~4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44-30	054-872-4320
칠곡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54, 새마을회관 2층	054-975-0833	
포항시	경북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대신동)	054-244-9702	

시도	시군구	주소	전화
경남	거제시	경남 거제시 탑곡로 75, 근로자가족복지회관 2층 (아주동)	055-682-4958
	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	055-945-1365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	055-673-1466
	김해시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232, 여객터미널 4층	055-329-6349(다가) 055-329-6355(건가)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 종합사회복지관 2층	055-860-3878 055-864-6965
	밀양시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055-351-4404~7(센터) 055-351-4408~9(아들)
	사천시	경남 사천시 용현면 부곡3길 90, 사천시여성회관 2층	055-832-0345
	산청군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79번길 31-3, 2층	055-972-1018
	양산시	경남 양산시 양주1길 7-1, 2층	055-382-0988
	의령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길 6	055-573-8400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5(신안동)	055-749-5443
	창녕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 사회복지타운 1층	055-533-1305~6 055-532-1606~7
	창원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1층(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	055-225-3951
	창원시 마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마산YWCA 지하1층	055-244-8745
	통영시	경남 통영시 안개 4길 94(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내 3층)	055-640-7740
	하동군	경남 하동군 섬진강대로 2214, 종합사회복지관 4층	055-880-6520
	함안군	경남 함안군 산인면 가야로 217, 산인면종합복지관 1층	055-583-5430
	함양군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055-963-2057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63, 합천군청 제2청사(별관)	055-930-4732
	제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65, 성우빌딩 6층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81, 동산빌딩 3층	064-762-114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다누리콜센터 현황

지역	대표상담전화	지역별 직통전화
서울(중앙)	1577-1366	1577-1366
경기 수원		031-257-1841
대전		042-488-2979
광주		062-366-1366
부산		051-508-1366
경북 구미		054-457-1366
전북 전주		063-237-1366

※ 서울(365일 24시간 운영) 외 지역 6개소 상담 및 긴급피난처는 365일(주말, 공휴일 포함) 주간(9:00~18:00) 이용 가능, 그 외 시간 상담전화는 서울로 착신되며 가까운 이주여성보호시설로 연계조치 합니다.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레인보우스쿨 현황

연번	기관	지역	전화번호	운영 형태
1	무지개청소년센터	서울 종로	070-7826-1549	전일제
2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금천	02-868-5208	
3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서울 구로	02-6925-5285	
4	부산글로벌참교육학교	부산	051-521-6000	
5	다문화사랑회	인천 남동구	032-467-3992	
6	다사랑외국인문화센터	인천 연수구	070-8847-9191	
7	고양이민자통합센터	경기 고양	031-970-3020	
8	부천새날학교	경기 부천	032-667-7480	
9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경기 평택	031-659-8199	
10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충북 청주	043-263-0041	
11	대구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	051-521-6000	
12	세린작은도서관	울산	070-7123-0210	
13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원	전북 익산	063-840-1499	
14	제주이주민센터	제주	064-712-1141	
15	국제청소년지원단	서울 구로	02-6738-2200	
16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주 북구	062-363-2963	
17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광주 광산구	070-7502-6797	
18	배재대학교 서부다문화교육센터	대전	042-520-5997	
19	어울마루	경기 광명	02-2688-1688	
20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경기 포천	031-544-0615	
21	춘천YMCA	강원 춘천	033-255-1002	
22	한국이민자지원센터 아산지부	충남 아산	041-533-0675	
23	홍성이주민센터	충남 홍성	070-4150-9722	
24	로드월드비전	전남 순천	061-724-1127	
25	하이웃 이주민센터	경북 경주	054-772-0691	
26	(사)글로벌드림 다문화연구소	경남 김해	055-322-1365	

진로지원사업(무지개Job아라, 내-일을 잡아라) 현황

연번	기관	지역	전화번호	운영 형태
1	무지개청소년센터	서울 종로	070-7826-1436	전일제
2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경기 평택	031-659-8199	
3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경기 수원	031-247-1324	
4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경기 파주	031-954-0200	시간제
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경기 고양	031-925-0400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현황

새일센터는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전국에 157개소가 지정·운영(고용노동부와 공동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전국 대표전화는 ☎1544-1199입니다.

광역	시군구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관악구	관악새일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02-886-9523
	구로구	구로새일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02-867-8833
	영등포구	영등포새일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02-858-4822~3
	금천구	남부새일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02-802-0185
	노원구	북부새일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02-3399-7699
	노원구	노원새일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02-951-0187
	동대문구	동대문새일센터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02-921-2070
	서대문구	서대문새일센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02-332-8661
	서초구	서초새일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02-581-4433
	양천구	서부새일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02-2607-5638
	은평구	은평새일센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02-389-2115
	종로구	종로새일센터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2-741-1326

광역	시군구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중랑구	중랑새일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02-3409-1948
	강서구	강서새일센터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02-2692-4549
	강북구	강북새일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02-980-2377
	동작구	동작새일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02-525-1121
	마포구	중부새일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02-719-6307
	용산구	용산새일센터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02-714-9762
	송파구	송파새일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02-430-6070
	성북구	성북새일센터	(사)한국고용복지센터	02-942-3117
	성북구	정릉새일센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070-4693-4755
	중구	중구새일센터	중구여성플라자	02-2234-3130
	도봉구	도봉새일센터	도봉여성센터	02-956-9620
	강남구	서울과학기술 새일센터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02-6411-1083
	광진구	동부새일센터	동부여성발전센터	02-460-2384~9
	강동구	강동새일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02--475-0108
	마포구	서울 광역새일센터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02-590-1900
부산	남구	부산새일센터	부산광역시여성회관	051-610-2005
	동래구	동래새일센터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051-501-8945
	동구	동구새일센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1-715-9882
	해운대구	해운대새일센터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9196
	사상구	사상새일센터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051-326-8778
	부산진구	부산진새일센터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44
	서구	부산서구새일센터	부산서구 여성센터	051-240-3567
	기장군	기장새일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051-709-5359
	강서구	부산 강서새일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051-970-4363
	사하구	사하새일센터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051-201-2214
	사상구	부산 광역새일센터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051-320-8342

광역	시군구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대구	남구	대구남부새일센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3-472-2281	
	북구	대구새일센터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053-803-7230	
	서구	대구달서새일센터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053-285-1331	
	수성구	수성새일센터	대구수성 여성클럽	053-766-0308	
	달서구	신달서새일센터	달서가족문화센터	053-219-2019	
인천	미추홀구	인천새일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032-440-6520	
		인천미추홀새일센터	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	032-881-6060~2	
	남동구	인천남동새일센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469-1251	
	서구	인천서구새일센터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032-577-6091	
	부평구	부평새일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	032-511-3161~3	
	남동구	인천 남동산단 새일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인천지회	032-260-3611	
	계양구	계양새일센터	계양구 여성회관	032-554-9368	
	부평구	인천 광역새일센터	(재)인천여성이족재단	032-517-9833	
	광주	동구	광주새일센터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062-511-0001
		북구	광주북구새일센터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062-266-8500
남구		송원대새일센터	송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62-360-5902	
광산구		광주광산구새일센터 (산단형)	광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62-381-5419	
서구		광주서구새일센터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062-613-7986~9	
대전	서구	대전새일센터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042-524-4181~2	
	유성구	대전배재대ICT융합 새일센터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042-520-5087	
	서구	대전 광역새일센터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042-520-5337	
울산	남구	울산새일센터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052-258-8064	
	중구	울산중부새일센터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052-281-1616	
	동구	울산동구새일센터	울산광역시 동구청	052-209-6949	
	북구	울산북구새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052-241-7642	

광역	시군구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세종	세종시	세종새일센터	세종 YWCA	044-863-8210
경기	고양시	고양새일센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79-8555
	부천시	부천새일센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성남시	성남새일센터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안산시	안산새일센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31-439-2060
	안양시	안양새일센터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453-4360
	용인시	경기IT새일센터	(재)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	031-270-9772
	의정부시	경기북부새일센터	(재)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031-270-9900
	의정부시	의정부YWCA 새일센터	의정부YWCA	031-853-7225
	시흥시	시흥새일센터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8219
	화성시	화성새일센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031-267-8792
	시흥시	시흥새일센터(산단형)	시흥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31-310-6032
	광명시	광명새일센터	광명시여성비전센터	02-2680-6773
	평택시	평택새일센터	평택시 여성회관	031-8024-7412
	남양주시	남양주새일센터	남양주 YWCA	031-577-0886~7
	수원시	팔달새일센터	수원시가족여성회관	031-259-9836
	수원시	영통새일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031-206-1919
	포천시	포천새일센터	(사)가족보건복지협회	031-541-7943
고양시	고양MICE새일센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이천시	이천새일센터	이천 YMCA	031-634-2954	
김포시	김포새일센터	김포시	031-996-7606	
파주시	파주새일센터	서영대학교 미래평생교육원	031-942-0281	

광역	시군구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경기	오산시	오산새일센터	오산시	031-8024-9861	
	양주시	양주새일센터	양주시	031-849-2351	
	의왕시	의왕새일센터	의왕시	031-345-2683	
	하남시	하남새일센터	하남시	02-790-6248	
	군포시	군포새일센터	군포시청	031-390-4035	
	구리시	구리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구리시	031-550-8331	
	용인시	경기 광역새일센터	(재)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용인)	031-270-9778	
강원	동해시	동해새일센터	동해YWCA	033-533-6077	
	원주시	원주새일센터	상지대학교평생교육원	033-748-3131	
	춘천시	춘천새일센터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3-243-6474	
	강릉시	강릉새일센터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033-643-1148	
	양양군	양양새일센터	양양군 여성회관	033-670-2357	
	영월군	영월새일센터	영월군 여성회관	033-370-1333	
	정선군	정선새일센터	정선군 여성회관	033-560-2319	
	삼척시	삼척새일센터	삼척시 평생학습관	033-570-4081	
	충북	청주시	청주새일센터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043-253-3400~1
		영동군	영동새일센터	영동군 여성회관	043-745-7713
청주시		충북새일센터(산단형)	충북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43-217-9195	
충주시		충주새일센터	충주 YWCA	043-845-1991	
제천시		제천새일센터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043-645-3904	
청주시		충북 광역새일센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43-215-9195	

광역시	시군구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충남	보령시	보령새일센터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041-935-9663
	천안시	천안새일센터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041-576-3060
	논산시	논산새일센터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041-736-6244
	당진시	당진새일센터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041-350-4051
	서산시	서산새일센터	서산시	041-660-2707
	아산시	아산새일센터	(재)제니엘푸른꿈일자리재단	041-570-5530
	공주시	공주새일센터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041-850-6061~7
	부여군	부여새일센터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041-830-2920~1
	홍성군	홍성새일센터	홍성군	041-630-9541~7
	서천군	서천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윤정복지재단	041-953-8431
충남	충남광역새일센터	충남도청	041-635-0211	
전북	김제시	김제새일센터	김제시 여성회관	063-540-4120
	군산시	군산새일센터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063-468-0055
	전주시	전주새일센터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063-232-2352
	전주시	전북새일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577-3813
	정읍시	정읍새일센터	정읍시 여성문화관	063-539-5595
	남원시	남원새일센터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063-620-5701
	익산시	익산산단형 새일센터(산단형)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산단형)	063-840-6568
	완주군	완주새일센터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063-262-1781
	전주시	전북 광역새일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063-254-3712
전남	목포시	목포새일센터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061-283-7535
	여수시	여수새일센터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061-641-0050
	순천시	순천새일센터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061-744-9705
	광양시	광양새일센터	광양시	061-797-1970

광역시	시군구	센터명	기관명	전화번호
전남	장성군	장성새일센터	장성군	061-390-7635~6
	나주시	나주새일센터	학교법인 해인학원	061-333-2060
	화순군	화순새일센터	화순군	061-379-3551
	영암군	영암새일센터	(재)전남인력개발원	061-463-9972
	무안군	전남 광역새일센터	(재) 전남여성가족재단	061-260-7360
경북	구미시	구미새일센터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054-456-9494
	김천시	김천새일센터	김천시 평생교육원	054-430-1179
	포항시	포항새일센터	포항YWCA여성인력개발센터	054-278-4410
	칠곡군	칠곡새일센터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054-973-7019
	경산시	경산새일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053-667-6880
	경주시	경주새일센터	굿네이버스 경북남부지부	054-744-1901
	영천시	영천새일센터	영천시 교육문화센터	054-339-7759
	영주시	영주새일센터	경북전문대학교	054-634-3228
경남	영천시	경북 광역새일센터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	054-335-1982
	김해시	김해새일센터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055-331-4338
	김해시	김해시동부새일센터	김해시 여성센터	055-329-2145
	진주시	진주새일센터	진주시 능력개발원	055-749-5889
	창원시	마산새일센터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55-232-5265
	창원시	창원새일센터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055-283-3221
	창원시	경남새일센터(산단형)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산단형)	055-286-1671
	거제시	거제새일센터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055-634-2064
	양산시	양산새일센터	양산 YWCA	055-362-9192
	창원시	경남 광역새일센터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6-1673
제주	제주시	제주새일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064-753-8090
	서귀포시	서귀포새일센터	서귀포YWCA	064-762-1400
	서귀포시	한라새일센터	제주도 농업기술원	064-739-8920

6.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황

서울/경기/인천

기관명	연락처	팩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터미널 032-740-7391~2 제2터미널 032-740-7361~2 	032-740-7395 032-740-7360
서울역출장소	02-362-8431	02-362-8436
도심공항출장소	02-551-6922	02-551-6934
광명역출장소	02-899-9167	02-899-9169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2-2664-6202	02-2664-8096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02-2650-6211 02-731-1799	02-2650-6295 02-731-1791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2-6980-4700	02-6980-4990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031-828-9301 031-960-9310	031-828-9461 031-919-7663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032-890-6322 031-364-5703	032-890-6400 031-401-5721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평택항만출장소	031-695-3817 031-8024-9612 031-683-6938	031-695-3810 031-8024-9640 031-682-1794
화성외국인보호소	031-8055-7005	031-355-2018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032-745-3300	032-745-3330

부산/경남

기관명	연락처	팩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 김해출장소	051-461-3121 051-254-3917 055-344-7800	051-463-7255 051-254-3919 055-344-7812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2-279-8001	052-279-8028

기관명	연락처	팩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사천출장소 통영출장소	055-981-6000 055-681-2433 055-835-4088 055-645-3494	055-247-9150 055-682-2433 055-835-4087 055-645-3441
김해 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1-979-1322	051-979-1305

광주/전라/제주

기관명	연락처	팩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목포출장소	062-605-5206 061-453-8846 061-283-7294	062-605-5299 061-453-8845 061-282-7293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063-249-8694 063-445-2581	063-245-6165 063-446-8998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061-689-5518 061-792-1139	061-684-6974 061-792-9928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064-723-3494	064-741-5491

대구/경북/강원

기관명	연락처	팩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구미출장소	053-980-3512 054-247-2971 054-459-3505	053-980-3580 054-240-5492 054-459-3580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성출장소 동해출장소 속초출장소	033-269-3210 033-680-5100 033-535-5721 033-636-8613	033-269-3294 033-680-5102 033-533-8153 033-636-8615

대전/충청

기관명	연락처	팩스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42-220-2001	042-256-0496
천안출장소	041-621-1346	041-622-1345
서산출장소	041-681-6186	041-681-6182
당진출장소	041-352-6173	041-352-6170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43-230-9000	043-236-4907
청주외국인보호소	043-290-7512	043-290-7590

7.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 거점센터

순번	센터명	주소	전화	팩스
1	한국	www.migrantok.org	02-6900-8000	02-6900-8001
2	의정부	www.ufwc.or.kr	031-8389-111	031-8389-222
3	김해	www.gimhaekorea.or.kr	055-338-2727	055-338-1630
4	창원	www.mfwc.or.kr	055-253-5270~4	055-253-5276
5	인천	www.infc.or.kr	032-431-5757	032-431-1129
6	대구	www.dfwc.or.kr	053-654-9700	053-654-9213
7	천안	www.cfwc.or.kr	041-411-7000	041-411-7029
8	광주	www.gjfc119.or.kr	062-944-1199	062-946-1198
9	양산	www.ysfc.or.kr	055-912-0255	055-913-4196

• 소지역센터

연번	센터명	센터유무	대표	주소	전화	팩스
1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조금호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7-1 5층	02-858-4115	02-858-4113
2	엘림외국인지원센터		하춘실	인천시 중구 인종로 146번길 6	032-766-1061	032-777-0091
3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박경서	인천시 남구 염전로 239번길 27-11	032-874-3613	032-872-3612
4	부천이주민센터		임학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3층	032-654-0664	032-668-0077
5	(사)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해당	최영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40번길 29 2층	031-982-7661	031-982-7728
6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장창원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50번길 38	031-372-9301	031-372-9391
7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해당	최병조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64번길 42	031-652-8855	031-654-0965
8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해당	이정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26 라성3차 연립상가 2층	031-495-2288	031-495-8700
9	안양이주민센터	해당	김창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6	031-441-8501	031-441-8503
10	(재)한국이주노동재단	해당	안대환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33-32 2층	031-797-2688	031-797-3940
11	천주교의정부교구 구리EXODUS	해당	이기현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53번길 18	031-566-1142	031-696-5296
12	(사)함께하는공동체	해당	최철영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143-7	070-7521-8097	0505-300-8097

연번	센터명	센터 유무	대표	주소	전화	팩스
13	충북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이창언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9-1	043-534-6009	043-534-6010
14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해당	최천호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2길 8-21	043-238-7423	043-238-7424
15	아산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신연석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203호	041-541-9112	041-541-9199
16	대전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봉구	대전광역시 중구 목척7길 6	042-631-6242	042-631-6243
17	(사)외국인노동자 문화센터 포항지부	해당	하광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47번길 34	054-291-0191	054-293-1377
18	(사)경주 외국인지원센터		윤혁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2길 21 2층	054-705-1828	054-705-2838
19	꿈을 이루는 사람들	해당	장영기	경북 구미시 지산1길 46-8	054-458-0755	054-458-0756
20	천주교마산교구 창원이주민센터		신명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600번길 2	055-275-8203	055-275-8202
21	진주사랑의 집	해당	박성진	경남 진주시 돛골로 7번길 7	055-763-0707	0504-463-1214
22	(사)삼산거주 외국인지원협회	해당	문선영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170번길 28-9	051-902-2248	051-313-5155
23	천주교전주교구 성요셉노동자의 집		김창신	전북 익산시 중앙로 11길 41	063-852-6949	063-856-6949

연번	센터명	센터 유무	대표	주소	전화	팩스
24	(사)외국인노동자 문화센터		이천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29 (삼도동)	062-943-8930	062-943-1634
25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 이주민사목부	해당	김희중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	062-959-9335	062-941-9335
26	순천로드월드비전	해당	정숙정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1길 3-5(2층)	061-724-1127	061-724-1173
27	여수외국인노동자 문화센터	해당	황보 희식	전남 여수시 여항단지로 53 2층	061-644-3927	061-644-3926
28	전남목포영암 외국인노동자 문화지원센터	해당	정봉선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8길 23	061-462-8389	061-462-8390
29	제주이주민센터	해당	이소영	제주시 서광로 2길 35, 2층	064-712-1141	064-711-0243
30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종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	031-223-0075	031-223-3166
31	이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인자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031-631-2260	031-631-2263
32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 중앙길 2	031-594-5821	031-594-4575
33	파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조순일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031-949-9164	031-949-9160
34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해당	이종교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	031-434-0411	031-494-0450

8. 한국관광공사 관광 안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나 관광안내전화 1330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관광정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총 12개 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아랍어)가 지원된다. 관광안내전화 1330은 총 8개 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니어) 안내를 지원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해당지역의 관광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구분	홈페이지 주소	구분	홈페이지 주소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강원도	www.provin.gangwon.kr
부산광역시	www.busan.go.kr	충청북도	www.chungbuk.go.kr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충청남도	www.chungnam.net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전라북도	www.jeonbuk.go.kr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전라남도	www.jeonnam.go.kr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	경상북도	www.gb.go.kr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세종특별자치시	www.sejong.go.kr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경기도	www.gg.go.kr		

9. 주요 주한 외국 대사관 연락처

국가	연락처
미국	02-397-4114
러시아	02-318-2116
중국	02-738-1038
일본	02-2170-5200
베트남	02-738-2318
태국	02-795-3098
필리핀	02-796-7387
우즈베키스탄	02-574-6554
캄보디아	02-3785-1041
라오스	02-796-1713
몽골	02-798-3464
네팔	02-3789-9770
우크라이나	02-790-5696
미얀마	02-790-3814
키르기스스탄	02-379-0951

10. 개인정보보호 안내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처럼 해당 정보만으로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의 종류와 의미

①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지, 가족관계, 전화번호 등 일반적인 인적 정보를 말한다.

② 정신적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취미 등 개인의 기호나 성향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신체적 정보

건강 상태, 신장, 체중, 진료 기록, 병력, 장애 정도 등 개인의 신체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④ 사회적 정보

교육(학력, 성적 등), 근로(직장, 근무처, 근무경력 등), 법(전과, 재판 기록 등)과 같은 분야로 나뉘며 개인의 사회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⑤ 재산적 정보

소득, 저축 내역, 대출, 신용카드 상담 내역 등 개인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⑥ 통신정보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IP 등 전자·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하는 정보를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 방법 안내

①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게 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 3자리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 비밀번호는 최소 1년에 2회 정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SNS 등에 과도하게 공개하지 않기

-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자신의 SNS에 연락처, 위치정보, 주소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만약 회원가입, 경품 수령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활용 범위, 기간, 목적 등의 항목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한다.

③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메일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하지 않기

-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첨부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받은 경우 함부로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거나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한다.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및 메일은 가급적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도록 한다.

④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기

- 금융거래 시 인터넷뱅킹 계정, 공인인증서 등을 해킹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다수 있다. 금융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시에는 더욱더 주의를 필요로 한다.
-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되도록 PC방 등 공용 PC를 이용하지 않는다.

⑤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확인하기

한국의 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개인정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 118 상담센터를 이용하기

해킹·개인정보·스팸 등의 사이버 고충 상담은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한다(365일 24시간).

2020

다문화가족·외국인을 위한

한국생활 가이드북

- 한국어 -

- 발행**  여성가족부
- 발행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 관계부처합동**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 기획/제작**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사진협조**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위클리공감, 문화재청
- 디자인** 제이앤씨(JNC)
- 번역** 매경바이어스가이드
- 참고 및 인용문헌** 한국생활가이드북(2019). 여성가족부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인용·발췌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